

第1章 區 沿革 및 現況

I. 西大門區 沿革

年 月 日	根據法規	變 更 過 程
石 器 時 代		○ 部族끼리 群落·集團生活 (신촌에서 발연성 흑요석 및 옥수석기 등 유물이 발견됨)
三 國 時 代		○ AD 553年 新羅 新州에 編入
統 一 新 羅		○ AD 668年 漢山州에 編入
高 麗 時 代		○ AD 983年 陽州에 編入
朝 鮮 時 代		○ 漢城府의 5부중 서부에 속하고 廳舍所在는 서린방(현 종로구 서린동 부근)이었다.
(李太祖 3年)		○ 京城府 西部出張所 設置-58개동 관할
1940. 7. 1		○ 區制實施의 전제로 京城府 西大門事業所設置 事務所 所在地는 京城府 합정27번지였다.
1943. 7. 1		○ 區制의 實施(府와 町의 中間機關) 京城府에 7개구(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설치 西大門事務所를 西大門區 役所로 改稱
1943. 6. 10		○ 麻浦區役所 신설(23개정 관할) - 京城府 8개구
1944. 10. 23	總督府令 第305號	○ 西大門區役所는 35개정 관할
1945. 10. 16		○ 西大門區城所를 西大門區로 改稱 (初代 區廳長 任命)
1945. 8. 13	大統領令 第159號 第161號	○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延禧面, 18개리 (恩平面 11里, 延禧面 7里 面積 46km ²)를 西大門區로 編入 - 53개동 관할 恩平出張所 설치 - 18개리 관할

年 月 日	根據法規	變 更 過 程
1964. 6. 1	法 律 第1640號	○ 行政區域 變更으로 西大門區 老姑山洞과 大峴洞 일부지역이 麻浦區에 편입되고 麻浦區 阿峴洞 일부지역이 西大門區로 편입
1973. 7. 1	法 律 第2596號 大統領令 第6548號 市 條 例 第748號	○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舊把撥里, 津寬內里, 津寬外里를 西大門區에 편입 麻浦區 阿峴洞 일부지역이 西大門區로 編入 ○ 麻浦區 東橋洞, 西橋洞 各 일부가 西大門區에 編入 ○ 津寬洞 新設(41동→42동)
1975. 10. 1	大統領令 第7816號	○ 區 管轄區域 變更 - 西大門 일부를 鍾路, 中區, 麻浦, 龍山에 編入 - 麻浦區 東橋洞 일부를 西大門區에 編入
1979. 10. 1	大統領令 第9360號	○ 恩平區 신설로 西大門區에서 分區됨 (녹번동 외 12개동 은평구 관할)
1983. 12. 1	市 條 例 第1814號	○ 현 행정구역

II. 區政現況

1. 區政興件

- 도심지역과 연결 - 도심과 외곽지역·신도시 연결 기능
- 안산, 백련산등 구릉지대 -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발
- 명문대학 집중 - 교육의 중심지, 청년문화의 중심지

2. 一般現況

- 面積 - 17.7km²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15.8km ² (89.3%)	0.2km ² (1.1%)	1.7km ² (9.6%)

- 人口 - 122,411세대 367,863명
- 住宅 - 46,723동 71,866호 (보유율 59.3%)

· 單獨住宅

계	단독	다가구	무허가
44,787호	37,437	3,584	3,766

· 共同住宅

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1,936동/27,079호	246/13,191	121/1,467	1,569/12,421

* 시민APT 49동 2,212호(시 176동의 27.8%)

○ 行政區域 - 22동, 602통 4,684반

○ 主要施設

- 公共機關 - 88개기관 (구·동 23, 파출소 30, 소방서 3, 우체국 14, 기타 18)
- 教育機關 - 51개소 (대학 8, 고등학교 10, 중학교 15, 초등학교 18)
- 醫療機關 - 396개소 (종합병원 3, 병·의원 299, 안경업소 71, 기타 23)
- 文化財 - 17개소 (사적 6, 유형 3, 무형 7, 기념물 1)
- 福祉施設 - 134개소

도 서 관	수용시설	노 인 정	보육시설	공 부 방
1	4	51	69	9

○ 都市基盤施設

- 道路延長 - 284.8km (16.8%)
- 道路鋪裝 - 2.7km (93%)
- 上水道 - 933.5km (100%)
- 下水道 - 397km (100%)
- 地下鐵 - 7.2km (2·3호선)
- 都市 GAS 보급 - 66,128가구 (보급률 55%)

3. 財政 - 總 85,312,072千원

○ 一般會計

· 歲入 : 78,168,808千원

(단위 : 千원)

총 액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 조 금	지정재원
78,168,808 (100%)	16,730,248 (21.7%)	22,950,018 (29.3%)	32,616,000 (41.6%)	2,234,948 (2.8%)	3,637,594 (4.6%)

· 歲出 : 78,168,808千원 [채 916,000]

(단위 : 千원)

계	의 회 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예 비 비
78,168,808 [채916,000] (100%)	1,717,881 (22%)	40,771,104 [채916,000] (52.2%)	19,648,273 (25.1%)	406,660 (0.5%)	14,411,452 (18.4%)	217,279 (10.3%)	996,159 (1.3%)

○ 特別會計(歲入 및 歲出)

- 總 7,143,264천원
- 새마을所得支援事業 : 219,513천원
- 醫療保護基金 : 811,746천원
- 駐車場 : 6,112,005천원

Ⅲ. 議會現況

1. 沿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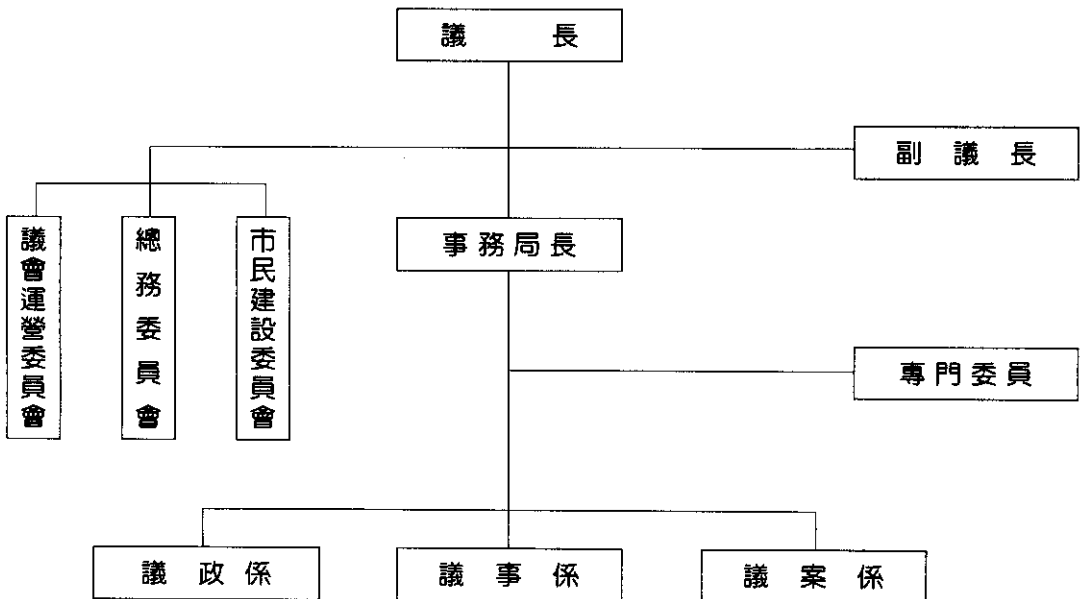
○ 初代 議會

- 1991. 3. 26 : 기초 지방의회 의원 선거
- 1991. 4. 15 : 서대문구의회 개원 및 최초 임시회 개최
- 1995. 6. 30 : 초대의원 임기 만료

○ 2代 議會

- 1995. 6. 27 : 기초 지방의회 제2대 의원 선거
- 1995. 7. 1 : 서대문구의회 제2대 의원 임기 개시

2. 組織



3. 構成

○ 議員：총 29명

○ 構成

議長：송영우 議員

副議長：김평락 議員

常任委員會 {

- 議會運營委員會 (9명)
- 總務委員會 (14명)
- 市民建設委員會 (14명)

4. 事務局

구 분	계	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비 고
정 원	26	11	8	7	
현 원	25	11	8	6	기능직 1명 부족

5. 廳舍現況 (344평)

	의장실	부의장실	제1소회의실	제2소회의실	사무국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3층 (201평)	14	12	23	23	30	11	8
	자료실	방호실	복도기타				
	7	4	69				
4층 (143평)	본회의장	방청석	위원장실	의원휴게실	복도기타		
	63	10	9	15	46		

구 분		의 장 단		의 원	비 고
반기별	기 간	의 장	부의장		
전반기 (제1대)	95. 1. 1 ~ 6. 30	김은천	좌두행	송영우 전재환 이봉수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정전춘 김정현 박노현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정화진 최용완 장병팔 성명제 구자역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김평락 정혁주 정일수 광재만	총28명
후반기 (제2대)	95. 7. 1 ~ 12. 31	송영우	김평락	기창표 김동덕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종섭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박노현 조갑현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이성배 최광진 박덕균 조재구 강석준 정일출 권재일 임재선 홍성덕 오환인 허준구 정일수	총29명

3. 案件處理

가. 現 況

구 분	회의일수	계	조 례			예산안	결 의 승인안	청 원	진정서
			제 정	개 정	부 결				
계	80	69	6	29	4	5	17	3	5
입	제30회	3	10	5	5				
	제31회	10	14	5			8	1	
	제32회	1	1					1	
시	제33회	10	8		2	1	4		
	제34회	3	2						2
	제35회	3	2		2				

나. 主要案件 處理內容

1) 본회의(제30회 ~ 제38회)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30회 임시회	95. 2. 8 ~ 2. 10 (3일간)	제1차 2. 8 (수)	1. 제3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會期決定의건 - 회기결정 : 95. 2. 8 ~ 2. 10(3일간) 2. 제3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송영우 議員 전재환 議員 選出 3. 휴회의건	
		제2차 2. 10 (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 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 設置및運用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案 5. 서울特別市 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 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1회 임시회	95. 3. 21 ~ 3. 30 (10일간)	제1차 3. 21 (화)	1. 제3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 회기결정 : 95. 3. 21 ~ 3. 30(10일간) 2. 제3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 署名議員 選出의件 - 署名議員 : 이봉수 議員 · 조민행 議員 選出 3. 1995년도 區政主要業務報告 - 구정보고 : 총무국장(유영식) 4. 휴회의건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2차 3. 27 (월)	1. 제3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變更의건 2. 議員辭職의건 사직의원 : 정병팔 議員 곽재만 議員 구자억 議員	(승인)
		제3차 3. 29 (수)	1. 제3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결정 變更의건 2. 議員辭職의건 - 사직의원 : 김평락 의원	(승인)
		제4차 3. 30 (목)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民對象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7. 1995年度 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弘濟川高水敷地開發에關한建議案 9. 鞍山一帶循環道路建設에關한建議案 10. 仁旺山邊裏面道路建設에關한建議案 11. 都市基本計劃에關한建議案 12. 都市計劃用途地域變更및農·水産物直去來市場 育成에關한建議案 13. 地下鐵建設路線延長에關한建議案 14. 公園用地解除請願 - 현저동 산1~132, 김태영 외 22인, 이봉수議員소개 15. 海外研修結果報告의件 - '95. 2. 13 ~ 2. 23 임재선의의원 외 14명 호주, 뉴질랜드 등 2개국 6개議會 및 市廳 방문결과 보고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의견서채택)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34회 임시회	95. 7. 19 ~ 7. 21 (3일간)	제1차 7. 19 (수)	1. 의장·부의장 選舉 - 의 장 : 송영우 議員 當選 - 부의장 : 김평락 議員 當選 2. 제3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會期決定의 件 - 회기결정 : 95. 7.19 ~ 7.21(3일간) 3. 제3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選出의 件 - 서명의원 : 기창표 議員·김동덕 議員 選出	
		제2차 7. 21 (금)	1. 常任委員 選出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選任(9명) 전성장, 김종섭, 정연식, 이석문, 강석준, 정일출, 임재선, 오환인, 김평락 議員 - 총무위원회 위원 選任(14명)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정연식, 이성배,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오환인, 김평락, 허준구 議員 -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選任(13명)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박노현, 조갑현,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홍성덕, 정일수 議員 2. 상임위원장 選出 - 의회운영위원장 : 임재선 의원 當選 - 총 무 위 원 장 : 김종철 의원 當選 - 시민건설위원장 : 조갑현 의원 當選	
제35회 임시회	95. 8. 3 ~ 8. 5 (3일간)	제1차 8. 3 (목)	1. 제3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會期決定의 件 - 회기결정 : 95. 8. 3 ~ 8. 5(3일간) 2. 제3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選出의 件 - 서명의원 : 이기봉 議員·정현철 議員 選出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후보자 推薦의 件 - 교육위원 후보자 推薦 [경 력 자 후보 : 박준식 후보 비경력자 후보 : 허재욱 후보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2차 8. 5 (토)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제36회 임사회	95. 8. 28 ~ 9. 1 (5일간)	제1차 8. 28 (월)	1. 제36회 서대문구의회(임사회)會期決定의 件 - 회기결정 : 95. 8. 28 ~ 9. 1(5일간) 2. 제36회 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의록 署名議員 選出의 件 - 서명의원 : 전성장 議員 · 김종섭 議員 選出 3. '9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 구정보고 : 區廳長(이정규) 4. 휴회의 건	
		제2차 9. 1 (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事堂建立推進委員會 構成에關한決議案 (원안가결)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關한條例중改正條例案 (원안가결)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歲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37회 임사회	95. 10. 19 ~ 10. 28 (10일간)	제1차 10. 19 (목)	1. 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사회)會期決定의 件 - 회기결정 : 95. 10. 19 ~ 10. 28(10일간) 2. 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의록 署名議員選出의 件 - 서명의원 : 김종철 議員 · 김정현 議員 選出 3. 1995년도 제2회 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안설명 : 총무국장(유영식)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p>4. 예산결산특별위원회構成의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산특별위원 選任(9명) : 이기봉, 정현철, 김종섭, 정혜연,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강석준, 김평락 議員 <p>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공무원 : 구청장, 각 국·실·과장, 보건소장 - 출석일자 : 95. 10. 20 ~ 10. 23(3일간) - 장 소 : 본회의장 <p>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위원선임의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당건립추진위원 選任(9명) : 김동덕, 김종섭, 정혜연, 이석문, 이성배, 최광진, 강석준, 홍성덕, 오환인 議員 <p>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조사위원 선임(9명) 기창표, 전성장, 김정현, 이석문, 이성배, 박덕균, 조재구, 허준구, 정일수 議員 <p>8. 휴회의件</p>	
		제2차 10. 20 (금)	<p>1. 구정에 관한 質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순서 : 사무국에 接受한 順으로 결정 -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별도수록 	
		제3차 10. 21 (토)	<p>1. 구정에 관한 질문(계속)</p>	
		제4차 10. 23 (월)	<p>1. 구정에 관한 질문(계속)</p>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2차 12. 8 (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構成의 件 - 예산결산특별위원 選任(15명) 기창표, 김동덕, 전성장, 김정현, 박노현, 이성배, 최광진,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권재일, 홍성덕, 오환인, 허준구, 정일수 議員 2. 구정에 관한 質問 - 질문순서 : 사무국에 接受한 順으로 결정 -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별도수록	
		제3차 12. 9 (토)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 - 행정사무조사 위원 選任(13명) 이기봉, 정현철, 김종섭, 김종철, 정혜연, 조갑현,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강석준, 임재선, 김명락 議員 2. 구정에 관한 質問(계속)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件	(원안가결) (채택가결)
		제4차 12. 11 (월)	1. 구정에 관한 質問(계속)	
		제5차 12. 14 (목)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부 결)
		제6차 12. 19 (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견 ○ 발의자 : 홍성덕 議員	(원안가결)

II. 委員會 運營

1. 議會運營委員會

가. 構成

구 분 반기별	운영기간	위원장	간사	위원	비고
전반기 (제1대)	'95. 1. 1 ~ 6. 30	정일출	최용환	전재환, 윤익수, 좌두행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김평락	총 9 명
후반기 (제2대)	'95. 7. 1 ~ 12. 31	임재선	이석문	전성장, 김종섭, 정연식 강석준, 정일출, 오환인 김평락	총 9 명

나. 案件處理 現況

議會運營委員會는 '95. 2. 8 開議된 제30회 臨時會부터 제38회 定期會까지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議長, 副議長 任期延長 決議案」등을 제안·처리하도록 하였다.

'95. 7. 21 제2대 의회원구성에 의하여 제1기 議會運營委員長 選出과 委員會 幹事を 위와 같이 선임, 委員會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의회운영예산안 심사, '95년도 구행정 사무감사 등을 의회발전 측면에서 積極 실시하였다.

계	조례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 결산안	청원	기타 (회기결정)
22	4	.	2	.	4	.	12

다. 會期別 案件 處理內容

회 기 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29회 정기회 (폐 회 중)	제 4 차 (95. 2. 6)	1. 제3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2. 8 ~ 2. 10(3일간)	
제30회 임시회 (폐 회 중)	제 1 차 (95. 3. 14)	1. 제3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3. 21 ~ 3. 30(10일간)	
제31회 임시회 (폐 회 중)	제 1 차 (95. 4. 8)	1. 제3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4. 14(1일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 任期延長의件	
제32회 임시회 (폐 회 중)	제 1 차 (95. 5. 8)	1. 제3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5. 16 ~ 5. 25(10일간)	
제33회 임시회	제 1 차 (95. 5. 1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3. 1995년도 제1회 서대문구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4회 임시회 (폐 회 중)	제 1 차 (95. 7. 21)	1. 간사선임의건 上程處理 - 의회운영위원회幹事 : 이석문 委員 選任	
	제 2 차 (95. 7. 28)	1. 제3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8. 3 ~ 8. 5(3일간)	
제35회 임시회 (폐 회 중)	제 1 차 (95. 8. 4)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 기 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 2 차 (95. 8. 23)	1. 제3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8. 28 ~ 9. 1(5일간)	
제36회 임시회 (폐 회 중)	제 1 차 (95. 8. 2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議事堂建立 추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가결)
	제 2 차 (95. 10. 12)	1. 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10. 19 ~ 10. 28(10일간)	
제37회 임시회 (폐 회 중)	제 1 차 (95. 10. 24)	1. 1995년도 제2회 西大門區追加更正豫算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제 2 차 (95. 11. 18)	1.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議事日程 협의의件 - 회기결정 : '95. 11. 25 ~ 12. 29(35일간) 2.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計劃협의의件	(원안가결)
제38회 정기회	(95. 11. 3)	1. '95년도 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회사무국)	
	제 1 차 (95.12. 71)	1. 1996년도 豫算案 심사(의회사무국) 2.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承認案 심사	(수정가결)
	제 1 차 (95. 12. 28)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作成	(채택의결)

라. 議案審查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5. 8 김원주 委員 외 6인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으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95. 5. 17)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現行 常任委員會 條例 제3조 제2항의 委員會別 所管이 일부 委員會에 과다 編成되어 직무 形평과 효율적인 議會運營을 위하여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總務委員會 所管職務 中 “시민국 所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所관으로 조정 변경함(案 第3조 第2항).

2) 수정요지

제2조 내지 제3조 常任委員會 名稱 中 다음과 같이 수정함.

위원회 명칭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수정함(案 第2조 第3항, 第3조 第2항 第3호).

3)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김원주 委員 외 6인이 發議한 條例案을 修正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7. 28 정일수 委員 외 6인이 발의한 改正條例案으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95. 8. 4)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地方自治法 施行令 중 改正令이 '95. 7. 1 公布(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議會 議員에게支給되는 議政活動費 및 會議手當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條例 題名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함.
- 議政活動費 월 350,000원을 서대문구 地方公務員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案 제2조)
- 會期 중 議會의 會議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0,000원 지급(案 제3조)
- 議員이 본회의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여비 지급(案 제4조, 제5조)
- 議政活動費 및 會議手當 지급을 '95 7.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附則에 規定

2) 질의 및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

3)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정일수 委員 외 6인이 發議한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7. 28 전성장 委員 외 6인이 발의한 改正條例案으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95. 8. 4)에 상정되었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常任委員會委員의 정수를 서대문구의회의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規定에 의한 議員의 총수와 부합되도록 規定하고 常任委員會 所管 부서 중 일부 항목을 局別 직제서열의 순에 따라 조정하며 제2대 常任委員會 委員의 任期를 '94. 12. 20 개정 공포된 地方自治法附則제3조의 規定에 의한 의장, 부의장 임기(1년 6개월)와 같도록 규정하여 常任委員會를 效率的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

가) 주요골자

- 시민건설위원회를 「13명」에서 「14명」으로 함.
-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도시정비국, 건설국, 시민국을 局別 職制序列순에 따라,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조정함.
- 제2대의회 常任委員과 委員長의 임기를 議長, 副議長 임기와 같이 1년 6개월로 附則으로 規定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전성장 委員 외 6인이 發議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결 의 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 ◆

1) 제 안

'95. 4. 7 최용완 委員 외 5인이 발의한 決議案으로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95. 4. 8)에 상정하였으며 주문 및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가) 주 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기 議長, 副議長, 各 常任委員長 임기를 '95. 6. 30까지(77일간) 延長하기로 한다.

나) 제안이유

- '94. 12. 20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附則 제2조의 規定에 의하여 기초의원외의 임기가 4년을 초과하여'95. 6. 30까지(77일간) 연장 조치되었으나 議長團 임기에 관하여 명문으로 規定한 바가 없어 기초의원외의 임기와 같이 特例規定으로 확대적용 할 수 없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기의 議長團 임기가 '95. 4. 14일자로 滿了하게 되는 바, 기초의원 임기 연장기간(77일간) 중 效率的인 의회운영과 의장단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 기초의원외의 임기와 동일하게 서대문구의회 제2기 議長團 任期를 '95. 6. 30까지 延長토록 하기 위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용완 委員 외 5인이 發議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 ◆

1) 제 안

'95. 8. 28 제36회 임시회 제2차 議會運營委員會에서 委員會案으로 제안한 決議案으로 주문 및 提案理由는 다음과 같다.

가) 주 문

- 서대문구의회의사당 建立을 推進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委員은 9인으로 하고 委員長 1인과 幹事 1인으로 構成한다.
 - 委員會의 活動期間은 委員會 構成日로부터 의사당건립 완성시까지로 하되, 의사당 건립이 완성되면 委員會는 自動廢止된다. 단 위원의 임기는 1996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안이유

- '93. 5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構成된 이후, 보건소 및 의회청사에 대하여 '95년도 豫算으로 의사당 개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 보건소청사 이전 예정지인 유진상가 건물보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보건소 이전을 再檢討 중에 있는 바, 의회청사 개조공사 추진이 어렵게 되고있어 의회의사당 독립청사 確保가 불확실한 상태에 直面해 있으므로,
- 傍聽施設, 常任委員會 會議場, 大會議室 運營, 본회의장(계단식), 각 의원연구실, 執行部와의 連繫 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品位 및 본격적인 주민자치와 의회기능에 적합한 의사당 건립을 積極 推進하기 위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회청사건립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음.

2. 總務委員會

가. 構 成

구분 반기별	운영기간	위원장	간사	위원	비고
전반기 (제1대)	'95. 1. 1 ~ 6. 30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강석종 정전춘, 박노현, 김종채 정병팔, 구자억,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총 13 명
후반기 (제2대)	'95. 7. 1 ~ 12. 31	김종철	이성배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정현, 정혜연, 정연식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오환인, 김평락, 허준구	총 14 명

나. 案件處理 現況

總務委員會는 '95. 2. 8 제30회 臨時會 開會 이후 '95. 6. 30 제1대 의회 임기 終了時까지 각종 條例 案과 구유재산 관리 변경 承認案 등을 심사·처리하여 市民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積極적인 委員會 活動을 하였다.

'95. 7. 21 제2대 議會 院 構成에 따라 제1기 總務委員長 選舉에 이어 幹事를 選任 常任委員會를 본격 出帆하였는 바, 조례안 및 '96년도 위원회소관 예산심사와 '95년도 구행정 사무감사를 민원 분야 등 주민복지증진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하였다.

계	조례안	승인안	결의한	건의안	예산 결산안	청원	기타
44	30	2	.	.	5	.	7

다. 會期別 案件處理 內容

구 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 30 회	제 1 차 (95. 2. 8)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化粧室設置 및 管理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 및 運用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31 회	제 1 차 (95. 3. 22)	1. 業務報告 ○ 3室所管 • 문화공보실 · 감사실 · 시민봉사실 ○ 總務局所管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국민운동지원과 · 생활체육과 · 민방위과 ○ 保健所所管 • 보건행정과 · 보건지도과 · 의약과	
	제 2 차 (95. 3. 23)	1. 業務報告 ○ 財務局所管 • 재무과 · 세무1과 · 세무2과 · 토지관리과 ○ 市民局所管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위생과 · 환경과 · 청소과	
	제 3 차 (95. 3. 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民大賞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5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구 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 33 회	제 1 차 (95. 5. 1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5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5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總務委員會所管 : 77,345천원 增額編成	
제 34 회	제 1 차 (95. 7. 26)	1. 幹事選任의 件 : 이성배 議員 選任	
제 36 회	제 1 차 (95. 8. 29)	1. 業務報告 ○ 3室所管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總務局所管 ·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제 2 차 (95. 8. 30)	1. 業務報告 ○ 財務局所管 ·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 保健所所管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제 3 차 (95. 8. 3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傷害 등 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歲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業務報告 財務課所管(繼續)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구 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 37 회	제 1 차 (95. 10. 22)	1. 現場調査의 件(동청사신축부지 및 구유지 관리실태) - 현장조사 : 충정로, 홍은2동, 남가좌1동	
	제 2 차 (95. 10. 24)	1. 1995年度第2回西大門區追加更正豫算案 - 總務委員會所管	
	제 3 차 (95. 10. 25)	1. 1995年度第2回西大門區追加更正豫算案(繼續) - 總務委員會所管 : 1,452,386천원 증액	(수정가결)
	제 4 차 (95. 10. 2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 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		(부 결)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부 결)	
제 5 차 (95. 10. 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38 회	(95. 11. 27 ~ 12. 2)	1. '95年度區行政事務監查實施 - 監查期間 : '95. 11. 27 ~ 12. 2(6일간) - 監查機關 : 3室, 總務局, 財務局, 保健所, 5개 洞事務所	
	제 1 차 (95. 12. 4)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總務委員會所管) 2. 199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總務委員會所管) 3. 1994年度豫算案(總務委員會所管)	(원안가결) (원안가결)

구 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 2 차 (95. 12. 5)	1. 1996年度豫算案(繼續)	
	제 3 차 (95. 12. 6)	1. 1996年度豫算案(繼續)	
	제 4 차 (95. 12. 7)	1. 1996年度豫算案(繼續)	(원안가결)
	제 5 차 (95. 12. 2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6 차 (95. 12. 22)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7 차 (95. 12. 23)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 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8 차 (95. 12. 2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9 차 (95. 12. 27)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作成	
	제 10 차 (95. 12. 28)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作成	(채택가결)

라. 議案審查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1) 제 안

'94. 12. 17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2. 8 제30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낡은 시설과 청소상태 등이 불결하여 다수 시민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拒否하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을 持續적으로 清潔하게 유지할 수 있는 管理體系確立과 이용시민에 대한 質 높은 便益提供을 위하여 불량화장실에 대한 行政制裁 및 有料 화장실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에 대한 清潔維持 및 衛生的 管理義務附與(案 제3조)
- 공중화장실의 具體的 範圍 및 개방화장실 지정협의규정(案 제4조, 제12조)
- 공중화장실 設置基準 및 清潔維持管理基準을 정함(案 제5, 6, 10조)
- 공중화장실 일정 基準에 未達되는 경우 行政制裁根據(案 제14, 15, 18조)
- 一定施設基準 등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한 有料化 根據(案 제16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原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및운용조례안 ◆

1) 제 안

'94. 12.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制定條例案으로써 '95. 2. 8 제30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1995년 쓰레기 手數料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再活用品 排出量이 急增할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再活用品의 원활한 收去·處理를 위하여 再活用品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二元化하여, 주민단체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自律的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채서 직접 수집한 再活用品 販賣代금은 再活用品 收集·選別費用 등에 再投資하여 再活用 活性化에 寄與하도록 規定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再活用品 販賣代金の 積立과 管理에 따른 基金設置·運營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基金의 財源은 管轄地域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再活用品의 販賣代金과 基金運用收益金으로 함(안 제2조).
- 基金의 用途는 再活用品 수집·選別에 所要되는 費用과 再活用品 수집 환경미화원 獎勵金 및 厚生福祉費用,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事業에 사용함(안 제3조).
- 구청장은 基金의 용도에 따른 支出基準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獎勵金 및 厚生福祉費用은 販賣代金の 30% 範圍內에서 支出함(안 제6조).

2) 수정요지

- 안 제6조 : 환경미화원 獎勵金 및 厚生福祉費用을 販賣代金 30% 範圍內에서 50% 範圍以內로 수정함.

3)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중 9명이 贊成하여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原案을 修正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4. 2.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6. 2. 8 제30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 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英文 국제결혼 證明發給 및 再發給 업무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이 結婚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시만과)에서 발급토록 二元化되었으나 1995. 2. 1부터 管轄區廳에서 婚姻申告와 同時 結婚證明토록 제도개선되고
- 외국인 登錄 및 謄本發給 업무는 '94. 4. 1 出入國 管理法 改正으로 滯留地 관할 출입국 관리사 무소에서 전산처리되며
- 또한 身元證明 確認發給 업무는 '94. 4. 1부터 국민의 권리 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 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며 行政의 信賴增進과 개인의 私生活 保護와 住民便益을 위함이며.
- 建築物 臺帳의 發給 및 閱覽手數料 업무는 1992. 6. 1자로 建築物臺帳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 한 規則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대문구 手數料 徵收條例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英文 국제결혼 證明發給 및 再發給 : 1매당 3,300원 신설(구수입)
- 外國人 登錄 및 謄本發給業務 中止
- 身元證明 발급업무 중지
- 建築物臺帳 발급 및 열람수수료 인상 : · 발급수수료 - 350 → 400원
· 열람수수료 - 100 → 200원

3)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原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

1) 제 안

'95. 2. 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制定條例案은 '95. 2. 8 제30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地方自治法 改正施行('94. 12. 20) 및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 등에 관한 規定(대통령령제14480호)이 制定 공포시행('95. 1. 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안 제정.

나) 주요골자

서대문구에 두는 室·局 및 行政機構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코자하는 사항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原案을 修正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1) 제 안

'95. 2. 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制定條例案은 '95. 2. 8 제30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地方自治法 改正施行('94. 12. 20) 및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 등에 관한 規定(대통령령제14480호)이 제정 공포시행('95. 1. 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안 제정.

나) 주요골자

서대문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 규정.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原案을 修正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2. 8 제30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保健福祉部의 '95년 結核管理事業 指針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변경됨('94. 1. 4)
- 항결핵제 手數料가 藥制에 準하여 策定되어 있어 處方이 변경될 때마다 手數料가 변동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手數料 徵收에도 혼란을 초래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항결핵제 普及手數料를 처방 종류에 따라 10종류로 徵收하던 것을 초치료, 재치료 처방으로 단 순화 시키고 手數料도 일률적으로 부과 徵收토록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 ◆

1) 제 안

'95. 1.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우리구 地域發展과 밝고 건전한 區民生活 氣風을 振作시키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模範區民을 選拔·褒賞함으로써 40만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함.

가) 주요골자

- 定期的으로 每年 區民의 날 1회 시상
- 賞의 종류 : 孝行, 地域奉仕, 區民和合, 特別活動(송재)부분
- 受賞人員 : 部門別 1명 또는 1단체
- 受賞對象 : 施賞日을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 區民 또는 團體
- 施賞品 및 施賞金 : 受賞者에게 賞牌와 副賞을 受與
- 功績審査委員會 構成(안 제7조)
 - 부구청장을 委員長으로 하고 각 국장 및 구의회의장이 推薦하는 구의원 3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15인으로 構成

2) 수정안

- 한 제2조 : 受賞對象者 서대문구 거주기간을 施賞日을 기준으로 3년에서 5년으로 居住한 區民 또는 團體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7조 : 功績審査委員會 10인내지 15인 중 구의원 3인을 구의원 5인으로 수정함.

3)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修正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2. 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地方自治法 改正施行('94. 12. 20) 및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 등에 관한 規定(대통령령제14480호)이 制定·公布 施行('95. 1. 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制定.

나) 주요골자

地方自治法 行政機構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規定(대통령령)의 制定과 관련하여 서대문구 議會事務局의 定員의 직급별 定員은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고, 구의회사무국<제4조>직원의 정원(별표)란 삭제.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3.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우리구 職制중 기능 衰退 分野의 통·폐합(지적, 토지 관리 일원화) 및 행정 수요 增加 分野(세무 기구 부과·징수 분리, 지역교통 행정보강)를 시기에 맞도록 조직을 改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적과 소관 국 조정 : 도시정비국 → 재무국
- 지적과 + 토지관리과 → 지적과(감 1과)
- 세무1과, 세무2과 → 세무관리과, 부과과
- 지역교통과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증 1과)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3.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분구대상 자치구(3개구 증설)의 洞定員 擴充 調定과 관련하여 우리구 동 행정9급 정원을 減縮하여 신설구의 정원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증원등의 사유로 정원조례를 改正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동 정원 행정9급 : 13명 감축 (동 → 신설구)
- 주차단속원 기능직 10등급 증원 → 22명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법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3.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改正(보사부 예규 제600호 '91. 9. 9) 및 모자복지법제정 시행(법률 제4121호 (89. 4. 1)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母子福祉法과 淪落行爲等 防止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資格證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녀(가정) 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
-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防止法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함
- 임용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資格證소지자를 신설(안 제4조)
-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 요건 강화(안 제4조)
- 신규임용 上限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안 제4조 제4항)
- 불합리한 資格基準 삭제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3.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改正 공포('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公有財産의 賣却代金を 10년이내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함. (안 제21조 제1항)
- 公有財産의 賣却代金を 10년이내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함. (안 제21조 제2항)
- 公有財産의 賣却代金を 5년이내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함. (안 제21조 제3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3.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5. 17 제33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95. 1. 1 改正된 지방세 조례내용중 '94. 12.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나) 주요골자

-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條例制定規定 삭제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明白化
- 감면시 신고 규정 삭제
-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94 改正시 누락부분)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5. 1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5. 17 제33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특수 규격봉투를 製作 供給하여 住民 便宜를 도모하고자 改正·補完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규격봉투의 가격중 30l 및 특수 규격봉투 가격 추가함. (안 제11조 제2항)
- 규격봉투의 종류중 특수 규격봉투 추가함. (안 제4조)
- 특수 규격봉투 대상 폐기물 : 깨진유리, 조명기구셋트(형광등), 화분, 장판지, 벽지,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생긴 일반폐기물
- 규격 봉투 규격 및 용도 일부 삭제 변경 (안 제15조 제2호)
- 규격 봉투 재질 삭제함. (안 제15조 제4호)
-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추가 (안 제23조 제2호)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5.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5. 17 제33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지방사회단체장)이 각 구별 1명이 承認되어 '95. 7. 1부터 施行됨.

나) 주요골자

- 구청장 1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정원 조정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7.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6. 5. 16. 대통령령 제14647호)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조례에 “議會事務機構”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정원조례 제2조중 “議會事務機構 : 26명”규정

2) 질의 답변 및 소수의견

가) 질의요지

-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와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사무국직원 정원이 각각 26명으로 규정 한다면 2원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소수의견

- 상위법 및 모법 등 제반법규사항에 대하여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가를 알고 조례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3)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중 9명의 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7. 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改正공포('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相關사항을 改正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改正
-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제4조 제1항 후단) 및 삭제(제4조 제2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7. 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의료법 제32조의 2('94. 1. 7 신설)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규칙('95. 1. 6제 정)으로 의료기관(保健所, 保健支所 및 徵兵檢査를 실시하는 兵務廳 포함)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행정처분 등 지도, 감독업무에 대하여 사무분장의 범위와 처리기 준을명백히 規定함으로써 업무의 效率을 높이고자 조례를 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신규위임사무
 - 의료기관(保健所, 保健支所 및 徵兵檢査를 실시하는 兵務廳 포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에 관한 신고, 양도, 폐기에 관한 사항(안 별표중 38)
 - 의료기관(保健所, 保健支所 및 徵兵檢査를 실시하는 兵務廳 포함)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안 별표중 39)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8. 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 군)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방세가 특별시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를 改正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最初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종합토지세는 제방세법 234조의 15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8. 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94. 12 지방세법령 改正과 관련하여 改正 시행된 구세조례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에 대한 條例改正시 누락된 바 이를 補完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 및 미비점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不動產의 範圍를 정하고
 - 제26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輕減律을 정함.
 - 條例改正시 삭제된 조례 제28조를 부활시켜 종합토지세 輕減規定을 정함.
- 條例改正案 요약
 - 財産稅 구관사업용 不動產 범위 : 자치구세조례 제19조 제1항
 - 財産稅 輕減率 : 자치구세조례 제19조 제2항
- 종합토지세 구관사업용 부동산 범위 : 자치구세조례 제28조 제1항
 - 綜合土地稅 輕減率 : 자치구세조례 제28조 제2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8. 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滯納額이 상대적으로 增加되고 과년도 滯納額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褒賞金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褒賞金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改正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褒賞金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褒賞金 支給對象 公務員 및 特別功績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 범위를 제한함.(안 제3조 제1호 및 제3조의 2)
-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褒賞金額은 1건당 3만원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9. 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0. 26 제37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改正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삭제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9.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0. 26 제37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직제 중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과는 통·폐합하고 행정 수요 증가분에 대하여는 분과하여 구민행정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 우리구 行政機構設置條例를 改正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실·과 조정
 -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합병 - 사회진흥과(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
 - 주택과를 분과
 - ┌ 주택과(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
 - └ 주택개량과(개량1계, 개량2계, 주거환경계)
- 과업무조정
 - 총무과 청사관리계 업무 → 건축과 영선계로 신설 업무 이관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사업 업무 → 사회복지과로 이관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9.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0. 26 제37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行政機構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規定(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정원의 총수안에 “議會事務機構”의 정원을 규정토록하며
- 또한 그간 研究·技術 분야 등 전임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약·채용하여 왔으므로 인력의 비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직공무원 채용시는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무부의 정원승인사항을 정원조례에 포함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변경
 - 정원조례 제2조중

[본청 : 861명 → 본청 : 865명(교통직 3명, 행정직 1명)
	소속기관 : 78명 → 소속기관 : 83명(의무직 5명)
- 신설
 - 정원조례 제2조중 “議會事務機構 : 26명” 신설

2) 주요질의요지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상위법(지방자치법)적용이 착오를 일으켰으며 의무직 5명을 增員한다면 구자치 예산운영에 사전검토되어야 할 것임.

3)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중 10인의 위원이 반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본회의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9.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0. 27 제37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徵收하는 個人情報 열람·정정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遂行을 도모하고 국민의 權利와 利益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을 정함.
 - 개인정보관련 문서의 閱覽 1건 1회 : 100원
 - 개인정보관련 문서의 訂正 1건 : 200원
 - 개인정보관련 문서의 複寫 1매 : 100원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1.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2. 21 제38회 정기회 제5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行政機構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轉任專門職公務員과 議會事務機構의 정원을 서대문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변경
 - 정원조례 제2조 중 본청 : 861명 → 본청 : 865명(교통직 3명, 행정직(공연기획) 1명)
 - 직속기관 : 78명 → 직속기관 : 83명(의무직 5명) (전문직정원 9명 포함)총 1430 → 1439명
- 신설
 - 정원조례 제2조중 '의회사무기구 : 26명' 신설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1. 2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2. 22 제38회 정기회 제6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1995. 5. 16 改正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사무기구」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서대문구청원조례에 포함 改正함에 따라 이중적인 규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改正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 제4조 개정
 -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명으로 한다 →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조례에 의하도록 한다.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회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0.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2. 23 제38회 정기회 제7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95. 4. 1 직제개편으로 인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의 과 통합으로 인하여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서대문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직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대문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6조(간사 및 서기) 제1항 중
- '토지관리과장'을 → '지적과장'으로 改正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2. 26 제38회 정기회 제8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호적법 시행규칙이 改正(대법원규칙 제1369호 - '95. 6. 5)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 규칙에 明示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戶籍過怠料부과 징수조례를 改正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시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戶籍法 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기준이 明示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 삭제.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승 인 안

◆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1) 제 안

'95. 3.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總務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우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위함.

나) 주요골자

- 행정재산(토지) 매입

총 재산 현황		매 입 대 상		매입대상재산의 개별공시지가액	비 고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351	35,338.5	1	15	660천원	'95. 3월 현재

- 잡종재산(토지) 매각

총 재산 현황		매 각 대 상		매각대상재산의 개별공시지가액	비 고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409	46,216.74	105	5,447.8	4,673,790천원	'95. 3월 현재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1) 제 안

'95. 5. 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5. 17 제33회 임시회 제1차 總務委員會에 上程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우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매각) 변경 승인을 위함.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매각

총 재산 현황		매 각 대 상		매각대상재산의 개별공시지가액	비 고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304	40,768.94	8	779.9	585,801	'95. 5월 현재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3. 市民建設委員會

가. 構成

구분 반기별	운영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전반기 (제1대)	'95. 1. 1 ~6. 30	전재환	조갑현	송영우 이봉수 윤익수 김정현 김영일 정화진 최용완 박정래 김평락 정일수 팍재만	총 13명
후반기 (제2대)	'95. 7. 1 ~ 12. 31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박노현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홍성덕 정일수	총 14명

나. 案件處理現況

市民建設委員會는 '95. 2. 8 제30회 임시회 개최 이후 '95. 6. 30 제1대 의회 任期終了時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駐車場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條例案, 建議案과 請願을 審査·處理하였으며, '95. 5. 25 「議會委員會條例」改正에 의하여 「시민국에 속하는 업무」가 총무위원회로부터 移管되고 위원회 명칭이 소관업무와 일치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다.

'95. 7. 21 제2대 의회 제1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이어 간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어 「老人福祉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등 條例案, 청원 및 안산내 아파트建立 반대 결의, '96년도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95년도 구행정 事務監査를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 改善 측면에서 적극 실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계	조례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 산 결산안	청 원	기 타
25	6	1	6	.	5	2	5

다. 會期別案件處理內用

구 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30회	제1차 ('95. 2. 8)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31회	제1차 (3. 22)	1. 業務報告 : 도시정비국 소관	
	제2차 (3. 23)	1. 業務報告 : 건설국 소관	
	제3차 (3. 27)	1. 弘濟川高水敷地開發에 關한 建議案 2. 鞍山一帶循環道路建設에 關한 建議案 3. 仁旺山邊裏面道路建設에 關한 建議案 4. 都市基本計劃에 關한 建議案 5. 都市計劃用途地域變更및農·水産物直去來市場育成에 關한 建議案 6. 地下鐵建設路線延長에 關한 建議案 7. 公園用地解除請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3회	1차 (5. 17)	1. 業務報告 ○ 市民局 所管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建設局 所管 ·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원안가결)
제34회	1차 7. 21	1. 幹事選任의 件 : 기창표의원 선임	

구 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36회	1차 (8. 29)	1. 業務報告 ○ 市民局 所管 •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 환경과·청소과 ○ 都市整備局 所管 • 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건축과	
	2차 (8. 30)	1. 業務報告 ○ 都市整備局 所管(繼續) • 주택과·건축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建設局 所管 • 건축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3차 (8. 3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組合아파트新築工事に따른被害住宅確認및特別 對策要請에 관한請願	(원안가결) 당사자합의:종결
제37회	1차 (10. 22)	1. 現場調査의 件 : 재래시장 및 재개발현장 답사	
	2차 (10. 24)	1. 1995年度 第2回西大門區追加更正豫算案(繼續) • 市民建設委員會 所管	
	3차 (10. 25)	1. 1995年度 第2回西大門區追加更正豫算案(繼續) • 市民建設委員會 所管	
	4차 (10. 2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5차 (10. 27)	1. 延禧洞漢陽아파트建立反對決議案에 대한動議의件	(채택의결)

◆ 상임위원회 운영 ◆

구 분	차 수	주 요 내 용	차 수
제38회 정기회	1차 (12. 4)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2. 199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件 3. 1996年度豫算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2차 (12. 5)	1. 1996年度豫算案(繼續)	
	3차 (12. 6)	1. 1996年度豫算案(繼續)	
	4차 (12. 7)	1. 1996年度豫算案(繼續)	(수정가결)
	5차 (12. 2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수정가결)
	6차 (12. 22)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再活用販賣貸金管理基金設置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7차 (12. 23)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수정가결)
	8차 (12. 26)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피감사기관 :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 감사기간 : '95. 11. 27 ~ 12. 1 (5일간)	
	9차 (12. 27)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作成	
	10차 (12. 28)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作成	(채택의결)

라. 議案審查條例案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2. 8 제30회 임시회 제1차 都市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현재 市에서 수입 조치되고 있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駐車料金を 주차장관리 위탁권자인 區收入으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인 견인기능을 폐지하여 도로교통법상 견인 주체인 區廳長에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있음.

나) 주요골자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익금이 市收入에서 區收入으로 전환
- 견인료 및 보관료 세입
 - 改正前 : 시수입
 - 改正後 : “견인료 → 구수입, 보관료 → 시수입”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8.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市民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대통령 제14382호)의 改正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 道路占用料徵收條例가 改正됨에 따라 相關규정을 改正하고 일부 點用요율을 調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路上駐車場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익금이 市收入에서 區收入으로 전환
- 견인료 및 보관료 세입
 - 改正前 : 시수입
 - 改正後 : “견인료 → 구수입, 보관료 → 시수입”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8.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8. 31 제36회 임시회 제3차 市民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대통령 제14382호)의 改正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 道路占用料徵收條例가 改正됨에 따라 相關규정을 改正하고 일부 點用요율을 調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路上駐車場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익금이 市收入에서 區收入으로 전환
- 견인료 및 보관료 세입
 - 改正前 : 시수입
 - 改正後 : “견인료 → 구수입, 보관료 → 시수입”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0.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0. 26 제37회 임시회 제4차 市民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 改正규칙, '95. 6. 20)로 廢棄物管理法 제20조 제33항의 규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사용개시신고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一般廢棄物處理施設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過怠料를 賦課 및 徵收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過怠料處分通知등에 廢棄物管理法 제63조 제1항 제5호를 포함시켜 구청장이 使用開始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過怠料 賦課處分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1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0.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2. 21 제38회 정기회 제4차 市民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改正('95. 4. 1)에 따라 우리구 조례중 糞尿處理 시설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過怠料賦課 徵收 節次등을 보완하여 업무의 效率性을 기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糞尿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添附 및 시장의 협의 삭제(안 제8조 제1항1호 및 제3항)
- 糞尿 淨化槽清掃 手數料의 납부의무 승계삭제(안 제15조)
- 糞尿관련 영업의 허가시 시장의 협의 삭제(안 제17조 제1항)
- 過怠料賦課, 징수절차 및 양식등을 보완하여 過怠料處分의 효율성을 기함(안 제20조)
- 糞尿處理施設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過怠料 부과기준 제정(안 별표4 제12호)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0.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2. 22 제38회 정기회 제6차 市民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대문구 再活用品 販賣代金 管理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제3조(기금의 용도)를 改正하여 사용목적에 環境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再活用品 수집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대상이 수집환경미화원으로 制限되어 있는 것을 再活用品 수입에 참여하는 就勞事業者, 운전기사 등으로 수혜폭을 확대하여 再活用品 수집활성화 및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準用規定으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여 效率的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用途에 環境改善資金 사용 追加(안 제3조 1)
- 再活用品 수집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대상에 수집환경미화원을 수집환경미화원등으로 확대(안 제3조 2)
- 準用規定에 西大門區 再活用品 販賣代金 管理基金 運用管理規定을 정하여 運用할 수 있도록 追加(안 제9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5. 11.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提出된 이 條例案은 '95. 12. 23 제38회 정기회 제7차 市民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대문구 老人의 自立基盤을 造成하고 育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設置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老人福祉를 위하여 基金을 設置하고 그 관리, 運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안 제1조)
- 基金의 造成은 서대문구의 出演金,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의 출연금,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基金運用 收益金과 기타 收益金으로 함.(안 제2조)
- 基金의 支援 用途는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指導育成, 老人教育 및 指導育成傳統文化 선양, 奉仕活動 참여 및 육성지도, 老人의 健康 및 趣味活動 조장과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정함.(안 제3조)
- 基金의 管理, 運用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基金審議委員會를 두고 委員會의 기능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2) 수정안

- 안 제5조 제3항중
 - 제1호 : 「企劃豫算課長, 財務課長, 家庭福祉課長, 保健指導課長」을 「企劃豫算課長, 社會福祉課長」으로
 - 제2호 : 「서대문구의회 의원 3인」으로 신설하며
- 안 제10조 제1항중
 -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를 「출납년도폐쇄후 3월 이내에」로 수정함.

3)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전성장 의원의 19인이 발의한 원안을 修正可決하였음.

■ 건 의 안

◆ 홍제천고수부지개발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5. 3. 14 좌두행 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建議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都市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주민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 체육시설 : 배드민턴, 씨름, 농구, 체력단련장
 - 휴식공간 : 산책로, 자전거도로, 가로공원 조성
- 홍연교 ~ 유진상가 구간 : 산책로 및 휴식공간 등 주민편의 시설 조성

나) 제안이유

사천교에서 유진상가 앞 홍제천 고수부지는 서울북부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공사로 일부지역은 毀損된 채로 放置되어 있고 사천교옆 停車場은 整備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都市美觀이 沮害되고 있으며 쓰레기적환장으로 인한 河川汚染으로 自然環境이 破壞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이 侵害되고 있는 바 방치되어 있는 홍제천 고수부지를 종합개발함으로써 도시미관 向上과 주차난 解消에 寄與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주민 생활도모와 건강한 서대문구 도시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좌두행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안산일대순환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5. 3. 14 좌두행 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建議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都市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안산일대 순환도로 건설

- 서대문구 동부지역 7개동(연희동, 홍제1·2동, 현저동, 천연동, 북아현동, 봉원동)과 연결하는 지선도로 건설
- 地域별로 안산과 연결하는 散策路 건설

나) 제안이유

안산은 서대문구 동부지역 7개동과 脈을 잇고 있는 中心名山으로 지역별로 연결하는 안산일대 循環道路와 散策路를 건설하여 내부 교통체계 向上과 幹線道路의 交通量을 分散 處理하여 交通滯症 解消에 기여하고 지역구민의 交通便利와 안산을 休息空間으로 活用함으로써 건강한 市民生活을 도모하고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좌두행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인왕산이면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5. 3. 14 좌두행 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建議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都市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仁旺山邊 이면도로 건설
 - 안산국민학교 ~ 문화촌 ~ 세검정구간 이면도로 건설
 - 인왕산 연결 散策路 건설

나) 제안이유

鞍山初等學校앞 의주로(무악재)에서 문화촌 ~ 세검정을 연결하는 裏面道路를 건설하여 交通停滯가 심한 홍은 4거리(유진상가앞)를 차량의 운행거리 및 시간의 短縮運行으로 經濟的 損失을 줄이고 幹線道路의 交通疏通 증진과 홍제3·4동의 이면도로 기능을 담당하여 內部交通體系의 圓滑에 기여할 수 있으며 仁旺山 散策路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 交通便益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圖謀하고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좌두행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도시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5. 3. 14 김평락 의원의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建議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都市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가좌역 부근 모래내시장 일대를 가좌지구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 간선도로 주변 및 모래내시장 : 일반상업지역
 - 이면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제안이유

가좌역세권의 中心地域으로 모래내시장 및 은좌상가를 중심으로 인접한 마포구 성산동 일대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준주거내지 商業地域으로 指定되지 아니하여 都市開發이 부진하고 市場周邊環境이 改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간선도로변 및 모래내시장은 商業地域, 裏面地域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과거부터 형성되어온 地域中心의 市場으로서 生必品の 流通機能을 維持하고 서대문구 서부지역 도시 중심지로 개발하여 일산신도시, 은평구, 마포구, 주민생활 便益을 圖謀하고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김평락 의원의 5인이 발의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농·수산물직거래시장육성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5. 3. 14 좌두행 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建議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都市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홍제역부근 유진상가 일대를 弘濟地區 중심기능 제고를 위해 一般居住地域을 準居住地域 또는 一般商業地域으로 확충
- 서울 西部地域 生活圈 市民을 위하여 인왕시장, 유진상가를 農·水産物 直去來 도매시장을 육성

나) 제안이유

홍제역세권 중심으로서 인왕, 홍제시장 및 유진상가등이 흥은, 홍제생활권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地域發展을 위하여 一般商業地域을 확충하고, 서울 서부지역 생활권 시민을 위하여 農·水産物을 生産價格으로 低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農·水産物 直去來 都賣市場을 育成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便益을 도모하고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좌두행 의원의 6인이 발의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지하철건설노선연장에관한건의안 ◆

1) 제 안

'95. 3. 14 좌두행 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이 建議案은 '95. 3. 27 제31회 임시회 제3차 都市建設委員會에 上程되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제3기 지하철 11호선을 - 서대문 ~ 독립문 ~ 홍은동 ~ 홍남교 ~ 남가좌동으로 노선 연장

나) 제안이유

제3기 지하철 11호선을 서대문 ~ 독립문 ~ 홍은동 ~ 홍남교 ~ 남가좌동으로 건설하도록 하여 일산신도시권 시민과 서부지역 시민의 도심을 연결하는 交通便益을 증진하고자 하며, 乘用車輛運行을 억제함으로써 交通遞增 解消에 기여토록 하고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방문 민원인의 交通便益을 圖謀하고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좌두행 의원의 5인이 발의한 원안을 可決하였음.

■ 결 의 안

◆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 ◆

1) 제 안

'95. 10. 27 제37회 임시회 市民建設委員會案으로 제안한 이 案은 도심속의 自然景觀을 保全하기 위한 決議案으로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韓半島 歷史와 함께 成長, 發展하여 온 서대문구의 뿌리의식 定着과 地方化時代에 부합하는 도심속의 快適한 自然景觀 保全 및 區民의 情緒咸陽을 위하여
- 안산의 自然環境을 파괴하는 「延禧洞 漢陽아파트 建立推進」을 철회하여 줄 것을 決議한다.

나) 제안이유

- 延禧洞 산 2의 5와 12필지 구 골프연습장 부지내 漢陽아파트 建立推進은 93. 2. 27 입지 및 土木審議委員會에서 도심속의 自然景觀을 위하여 自然綠地 保全이 결정되는 등, 수차에 걸친 신청과 伴侶 및 自進取下를 거듭하여 왔으나, 아파트 층고 調整 등 補完을 거듭한 끝에 '94년 4월에는 「立地 및 土木審議」를 끝내고, '94. 12. 8. 「建築 및 景觀審議」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一貫性 없는 住宅行政으로 信賴行政 具現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 地域住民의 休息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산중턱에 대단위 高層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산의 精氣가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심속의 自然景觀 毀損으로 쾌적한 環境을 잃게 되어 지역주민의 情緒 咸陽등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延禧洞 漢陽아파트 建立推進」을 철회하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環境保全과 주민의 福利增進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을 議決하였음.

 <1995년 10월 28일 제3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 서대문구 연희동 산 2의 5의 12필지 구 골프연습장 부지내 한양아파트 건립 추진은 '92. 10. 30.부터 건축규모 18층 22동 84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 반려 및 자진취하를 반복하는 동안, 아파트건립 신청부지중 일부에 대하여 '93. 2. 27.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에서 도시 경관의 제고를 위하여 안산의 자연녹지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나,
 - 아파트 층고 조정등 보완을 거듭한 끝에 '94년 4월에는 「입지 및 토목심의」를 끝내고 '94. 12. 8. 주식회사 한양 외 4개 조합아파트 신축에 대한 「건축 및 경관심의」까지 완료하여, 현재 사업자 측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지 아니할 수 없으며,
 -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미려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산 중턱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안산의 정기가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등 도심속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구민정서 함양등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구정장은 「연희동 한양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으로 이를 철회하도록 하여 서대문구민의 뿌리의식과 정서 함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산의 자연경관을 현재 상태로 보전할 것을 결의한다.
-

4. 特別委員會

가. 活動現況

特別委員會는 '95. 5. 16 구성되어 운영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4개분야 6개 特別委員會를 각각 構成하여 住民福祉 向上과 自治行政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건설적으로 운영하였는 바, 위원회별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95년도 제1, 2회 追加更正豫算案과 '96년도 豫算案 및 '94회계년도 歲入歲出決算審査 처리등 회기별로 각각 구성하여 구예산을 자치구 財政自立 측면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게 編成, 審議하였으며,
- '95. 11. 13 ~ 11. 16중 4일간에 걸쳐 운영한 「西大門區國·公有財産管理行政事務調査委員會」는 관련 공부에 대한 실사 및 현장 조사등을 통하여 國·公有財産 파악이 항상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확립할 것을 계고하였다.
- 議會議事堂建立推進委員會는 '95. 10. 19 구성되어 委員會 활동기간 중 지방화시대와 의회 기능에 적합한 獨立議事堂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고, 議事堂建立에 필요한 부지선정 및 추진예산을 確保하도록 하여 '96년도 예산안에 15억원의 부지매입 예산을 編成하도록 하였다.
- 住民用 新聞購讀에대한行政事務調査委員會는 '95. 12. 12 ~ 12. 18(6일간)까지 日刊紙 및 地域新聞購讀에 관한 취지와 新聞配付實態등을 조사하여 '96년도 예산 編成 및 審議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명	활동기간	내 용	위원회 구성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제1차)	제33회 임시회중 '95.5.22~5.23 (2일간)	1995년도 제1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의	委員長 : 김종채 幹 事 : 정화진 委 員 : 송영우, 이봉수, 조민행, 전성장, 강석중, 김정현, 김영일, 박정래, 정일수 (11명)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제2차)	제37회 임시회중 '95.10.21~10.25 (4일간)	1995년도 제2회 서대문구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委員長 : 김영일 幹 事 : 이기봉 委 員 : 정현철, 김종섭 정혜연, 정연식 이진수, 강석준 김평락 (9명)

위원회명	활동기간	내 용	위원회 구성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제3차)	제38회 정기회중 '95.12.12~12.19 (8일간)	-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 1996년도 예산안 편성심의	委員長 : 정일수 幹 事 : 박덕균 委 員 : 기창표, 김동덕, 전성장, 김정현, 박노현, 이성배, 최광진, 조재구, 정일출, 권재일, 홍성덕, 오환인, 허준구 (15명)
西大門區議會 議事堂 建立推進委員會	제37회 임시회중 '95. 10. 19~ '96. 12. 31	-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의회기능에 적합한 의회의 사당 건립을 위하여 활동기간중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 '96예산 반영 - 부지매입비 : 15억원	委員長 : 강석준 幹 事 : 김종섭 委 員 : 김동덕, 정혜연, 이석문, 이성배, 최광진, 홍성덕, 오환인 (9명)
財産管理特別委員會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95. 11. 13~11. 16 (4일간)	- 1993년부터 1995년 10월 까지 구정업무보고 내용 중 차이가 난 財産의 현황, 관리 및 처분에 대한실태조사	委員長 : 조재구 幹 事 : 기창표 委 員 : 전성장, 박덕균, 이성배, 김정현, 허준구, 정일수, 이석문 (9명)
住民用新聞購讀에 대한 行政事務 調査委員會	제38회 정기회중 '95. 12. 12~12. 18 (6일간)	'95. 1.1 ~ 11.30까지 주민용신문(서울신문, 지역신문)의 배부 및 구독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委員長 : 정혜연 幹 事 : 이기봉 委 員 : 정현철, 김종섭, 김종철, 강석준, 조갑현,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임재선, 김평락 (13명)

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 '95. 5. 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95. 5. 22 제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적 필수 경비에 중점을 두어,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구 청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자동차운행제한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음.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감	%	비 고	
총 계	83,183,072 (채 916,000)	81,759,896 (채 916,000)	1,423,176	1.7		
일 반 회 계	76,039,808 (채 916,000)	74,948,808 (채 916,000)	1,091,000	1.5		
특	계	7,143,264	6,811,088	332,176	4.9	
별	의 료 보 호 기 금	711,746	811,746	0	0	
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19,513	219,513	0	0	
계	주 차 장	6,112,005	5,779,829	332,176	5.7	

2) 豫算科目別 現況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증 (Δ) 감
	코 드	항 별			
총	계		75,535,318	74,112,142	1,423,176
일반회계	소 계		69,423,313	68,332,313	1,091,000
	111010	지방의회운영	1,711,056	1,710,456	600
	211000	기관운영	15,455,813	15,267,203	188,610
	231000	내무행정	5,400,186	5,486,626	△ 86,440
	232000	동행정운영	15,385,495	15,372,295	13,200
	241000	회계및재산관리	1,342,228	1,329,028	13,200
	311000	일반사회복지	5,363,118	5,333,118	30,000
	321000	보건위생관리	2,320,742	2,318,042	2,700
	341000	쓰레기처리	10,008,265	9,443,648	564,617
	342010	분뇨처리	587,903	551,446	36,457
	841000	예비비	963,482	949,481	14,001
	511000	도시계획관리	462,483	298,428	164,055
	521000	건설행정	10,422,542	10,272,542	150,000
	특별회계	소 계		6,112,005	5,779,829
주차장		111999 주차장시설관리	4,356,187	4,344,887	11,300
		121000 교통관리	1,610,718	1,294,142	316,576
		131000 예비비	145,100	140,800	4,300

3) 審查結果 要旨

가) 一般會計

- 기관 공통운영중 일반운영비
버스전용차선 근무직원 특별근무 활동비 당초 5,065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7,695만원으로 한다.
- 기관공통운영중 특수활동비
세무감사 특별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당초 6,756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4,756만원으로 한다.
- 기관공통운영중 자산취득비
노후행정비품 및 집기등 구입비 당초 1,000만원에서 건축과 모빌렉설치, 지적세무, 건축, 냉방비 구입에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한다.

나) 特別會計

- 주차단속관리, 여비, 사업명중 '2)주차단속직원 특수업무 추진' 을 '2)주차단속 및 주차시설 업무추진' 으로 변경하고, 예산액을 당초 3,3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하여 2,200만원을 삭감하고 '3)실·과등' 부기 사항은 삭제한다.
- 주차장관리, 시설비, 사업명중 "공영주차장 시설 및 부대시설설치등 경비" 2,200만원을 신설 증액한다.

4) 수정안(예산과목별현황)

가) 一般會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결과			비고
		95추경안	조정안	증(Δ)감	
합계		1,378,236	1,378,236	0	
201 일반운영비	(201-05) 버스전용차선 근무 직원급 량비	648,180	629,180	Δ 20,000	
202 여비	(202-01) 버스전용차선 근무 직원 특 수근무 활동비	253,666	273,666	20,000	
203 특수활동비	세무·감사담당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436,640	416,640	Δ 20,000	
407 자산취득비	행정비품 및 집기등	38,750	58,75	20,000	

나) 特別會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결과			비고
		'95 추경안	조정안	증(Δ) 감	
합계		387,875	387,875	0	
202 여비	주차단속 및 주차시설업무 추진	231,255	209,255	Δ 22,000	사업명 변경
404 시설비	공용주차장시설 및 부대시 설 설치등 경비	156,620	178,620	22,000	사업명 변경

5)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 '95. 10.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95. 10. 25 제3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95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계상된 필수 세출경비인 인건비(비정규직보수 등),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금 및 출연금 등), 복리후생비 등에 중점을 두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 경비와 '95년도 서울특별시 세입결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음.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감	%	비 고
총	계	85,312,072 (채 916,000)	83,183,072 (채 916,000)	2,129,000	2.5	
일	반 회 계	78,168,808 (채 916,000)	76,039,808 (채 916,000)	2,129,000	2.8	
특	계	7,143,264	7,143,264	0		
별	의 료 보 호 기 금	811,746	811,746	0		
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19,513	219,513	0		
계	주 차 장	6,112,005	6,112,005	0		

2)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一般會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장 별	항 별				
총	계	78,168,808 (채916,000)	76,039,808 (채916,000)	2,129,000	
의 회 비	지방의회운영	1,717,881	1,711,056	6,825	
일반행정비	기 관 운 영	17,014,142	41,935,526	1,558,329	
	기 획 관 리	644,287	595,482	48,805	
	공 보 관 리	1,218,301	1,218,301	0	
	내 무 행 정	5,144,167 (채916,000)	5,400,086 (채916,000)	△ 256,019	
	동 행 정 운 영	15,270,495	15,385,495	△ 115,000	
	회계및재산관리	1,494,712	1,342,228	152,484	
사회복지비	보건위생관리	2,384,529	2,320,742	63,787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Δ) 감	비 고
장 별	항 별				
민 방 위 비	민 방 위 관 리	217,279	217,279	0	
사회복지비	일 반 사회 복지	5,372,791	5,363,118	9,673	
	환 경 관 리	63,447	61,340	2,107	
	공 원 녹 지 관 리	1,063,625	1,018,319	45,306	
	쓰 레 기 처 리	10,124,920	10,018,265	116,655	
	분 뇨 처 리	638,961	587,903	51,058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	406,660	400,871	5,789	
지역개발비	도 시 계 획 관 리	471,018	462,483	8,535	
	주 택 사 업	257,806	203,343	54,463	
	건 설 행 정	10,615,863	10,422,542	193,321	
	치수및하수사업	3,056,765	2,901,560	155,205	
예 비 비	예 비 비	991,159	963,482	27,677	

3) 심사결과 요지

[一般會計]

- 기관공동운영중(업무추진비)
 - 주요업무추진비 20,000천원에서 10,000천원을 삭감하여 10,000천원으로 하고
- 기관공동운영중(보상금)
 - 주요업무추진비 30,000천원에서 10,000천원을 삭감하여 20,000천원으로 하며
- 재무관리(자산취득비)
 - 노후행정비품 및 집기구입비 5,230천원에서 5,000천원을 증액하여 10,230천원으로 하고
- 하수관리(시설비)
 -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 90,000천원에서 10,000천원을 증액하여 10,000천원으로 하며
- 예비비는 당초 27,677천원에서 5,000천원을 증액하여 32,677천원으로 한다.

4) 수정안(예산과목별현황)

[一般會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결과			비고
코드	목별		추경예산안	조정안	증(△)감	
합계			4,466,261	4,466,261	0	
204	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	140,000	130,000	△ 10,000	
301	보상금	주요업무추진비	1,229,872	1,219,872	△ 10,000	
407	자산취득비	노후행정비품 및 집기구입	5,230	10,230	5,000	
404	시설비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2,100,000	2,110,000	10,000	
801	예비비	예비비	991,159	996,159	5,000	

5) 심사결과 :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가결함.

□ 1996년도 예산안

1) '95. 11. 20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은 '95. 12. 12~12. 19 제38회 정기회 제 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당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와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6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명	'96 예산안 (A)	'95 예 산 액		증 감			
		당초 (B)	최종 (C)	A - B	%	A - C	%
총 계	96,618,009 (채1,500,000)	81,759,896 (채916,000)	85,312,072 (채916,000)	14,858,113 (채584,000)	18.2	11,305,937	13.3
일 반 회 계	89,752,223 (채1,500,000)	74,948,808 (채916,000)	78,168,808 (채916,000)	14,803,415 (채584,000)	19.8	11,583,415	14.8
특 별 회 계	6,865,786	6,811,088	7,143,264	54,698	0.8	△ 77,478	△ 3.9
의료보호기금	894,607	811,746	811,746	82,861	10.2	82,861	10.2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61,150	219,513	219,513	41,637	19.0	41,637	19.0
주 차 장	5,710,029	5,779,829	6,112,005	△ 69,800	△ 1.2	△ 401,976	△ 6.6

2) '96년도 예산안

가) 세입예산

- 총 : 96,618,009천원
- 일반회계 : 89,752,223천원
- 특별회계 : 6,865,786천원

○ 一般會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 분	예산액 (96년도)	전년도예산 (95년도)	증 감		비 고
				금 액	비 율 %	
합	계	89,752,223	78,168,808	11,583,415	14.81	
110	지 방 세	17,774,913	16,730,248	1,044,665	6.24	
21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451,672	9,226,021	225,651	2.24	
22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5,508,723	17,361,591	△ 852,868	△ 4.91	
510	조 정 교 부 금	42,032,000	32,616,000	9,416,000	28.87	
610	국 고 보 조 금	1,330,648	1,205,357	125,291	10.39	
620	시 비 보 조 금	2,654,267	1,029,591	1,624,676	157.79	

○ 特別會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 분	예산액 (96년도)	전년도예산 (95년도)	증 감		비 고
				금 액	비 율 %	
합	계	6,865,786	7,143,264	△ 277,478	△ 3.88	
의 료 보 호 기 금		894,607	811,746	82,861	10.20	
새 마을 소득 지원 금		261,150	219,513	41,637	18.97	
주 차 장		5,710,029	6,112,005	△ 401,976	△ 6.57	

나) 세출예산

- 총 : 96,618,009천원(채1,500,000)
- 일반회계 : 89,752,223천원(채1,500,000)
- 특별회계 : 6,865,786천원

○ 一般會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코드	항 목 별	(96년도)	(95년도)		
합 계		89,752,223 (채1,500,000)	78,168,808 (채916,000)	11,583,415 (채584,000)	
1120	의 회 운 영	2,592,967 (채1,500,000)	1,682,268	910,699 (채1,500,000)	
1110	선 거 관 리	0	982,477	△ 982,477	
1210	기 획 관 리	18,175,086	15,556,397	2,618,689	
1220	공 보 관 리	1,476,891	1,174,397	302,494	
1230	행 정 감 사	97,428	85,133	12,295	
1240	내 무 행 정	22,235,300	21,134,139 (채916,000)	1,101,161 (채△916,000)	
1250	재 무 행 정	1,685,963	1,405,351	280,612	
2210	보 건	2,698,110	2,309,025	389,085	
2220	환 경 관 리	17,489,851	14,242,882	3,246,969	
2230	공 원 · 녹 지 관 리	1,370,330	1,064,165	306,165	
2310	일 반 사 회 복 지	809,364	260,431	548,933	
2320	생 활 보 호	1,211,500	1,237,672	△ 26,172	
2330	가 정 복 지	3,952,309	3,872,528	79,781	
2410	주 택 사 업	455,252	288,106	167,146	
2420	도 시 개 발	291,561	145,035	146,526	
3200	지 역 경 제 개 발	339,640	106,480	233,160	
3220	광 공 업 관 리	266,198	300,720	△ 34,522	
3320	치 수 및 재 해 대 책	226,462	24,328	202,134	
3330	건 설 관 리	12,185,848	10,608,483	1,577,365	
3410	교 통 행 정 관 리	838,385	464,163	374,222	
4110	민 방 위 관 리	208,318	228,469	△ 20,151	
5410	예 비 비	1,145,460	996,159	149,301	

○ 特別會計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과목	구분	예산액 (96년도)	전년도 (95년도)	증 감		비 고	
					금액	비율		
합	계		6,865,786	7,413,264	△ 277,478	△ 3.88%		
의료보호	소	계	894,607	811,746	82,861	10.20		
		1100 관 리 비	8,201	3,840	4,361	114.76		
기 금	1200 사 업 비		886,406	807,906	78,500	9.71		
		소	계	261,150	219,51	41,637	18.97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1100 사업비(웅자)		261,150	219,513	41,637	18.97		
		소	계	5,710,029	6,112,005	△ 401,976	△ 6.57	
주 차 장	3100 관 리 비		1,839,104	1847,338	△ 8,234	0.44		
		3200 사 업 비		3,788,517	4,119,567	△ 331,050	△ 8.03	
			3300 예 비 비	82,408	145,100	△ 62,692	△ 43.20	

3)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보고서 요지

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자 : 이석문 의원)

- 심사일자 : '95년 12월 7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592,967천원(채1,500,000)에 대하여 의회비중 국외여비 72,500천원 및 일반업무추진비중 의회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도록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修正可決하였으며, 복사기 2대, TV 5대, 속기사용 컴퓨터 4대에 대해서는 정수책정 후 추경에 反映하도록 요구하였음.

나) 총무위원회

(보고자 : 이성배 의원)

- 심사일자 : '95년 12월 4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95년 12월 7일 제3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의결
- 심사내용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47,722,556천원, 특별회계 261,150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삭감 7건 1,332,000천원
증액 4건 166,488천원
증감차액 1,165,512천원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로 이송하여 최종 議決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14명 찬성으로 修正可決하였음.

다) 시민건설위원회

(보고자 : 기창표 의원)

- 심사일자 : '95년 12월 4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
'95년 12월 7일 제38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의결
- 심사내용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39,436,700천원, 특별회계 6,604,636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삭감 17건 666,481천원
증액 8건 564,744천원
증감차액 101,737천원에 대하여는 영천시장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비등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修正可決하였음.

4) 수정안

가) 수정이유

-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일부계층이나 소수계층에 불요불급하게 編成된 부문 또는 효과면에서 주민의 편의보다는 소모적 豫算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을 삭감 조정하여 경제개발비중 도로건설분야 등 주민복지 시설에 活用하도록 하였음.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세항	목		'96예산안	조정안	증(△)감	
청소관리	자치단체이전	김포수도권매립지 추가공사조성비부담금	3,260,000	2,260,000	△ 1,000,000	
사회복지	민간이전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천연동 분원)운영비	46,000	36,000	△ 10,000	
가정복지	민간이전	결식노인 지원 - 개·보수비	2,000	0	△ 2,000	
유아복지	시설비 등	북가좌1동 어린이집 실시설계비	3,500	0	△ 3,500	
	"	북가좌1동 어린이집 감리비	1,556	0	△ 1,556	
	"	북가좌1동 어린이집 감리비	4,925	0	△ 4,925	
도시정비	시설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	20,000	10,000	△ 10,000	
지역경제 관리	일반업무추진비	지역내 특화거리조성	6,000	0	△ 6,000	
	"	주말농장단지운영	820	0	△ 820	
	"	주말농장 임차료	3,500	0	△ 3,500	
	"	농장 지주목 및 세대별 표지판설치비	480	0	△ 480	
중소기업 진흥	"	시설부대비	1,440	0	△ 1,440	
건설행정	"	미불보상금	220,000	200,000	△ 20,000	
교통기획 행정	"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175,000	100,000	△ 75,000	
	"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부대비	1,260	0	△ 1,260	
합계		26개 항목	5,296,317	3,518,796	△ 1,777,521	

○ 增 額 (一般會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황	목		'96예산안	조정안	증(△)감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비	17,000	20,000	3,000	
"	"	의원체육대회	0	10,000	10,000	
"	일반운영비	의원의정활동비디오제작비	0	5,000	5,000	
"	"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2,000	12,000	10,000	
"	"	자동차세(업무용)	239	679	440	
"	"	자동차 보험료	269	538	269	
"	"	차량경비	3,028	6,056	3,028	
"	시설비 등	의원휴게실 증축 및 소회의실 개수공사	0	100,000	100,000	
서무관리	의회비	국외여비	29,000	98,600	69,600	
		의장단 활동비	0	18,000	18,000	
	"	- 의장	0	10,800	10,800	
		- 부의장	0	21,600	21,600	
		- 상임위원장	20,000	40,000	20,000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0	20,000	60,000	
"	특수활동비	의회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0	60,000	3,000	
"	보상금	구의회 의정보고회	7,200	10,200	20,000	
보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지원	80,000	100,000	1,300	
녹지관리	시설비 등	산책로 계간 수로정비	0	1,300	6,000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		'96예산안	조정안	증(△)감	
가정복지	보상금	숨씨할머니	0	1,300	1,300	
"	"	모범 노인교실	1,200	7,200	6,000	
"	일반운영비	케이블 TV 신청	4,218	6,216	1,998	
주택개량	"	케이블 TV 시청료	0	7,208	7,208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공부정리 일용인부임	0	6,804	6,804	
하천관리	일반업무추진비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3,600	4,800	1,200	
도로건설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	0	1,440	1,440	
"	시설비 등	남가좌동 105-1호 도로개설(보상비)	250,000	500,000	250,000	
"	"	홍제1교량 설치	0	500,000	500,000	
"	"	옥천동 69-45번지간 도로개설(보상비)	0	200,000	200,000	
"	"	관내도로 소파보수	300,000	700,000	400,000	
"	"	일광점멸기 개량공사	40,000	60,000	20,000	
합 계		27개 항목	757,754	2,528,441	1,770,687	
예	비	비	1,145,460	6,834	1,152,294	

5) 예산안 총칙 : 원안과 같음

6)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豫算案에 대하여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5. 12. 12~12. 19)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修正可決하였음.

□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95. 9. 28 서대문구청장이 提出한 이 결산승인안은 '95. 12. 12 제3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구 분		회계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세 입	예 산 액		747억6,500만원	698억7,300만원	48억9,200만원
	수 납 액		816억7,000만원	759억2,700만원	57억4,300만원
세 출	예 산 액		747억6,500만원	698억7,300만원	48억9,200만원
	예 산 현 액		788억4,300만원 (이월금:40억7,800만원)	739억2,100만원 (이월금:40억4,800만원)	49억2,200만원 (이월금:49억3,000만원)
	지 출 액		641억5,900만원	624억7,800만원	16억8,100만원
'95 이 월 액	사 고 이 월 비		29억4,600만원	29억100만원	4,500백만원
	반 환 금		8,800만원	8,800만원	
	세 계 잉 여 금		144억7,700만원	104억6,000만원	40억1,700만원

2)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

○ 總 計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95 이 월 금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사고이월	반환금	세계잉여금
74,765	81,670	74,765	78,846	64,159	17,511	2,946	88	14,477

○ 一般會計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95 이 월 금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사고이월	반환금	세계잉여금
69,873	75,927	69,873	73,921	62,478	13,449	2,901	88	10,460

○ 特別會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95 이 월 금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사고이월	반환금	세계잉여금
합 계	4,892	5,743	4,891	4,922	1,681	4,062	45		4,017
의료보호기금	1,069	907	1,069	1,069	903	4			4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156	318	156	156	70	248			248
주 차 장	3,667	4,518	3,667	3,697	708	3,810	45		3,765

3) 심사결과 : 재석위원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

□ 19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1) '95. 9. 28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결산안은 '95. 12. 12 제3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액 : 888,485천원
- 지출결정 사업
 -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 구청사 증축공사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 예비비지출 결정액 : 395,000천원
 - 지출액 : 383,000천원
 - 불용액 : 12,000천원

○ 특별회계

- 예비비 예산액 : 265,944천원
- 지출결정 사업 : 노외공영주차장 시설확충
- 예비비지출 결정액 : 138,695천원
 - 지출액 : 35,579천원
 - 불용액 : 103,116천원

2) 심사결과 : 재석위원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

다. 議事堂建立推進委員會

1) 제안 및 상정

'95. 8. 2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기능에 적합한 의회독립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결의안이 提案되었으며 '95. 9. 1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었다.

2) 활동내용

가) 의사당 건립 추진 설명회

- (1) 설명일자 : '95. 10. 26 제3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 (2) 提案 및 說明者 :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 (3) 의사당 건립추진 경과사항 요약
 - '93. 5. 17 : 추진위원회 구성결의
 - '93. 6. 10 :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
 - '93. 7. 30 : 추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

위원장 : 송영우 위원
간 사 : 김영일 위원
 - '93. 11. 11 : 추진경위 및 건의안 설명
 - 건의안 : 현청사를 의회독립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이전건의문 채택.
 - '93. 12. 29 : 서대문구 정책조정위원회
 - 보건소 이전의결 :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하고 보건소는 의회독립청사로 개·보수 사용하도록 의결.
 - '94. 2. 22 : 총무과장 보건소 이전계획 보고회 청취
 - '94. 11. : 의사당 독립청사 개·보수 기본설계 용역실시
 - '94. 12. 28 : 의사당 독립청사 개·보수 기본설계 용역준공
 - '94. 10. 19 : 제2차 의사당추진위원회 구성

나) 의사당 부지매입 예산반영

- '96예산반영 : 부지매입예산중 15억원을 '96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음.

□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건립 추진 위원회 운영 계획

1) 목 적

방청시설, 상임위원회 회의장, 대회의실 운영, 본회의장(계단식), 각 의원연구실, 집행부와 연계 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품위와 본격적인 주민자치 및 의회기능에 적합한 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함.

2) 위원회 구성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 위원장 : 강 석 준
- 간 사 : 김 종 섭
- 위 원 : 김동덕, 정혜연, 이석문, 이성배, 최광진, 홍성덕, 오환인

3)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의사당 건립 완성시까지.

* 제1대에 운영된 의회청사특위는 '95. 6. 30. 기준 자동폐지됨.

4) 추진방향

- 의사당 건립위치 결정
- 의사당 부지 선정방법 및 규모
- 예산확보방안 및 매입가능한 부지 선정의 취득
 - '95년도의 예산운영 검토
 - 취득대상 부지 선정
 - 연차별 예산 확보계획 수립
- 의회기능 확보를 위한 의사당 신축 추진
 - 계단식 본회의장, 방청시설
 - 상임위원회 회의장
 - 대회의장

5) 소요예산

- 위원회 구성후 별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소요예산 파악

〈현 구의회 의사당 현황〉

구 분	면 적	실 배 치 현 황
4층	1433평	본회의장, 방청실, 상임위원장실
3층	2013평	의장실, 부의장실, 소회의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2층	2172평	의약과 외 8개 사무실
1층	2155평	보건행정과 외 6개 사무실
지하	1769평	기관실, 식당, 창고, 서고

라. 財産管理에 대한 行政事務調査委員會

1) 제안 및 상정

'95. 10. 10 박덕균의원의 14인으로부터 국·공유점유에 따른 민원해결과 자치구재산을 철저히 管理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確立하기 위하여 결의안으로 發議되었으며 '95. 10. 19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처리하였다.

2) 활동내용

가) 활동기간 : '95. 11. 13 ~ 11. 16 (4일간)

나) 조사범위 : 국·공유재산중 착오면적(통계), 재산취득 및 매각현황, 동별실태조사결과

다) 조사기관 : 서대문구 재무과

라) 조사결과 (처리의견)

■ 시장요구사항

- 권리보전 검토 면적(총정로동 소재) 중 실제면적 24,074㎡와 착오 기재된 2,398,904㎡에 대한 증가면적 2,374,830㎡는 무려 100배나 되는데도 이를 確認하지 못하고 결재하고 있는 관리직은 상관으로서 責任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시간과 인력 및 豫算등을 낭비하는 공무원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강구 할 것.
- 권리보전재산 및 국유잡종재산의 통계수치 착오부분에 대하여는 대장 등을 수정 정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및 분야별 재산관리에 徹底를 기해야 할 것임.
- 권리보전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국유지의 면적을 파악 管理토록 할 것.
- 권리보전 대장의 수치가 문제시 되는 바, 필지별 등기이전사항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通報되는 즉시 등기부등본 및 토지관리대장과 현지 확인 조사 후 권리보전 대장을 착오없이 整理토록 할 것.
- 재산관리 대장을 깨끗이 보존하고 계수표시는 누구나 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명확하게 기록관리 할 것.

- 재무과에 비치된 관리대장과 서류로는 종합적인 檢討가 어려우므로 유관부서(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서 處理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총괄 현황을 비치하여 언제나 국·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경우 점유지에 대하여는 5년 분할 償還하고 있으나 서민의 재정능력 등을 勘案하여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
- 재산관리에 관련된 모든 대장 및 서류를 일체히 재점검, 모든 통계수치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整理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效率的으로 管理토록 하기 바람.
- 통계현황 계수를 담당한 공무원은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체계적인 財產管理를 위한 권리보전의 지속적 推進과 관련업무의 전산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 요구됨.

■ 건의사항

우리구의 재산관리분야는 대상면적이 방대하고 업무의 복잡성과 과다함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원과 관리체계로는 효율적인 管理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建議함.

- 현재 각 부에서 분야별로 管理하고 있는 재산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 재산관리계를 개편하여 「재산관리과」로 설치하는 方案을 적극 검토 건의.
-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계속성과 특수성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내 제한토록 요망.
- 현재의 인원을 증원하여 체계적인 事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제수당 신설 및 승진우대제도를 적극 檢討하여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엘리트화 해야 할 것임.
- 전문교수를 초빙 특수교육 등 수시 실시하여 전문공무원 양성이 요구됨.
-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상위부서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정부(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이 요구됨.
- 국·공유지 무단점유시 변상금을 5년간 소급, 부과·징수함으로써 고지대 등에 거주하는 영세 서민의 고통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변상금을 1년분만 부과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영세서민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의한 주민복리증진이 요구됨.

3)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 1995. 11. 30 재무국장 지시
 - 관리자는 결재시 내용을 확실히 검토하고 결재토록 지시
- 1995. 11. 30 직원 특별정신교육 실시
 - 업무에 충실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시
- 권리보전재산 및 국유잡종재산 대장은 정리되어 있으나 의회자료 보고서 잘못 된 것임.
- 1995. 11. 30 직원특별정신교육 실시
- 권리보전 담당 교육실시로 권리보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95. 11. 30)
- 각종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95. 11. 30)
- 국유재산에 대한 전산화 추진중에 있음(96. 2월 완료 예정)
- 재위임된 부서별로 재산대장을 관리·기록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총괄현황 비치는 어려운 실정임.
- 부서별로 자료요청이 요구됨.

■ 처리요구사항

- 國有財産法 제40조에 의거
 -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일시불이 원칙이며
 - 1981. 4. 30 이전 점유사용되고 있는 土地의 매각은 5년 분할로 매각
 -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시 10년 분할 매각할 수 있으나
 - 이는 國有財産法의 改正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로는 불가함.
- 각종 대장관리 철저히 하도록 교육(95. 11. 30)
- 국유재산에 대한 전산화 推進중에 있음(96. 2월 완료예정임)

■ 건의사항

- 豫算會計法 제96조 제1항의 規定에 의거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法規의 規定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로는 불가함.
- 주관부서인 總務課로 移牒하였음.

마. 住民用 新聞購讀에 대한 行政事務調查委員會

1) 제안 및 상정

'95. 12. 8 이석문의원의 14인으로부터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한 배부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95. 12. 9 제3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되었다.

2) 활동내용

가) 활동기간 : '95. 12. 12 ~ 12. 18 (7일간)

나) 조사범위 : '95. 1. 1 ~ 11. 30까지 배부된 주민용신문 (서울·지역신문)

다) 조사기관 : 22개동

라) 조사결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 사 동		조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각 공 사	동 통 항	○ 신문구독 상태 - 신문구독 현황 - 신문배달 현황 - 신문구독 확인관 관리와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구독 확인권에 연도별, 월별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당해, 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음. □ 신문 구독자를 각 동별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모동의 경우, 한집에 남편따로 부인따로 2부씩 배달되는 경우) □ 신문구독자 확인을 구독자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경우가 많음. (특히 통장이 일괄 확인한 경우) □ 신문구독자 주소가 대부분 정확하지 않음. □ 조간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되는 시간이 오전 8시 이후인 경우가 많음. □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신문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보급되고 있는 지역신문 관리조차 각동 공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정확한 배달 확인권 없이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조사동	조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조사1반 (충정로, 천연동, 북아현 1, 2, 3동)</p>	<p>○ 신문구독 상태 - 신문구독 현황 - 신문배달 현황 -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와 기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구독 확인권에 구독자 성명이 미기재되었음. □ 영수증 글씨가 한 사람이 작성하여 통장 도장으로 일괄 찍은 경우가 있음. □ 통장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신문구독자를 선정하고 있음. (배부 대상자의 재선정이 요구됨) □ 신문구독자 주소들이 대부분 부정확함. (구독자 명단과 실제 반장 명단과는 상이하며, 도장도 다름) □ 배달시간이 너무 늦다. (타 신문은 5시인데 서울신문은 8시이 후 배달되는 곳이 있음)
<p>조사2반 (대신동, 창천동, 연희 1, 2, 3동, 홍제1동)</p>	<p>○ 신문구독 상태 - 신문구독 현황 - 신문배달 현황 -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와 기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구독확인권의 약 40%가 대리 확인되고 있음. □ 배달현황을 조사한 바, 약 20%는 제대로 배달이 안되고 있음. □ 일부 동의 경우 배달 확인권이 없는데도 구독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음. □ 구독 확인권의 관리 상태가 아주 미흡함. □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신문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보급되고 있는 지역신문 관리조차 각동 공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p>조사3반 (현저동, 홍제 2, 3, 4동, 홍은 1, 2동)</p>	<p>○ 신문구독 상태 - 신문구독 현황 - 신문배달 현황 -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와 기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구독료 배달확인권에 연도별, 월별 확인자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일부 동의 경우, 배달 확인권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구독료는 매달 지불되고 있음. 해당 실장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정확한 배달 확인권 없이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신문구독자의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96년도 예산은 '95년도에 비해 1억여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지역신문을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배부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문대금을 4 - 5천원으로 책정하여, 관내 모든 반장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
<p>조사4반 (홍은 3동, 남가좌 1, 2동, 북가좌 1, 2동)</p>	<p>○ 신문구독 상태 - 신문구독 현황 - 신문배달 현황 -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와 기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구독 확인권을 구독자인 반장이 하지 않고 통장이 하였으며, □ 구독자의 구독 확인권이 없는 경우도 있음. □ 구독 확인권 난에 구독자 성명, 당해 월 표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 신문구독 확인권에 배달 미 횡수도 기재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우수 및 장려사항

부서명	우수 및 장려사항	비고
부가좌 1동	○ 부가좌1동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상태 확인결과 - 신문구독 현황 - 신문배달 현황 -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와 기재사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배달이 빠진 날 수 조차도 꼼꼼이 기록하고 있어 타동에 모범이 되므로 시범동으로 추천하고자 함.	

3)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 회신

【각동 공통사항】

- 신문구독자 確認을 구독자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경우가 많다는 事項에 대하여
 - 담당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일부 동사무소에서 확인업무를 徹底하게 하지 않은 사례가 인정되어, '96. 2. 22 각동 시민생활계장 會議을 소집하여 교육 후 해당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 이같은 사례가 再發되지 않도록 하였음.
- 신문구독자 주소가 대부분 正確하지 않다는 事例에 대하여
 - 일부 동사무소에서 구독과 선정 및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確認되어 '96년 부터는 선정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대상자를 정하도록 관리를 強化하도록 하였음.
- 조간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되는 시간이 오전 8시 이후인 경우가 많다는 知的 사항.
 - 배달시간의 지체로 독자에게 不便을 주고 있어 각동을 통해 신문사지국에 보다 빠르게 배달해 줄 것을 독촉하도록 要求하였음.
-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역신문을 좀더 活性化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普及되는 지역신문 관리조차 각동 공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事項.
 - 구에서는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이 健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물론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 努力하고 있음.

우선, 豫算支援額을 '95년 5,000만원에서 '96년 7,000만원으로 예산 40%를 증액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독부수도 '95년 1,490부에서 '96년에는 2,153부로 663부가 증가하였음. 현재 구독배부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배부선 및 구독자를 엄정히 選定하여 구정홍보가 원활히 遂行되도록 하여 구독배부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겠음. 또한 각 동사무소에는 일정량의 지역신문을 비치하여 住民들이 언제든지 구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정확한 배달확인권 없이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事例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동 담당의 업무미숙으로 구독권의 정확한 확인이 없이 구독료가 支給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 하나 구독권을 확인하여 하자가 있는 구독권에 대하여는 재확인후 原因이 규명될 때에만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이미 지시공문과 '96. 2. 22 시민생활계장회의를 소집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음.

-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의견
 - 추후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對策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신문구독 및 배부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통하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업무에 조속히 反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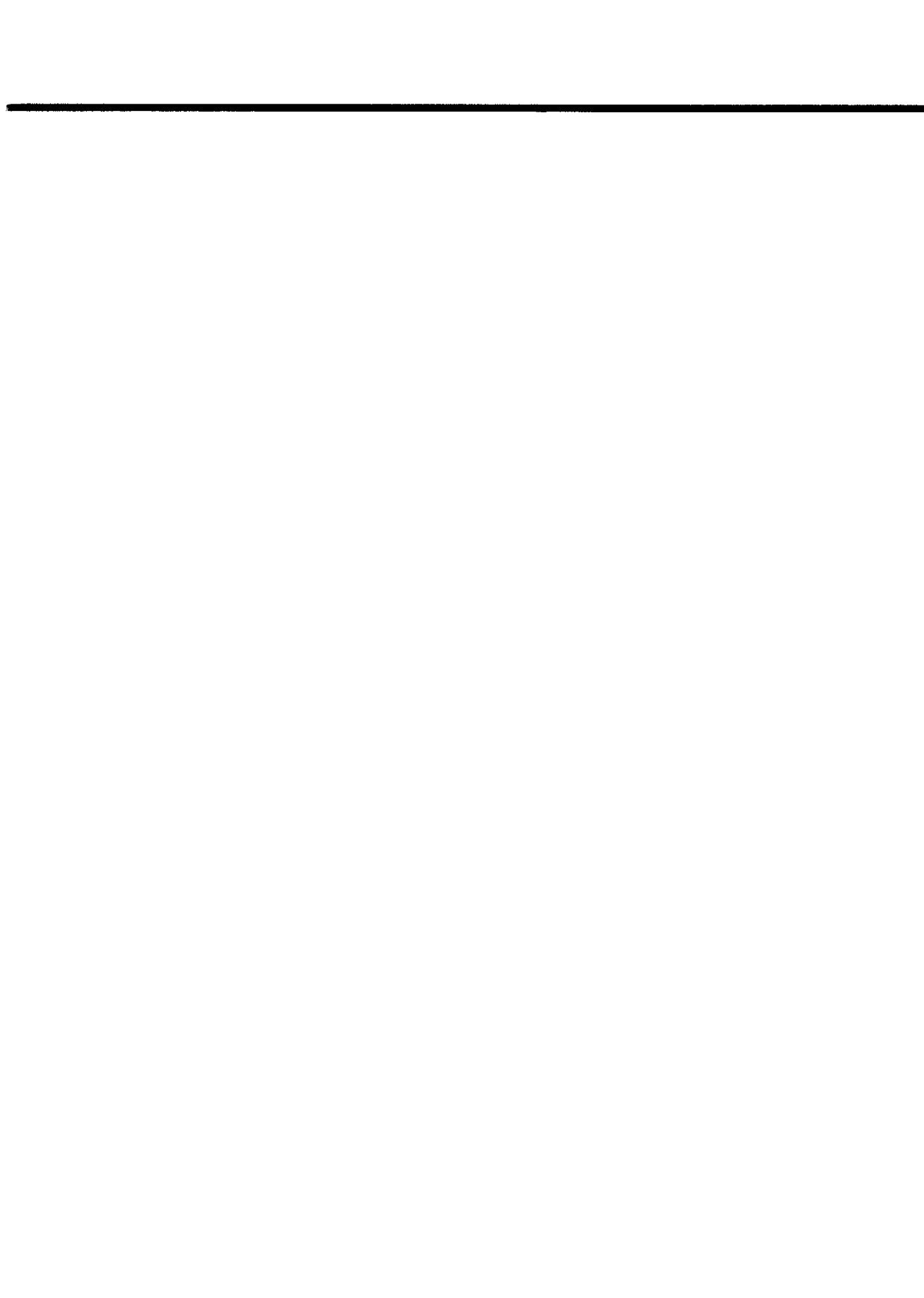
⋮

分野別 活動

⋮

I. 區政質問 / 155

II. 行政事務監査 / 155



第3章 分野別 活動

I. 區政質問

1. 現 況

區政質問이란 地方議會가 地方自治團體의 行政 및 財政全般에 관한 處理狀況과 장래계획에 대하여 묻고 答辯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議員의 質問權은 당해 自治團體의 중요한 意思를 결정하고 住民을 대표하는 機關인 의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권한이라 하겠다.

區分 會 期	質 問 議員數	質 問 件 數	質 問 內 容 別						
			3 室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都市整備局	建設局	保健所
계	26	181	15	42	10	39	43	25	7
제37회임시회 (95.10.20~ 10.23)	13	103	4	12	8	27	26	21	5
제38회정기회 (95.12.8~ 12.11)	13	78	11	30	2	12	17	4	2

1. 質問 및 答辯

제37회 臨時會 ('95. 10. 20 ~ 10. 23)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辯內容
전성장의원	마을버스 限定免許 料金修理業務上의 問題點 및 환전기를 설치하지 않아 생기는 50원씩의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	마을버스의 料金は '93년 6월 13일 이후 동결해 있다가 금년 9월 12일에 서울시가 一括 引上한 바 있으나, 향후에는 地域別 路線別 形態등을 면밀히 검토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작하여 상식에 맞는 요금이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서비스행정, 열린행정, 地方自治時代 長期 計劃에 대하여? (변화가 요구되는 대민업무자세)	임명직 구청장일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변화를 추구하는 새시대의 명령에 따라 區廳長以下 全職員들이 區民의 便에서 구민의 머슴으로 일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區財政自立度 確立을 위해서도 우리區를 活性化해서 산업내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활성화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을 수행함에도 여도야도 어느 정당도 없이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구민의 품에서 구민의 뜻에 맞는 구정을 펴나갈 것을 밝혀드립니다.
조재구의원	舊時代의인 班常會報는 廢止하고 區政新聞을 發刊할 방안은 없는지?	班常會報가 정부 시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매체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93년 12월부터 消息紙의 自律編輯權이 우리구에 주어지면서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방향도 국정과 시정보다는 구정소식란을 大幅 擴大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 자치뉴스를 발행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의원	組織改編을 통해 보다 效率的으로 區政을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都市計劃 推進 狀態에 대한 현황은?	公務員管理에 企業經營方式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며,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보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나 여러 문제점이 있어 5個年 計劃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225건의 각종 사업이 선정되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종섭의원	신촌 기차역 주변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共營駐車場의 運營은?	新村 汽車驛 부근 대현동 121번지 일대는 鐵道敷地로써 施設綠地地域입니다. 이지역 개발에 대해 철도청에서 정부의 고속전철등 여러가지 시행계획과 연결이 돼서 현재로써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의원	각동사무소에 배치된 運轉要員을 없애고 전직원이 共用으로 運營케 할 용의는 없는가?	현 각동의 행정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재활용 쓰레기 문제, 관내순찰, 각종 행사 지원업무등에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운전직 기능공무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의원	쓰레기 燒却場 建設에 대하여?	쓰레기 처리방식은 이제 우리구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우리구에서 일단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대신 현재 가장 훌륭한 최고의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덕균의원	도시가스 事業法 施行規則 移行與否 및 홍은동 道路開設 工事に 대하여? (홍은동 48-64, 9-673)	도시가스공사는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심도가 묻히고, 제대로 모래도 넣고, 부심도 하고 해서 徹底한 工事が 되도록 할 것이며, 홍은동 48-64호 道路工事的 建物 補償에 대해서는 補償部署에 대해 심도있게 再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延禧洞 산 2-5번지의 12필지의 組合아파트 新築敷地 事業承認의 건에 대하여?	이 지역은 3만 9,906㎡로써 주식회사 한양에서 職場組合 5개, 組合員 256명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91년 9월 부터 사업신청을 해 왔으나 서대문구의 상징인 미려한 안산공원의 보존을 위해 7회에 걸쳐 반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일출의원	모래내천변 綜合開發計劃에 대하여? - 시민공원, 꽃단지, 물막이담과 하천관리, 주차장 시설등	모래내천변, 홍제천변의 보전과 一部開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다각도로 여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일출의원	통일을 대비하고 일산, 원당, 수색인근 유입 인구 해결을 위해 가좌역에서 시장입구까지 地下道路를 開設할 용의는?	이 일대의 물동량이 모래내 시장 주변에서 걸려야 하기 때문에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다만, 地下道建設에 있어 자금문제와 기술적인 위치선 정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차근차근 檢討해 나가겠습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전성장의원	新村文化祝祭는 연중행사로 繼續할 것인가?	서대문구내에는 특히 신촌로타리 주변에 5개 대학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學生들과 住民, 商人들의 和合의 次元에서 新村文化祝祭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여 주는것 때문에 구청축제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듯한데 民間團體의 축제임이 분명하며, 앞으로 주민과 학생들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매월 25일 열리는 班常會를 廢紙할 용의는 없는지?	76년 5월 1일부터 시행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의 문제 점이 요즘 강조되고 있으나, 이의 전면 폐지보다는 반상회보를 住民生活와 밀접한 내용으로 게재, 班常會 開催日時 自律化등 운영방법을 깊이 있게 개선토록 노력하여 점차로 이웃간의 정이 메달라가는 현대사회의 이기주의 등을 극복,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로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서대문구 地域醫療保險組合員 사망시 장제비 지급 여부?	장제비 지급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년도별</th> <th rowspan="2">사 망 신고자</th> <th colspan="2">장제비지급</th> <th colspan="2">장제비미지급</th> <th rowspan="2">지급율</th> </tr> <tr> <th>건수</th> <th>금 액</th> <th>건수</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94년</td> <td>756</td> <td>593</td> <td>29,650</td> <td>163</td> <td>8,150</td> <td>78%</td> </tr> <tr> <td>95년</td> <td>329</td> <td>293</td> <td>47,050</td> <td>18</td> <td>3,600</td> <td>94%</td> </tr> </tbody> </table>	년도별	사 망 신고자	장제비지급		장제비미지급		지급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94년	756	593	29,650	163	8,150	78%	95년	329	293	47,050	18	3,600	94%
년도별	사 망 신고자	장제비지급			장제비미지급		지급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94년	756	593	29,650	163	8,150	78%																					
95년	329	293	47,050	18	3,600	94%																					
		- 미지급 사유는 · 장제비 支給 申請 忌避 · 94년 장제비 금액과소(50,000원), 구비서류(사망진단서) 준비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 單獨 世帶主 死亡																									
전성장의원	幼兒院 및 兒童福祉施設擴充計劃은?	우리구 보육시설 현황은 '95년 9월 30일 현재 총 69개로써 구립 15개소, 민간 19개소, 놀이방 35개소이고 보육인원은 2,269명입니다. '96년도에는 정원 162명의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新設할 예정이며, 民間保育施設도 26개소를 擴充할 계획입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전성장의원	관내 구두수선 박스의 관리운영 실태(전매 및 소유권 이전)	구두땀이 박스의 명의이전 - 불가 : 불법 전매행위 인정치 않음 - 대리영업은 동거가족 3인 이내에서 제한(불법전매 또는 대리영업 위반시는 도로점용 허가 취소)
전성장의원	기존 無許可 建物 개·보수에 대한 節次 및 面積 緩和 요구?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개·보수 범위는 무신고 수리(온돌수리, 창문틀교체 등 경미한 사항)와 신고대상으로 분류 - 申告對象의 주요내용 · 벽돌조 외벽 30㎡미만의 해체 보수 · 바닥면적 30㎡미만의 수리 - 申告節次 신고서접수→대조확인→신고필증교부→준공신고→통담당 직원현지출장 신고내용 상이여부 확인복명으로 처리됨.
전성장의원	마을버스 運營 現況에 대하여?	우리구 마을버스 운영현황은 총 11개업체 14개노선 73대가 평균 9분間隔으로 運行되고 있으며 - 면허기준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高地帶, 아파트단지, 工業團地, 學校, 宗教團體의 所在地에서 그 연계 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운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기준은 3년으로 기한만료 30일 전에 更新免許申請을 하게 되며, 제반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재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에 대한 양도, 양수는 2년이내에 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의원	防疫消毒에 대한 '95년도의 실적?(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새마을지회, 22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96년도 부터는 一貫性있게 한곳에서 實施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防疫豫算이 새마을지회와 각동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관할부서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보건소에서는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약품과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회와 각동에 편성된 방역예산이 防疫藥品購入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방역소독은 한곳에서 실시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전성장의원	<p>街路邊에 無秩序하게 설치된 生活情報紙를 비치대를 제작 비치토록한 후 道路占用了을 징수하면 미관상 뿐만아니라 구재정에도 도움에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p>	<p>생활정보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업소수 : 10개소 - 발행주기 : 주 2~3회 - 발행매수 : 2만~30만부 - 관리비치대수 : 약 300개 <p>문제점</p> <p>다중이 이용하는 幹線道路邊에 生活情報紙 비치대를 설치토록 도로점용 허가할 경우 점용료 수입은 증대되나 시민통행과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등 도로기능의 저하가 예상됨.</p> <p>도로점용허가는 현재 行政刷新 課題로 審議檢討하고 있는 관계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반 문제점을 검토 추진해 나갈것임.</p>
조재구의원	<p>統·班長 制度의 운영상 문제점?</p>	<p>통장들은 행정관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 단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보조자에 불과합니다.</p> <p>현재 연령이 초과된 통장이 약 11%정도이나 새로이 위촉할 분을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한번더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조재구의원	<p>行政情報 公開制度의 운영상 문제점?</p>	<p>행정정보 공개 제도는 國務總理 訓令에 의하여 '94년부터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부, 도면, 관리하고 있는 필름등을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p> <p>다만 法令에 의해 祕密로 지정된 사항, 非公開하기로 규정된 사항,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p>
조재구의원	<p>서대문구 個人택시 차고지 신고에 대한 問題点 및 改善策에 대하여?</p>	<p>개인택시 車庫地 證明制度는 자기 차고지가 없는 경우 주택가 뒷골목이라든가 공도상에 주차를 하게 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여진 제도입니다.</p> <p>우리구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조합자는 1,913명인데 86%인 1,686명이 현재 확보되고 132%인 257명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홍성덕의원		개인 차고지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共營駐車場을 車庫地로 確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의원	<p>淨化槽 清掃는 신성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고 있으며 여과 장치의 교체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p> <p>합동단속, 비밀단속을 하는데도 퇴폐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p>	<p>汚水, 糞尿 및 蓄産廢水管理法 제19조에 의해 신성정화조와 '94년 5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신성정화조에서 공문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여과장치 교체문제는 주민의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므로 연구검토하여 보겠습니다.</p> <p>금년 9월 30일까지 團束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원 : 3,153명 - 점검업소 : 1,098개소 - 적발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외영업 : 107개소 · 무허가 : 71개소 · 퇴폐업소 : 175개소 - 위반시설 : 697개소 - 고질적인 퇴폐업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 33개소 · 일반음식점 : 22개소 · 단란주점 : 8개소 · 유흥주점 : 1개소 · 숙박업소 : 2개소 <p>지금까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관내에는 퇴폐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p>
홍성덕의원	<p>관내 각종 공사시 工事監督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의 對策은 무엇인가?</p> <p>(예를 들어 성산회관앞 지하도 공사는 당초 현장사무실이 48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4평도 되지 않고 있음)</p>	<p>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徹底한 工事監督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자 고유민원 업무처리등으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데 공사감독일지 작성, 안전요원 배치문제, 현장사무실 설치등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p> <p>또한 각종 감독 현황과 공사대금 지출 현황은 재무과 하고 정밀 대사하여 차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홍성덕의원	不實工事 防止를 위해 建物 安全診斷을 위한 각종 裝備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위한 장비구입 계획은?	건물 안전진단을 위한 장비구입은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裝備의 購入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를 운영하는 인원도 현실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救助安全協會 또는 安全診斷 建築士들에게 委託 活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진단 장비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홍성덕의원	논골의 下水道工事 進行에 대해 보다 소신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논골지역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 부근입니다. 기존 하수도는 40~50년전에 설치된 것으로 주민들 주택 마당에 묻혀 있습니다. 물론 河川敷地임에도 맞습니다. 때문에 주택지역을 피해 도로에 하수막스를 묻는데 이지역이 花崗岩地帶라 難工事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광진의원	地域 醫療保險組合의 管理監督을 서대문구청에서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관내공용건물의 관리 상태에 대해 말씀하여 주세요.	의료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94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에게는 지도감독권의 권한위임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청사는 '97년도의 대지 1,500평 건평 2,000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써 업무량에 비해 상당히 비좁은 상태이며, 구의회와 보건소 건물지는 보건소이전 계획과 맞물려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의회 사무국 건물을 철저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는 건축한 지 5년미만의 동은 불과 2개동에 불과하고 10년미만의 동은 7개동, 그리고 15년미만의 동은 8개동, 심지어 20년 넘는 동이 2개나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문제도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補修管理등에 신경을 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아주 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진의원	國公有地 賣却時 分割償還年度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가?	國有財産法의 財政으로 매각대금을 일시불로만 납부토록되어 있던 것을 分割償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매각대금 상환 기간도 개인에게는 5년, 조합원에게는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최광진의원		10년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도 10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재경원에 건의하겠습니다.
최광진의원	長期 未竣工 建物에 대한 대책 및 해결책?	'83~'91까지 장기 미준공건물은 41건으로 고발및 과태료 부과를 완료했으며 감리로 지정된 건축사(22건)에 대해서는 營業停止 등 行政措置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違法建築物 發生豫防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광진의원	庶民들의 어려운 住宅解決 차원에서 옥탑을 불법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양성화대책과 옥탑에 무작위로 설치한 알미늄 設置物의 崩壞 危險에 대한 안전대책은?	建築物의 옥탑은 물탱크 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거부분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규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옥탑에 무단으로 설치한 알루미늄 설치물은 區民의 安全을 위해, 무허가 단속규정에 의거 엄정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의원	區劃整理事業이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지에 주차하면서도 건축시 주차장 확보를 하여야 하는 경우 過怠料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도시계획구역안의 附設駐車場은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그 대지 여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 그 자체는 그런 목적으로 면제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土地利用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에 별도로 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계일의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직영 청소 면적 2,200ha가 대행업체로 이관되었는데 豫算은 얼마나 절약되었나? 또한 일부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清掃美化員이 405명에서 약 30명 정도 줄어들 예정이며, 청소차량 등 13대를 賣却措置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량이 줄었다고하여 청소원을 감원할 수 없기에 업무량이 줄은 만큼 再活用 쓰레기 分離業務에 인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大量廢棄物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규격봉투에다 일일이 넣을 수 없기에 대행 업체하고 직접계약을 맺고 처리합니다. 대량폐기물업체가 우리관내에는 40개소가 있습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권재일의원	<p>공공용지 占用使用件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p> <p>우리구 무단점용자 현황과 도로 계속점용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시점용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징수방법의 대안으로써 과거 5년전의 것은 영세성을 감안하여 면제를 해주고 향후 新規發生分에 대해서 分期別로 賦課하는 것이 어떤가?</p>	<p>공공용지 무단점용현황은 금액으로 약 25억원 정도입니다. 계속 점용의 경우 도로법 82조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 점용의 경우 도로법 86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p> <p>징수방법의 개선은 地方稅法이나 關係法の 改正問題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 <th>도로 점용</th> <th>구거 부지</th> <th>하 천</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2,711</td> <td>1,897</td> <td>517</td> <td>297</td> <td></td> </tr> </tbody> </table>			계	도로 점용	구거 부지	하 천	비 고	2,711	1,897	517	297	
계	도로 점용	구거 부지	하 천	비 고								
2,711	1,897	517	297									
김종섭의원	<p>우리구 財政自立度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p>	<p>'96년도 예산 기준으로 우리구의 자립도는 57%로 서울시 25개 구청의 평균 64.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의 자주 재원 확충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p> <p>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5개 역세권 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세원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수입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또한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使用料, 負擔金, 過怠料 등 각종 稅外收入도 增大해 나가겠습니다.</p>										
오환인의원	<p>① 우리구 老人福祉 政策기조는 무엇인가? ② 老人亭 運營 實態와 턱없이 모자라는 노인정의 확충계획에 대해? ③ 효과적인 老人福祉 政策實施를 위한 구의 구체적인 계획은?</p>	<p>우리구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약 1만 9,300여명으로 서대문구 전체인구의 약 488%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기조는</p> <p>① 所得保障·노령자를 위한 就業斡旋, 老齡手當支給 ② 醫療保障, 老人健康診斷과 보건소진료, 중풍 치매노인들을 위한 專門治療施設 등 ③ 社會的 서비스의 확충·敬老乘車券 支給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노인의 자조자활능력을 계발하고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노인복지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p> <p>노인여가 시설의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總 52個 老人亭이 있으며, 收用人員은 3216名입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오관인의원		<p>豫算支援은 규모에 따라 4만원부터 9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96년도부터는 10만원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p> <p>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노인복지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社會福祉課로 이관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관내 대학교수님들에게 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의결을 수렴하고 있으며, 西大門區 政策諮問教授協議會로부터도 많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p>
이진수의원	<p>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長期放置 問題 및 쓰레기 收去後 잔여쓰레기를 清掃할 容의는 없는가? 또한 쓰레기봉투의 材質을 向上시킬 계획은 없는가?</p>	<p>규격봉투 미사용쓰레기는 저희 구청에서도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도 참여의식을 갖고 감시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p> <p>잔여쓰레기 문제도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이 수거운반만 계약하였기에 잔여쓰레기 清掃問題도 내집앞은 내가 쓸수 있다는 주민 참여가 요구됩니다.</p> <p>쓰레기봉투 재질향상 문제는 재질이 너무 두꺼우면 埋立地에서 터지질않아 썩는 속도가 느립니다.</p> <p>때문에 너무 두껍게 할 수도 없어 工業進興廳 規格에 맞춘 것입니다.</p>
이진수의원	<p>무분별하게 책정한 施設綠地의 解除 容의는? (홍제 3·4구역)</p>	<p>'95년 5월 9일 최종 사업 변경 결정시 홍제 3·4구역을 합산하여 765㎡를 施設綠地로 지정하면서 일부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녹지 해제 여부를 서울시에 확인하였는 바 해제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p> <p>그러나 우리 區民의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施設綠地 일부라도 解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p>
이진수의원	<p>도로굴착 복구의 성실한 시공 및 감독상의 問題點과 이에 대한 對策?</p>	<p>'95년 9월말 현재 굴착 현황은 총 3,900여건입니다.</p> <p>앞으로 도로굴착 복구감독은 굴착기관별로 復舊現場에 監督을 配置하며, 구청에서 굴착감리원이 수시 순찰하도록 하여 굴착시 기타 작업선행, 매설깊이, 다짐, 포장면 처리등 공사를 철저히 監督하여 不實工事를 防止토록 하겠습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기창표의원	안산테니스장 및 體育施設이 사유화란 소문의 근거는?	<p>안산테니스장 부지는 봉원사 소유인 바 당초부터 수목이 없는 공터로써 “장수천”약수터 동호인들이 92년부터 기존 공지를 간이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p> <p>안산테니스장이 私有化란 소문은 코트가 1면이라서 이곳의 주 이용객이 장수천약수터 회원인 관계로 일부 주민이 우리구에서 만든 테니스장인줄 인식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기창표의원	구립 幼兒院長들의 선거운동 참여시 관계관의 견해는?	<p>교육법 73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1, 동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구립 幼兒院長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구에서 설립하고 위탁한 시설의 장으로서 주관성이 개입되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p>																											
기창표의원	영세자녀와 저소득자녀의 현황 및 70~80세 生保者 및 거택보호자 실태?	<p>① 현황 95. 9. 30 현재</p> <table border="1" data-bbox="646 1112 1254 1267"> <thead> <tr> <th colspan="3">구 분</th> <th colspan="3">20세 미만</th> <th colspan="3">70세 이상</th> </tr> <tr> <th>계</th> <th>거택</th> <th>지활</th> <th>계</th> <th>거택</th> <th>자활</th> <th>계</th> <th>거택</th> <th>지활</th> </tr> </thead> <tbody> <tr> <td>667</td> <td>295</td> <td>372</td> <td>297</td> <td>35</td> <td>262</td> <td>370</td> <td>260</td> <td>110</td> </tr> </tbody> </table> <p>② 저소득층 지원실태 - 1,741,67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 413가구 309,208천원 · 학자금 : 614명 82,470천원 · 의료비 : 7,411가구 760,000천원 · 취업사업 : 34,706명 590,005천원 	구 분			20세 미만			70세 이상			계	거택	지활	계	거택	자활	계	거택	지활	667	295	372	297	35	262	370	260	110
구 분			20세 미만			70세 이상																							
계	거택	지활	계	거택	자활	계	거택	지활																					
667	295	372	297	35	262	370	260	110																					
기창표의원	월동 煖房計劃 및 農産物直來計劃은?	<p>① 월동 난방계획</p> <p>현재 우리구에서는 난방 연료로 도시가스 54%(66,128가구) 유류 32%(37,448가구) 연탄 12%(16,386가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지대, 시민아파트 등에 폭설 등으로 연탄배달 곤란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월동기 煉炭備蓄場을 設置運營하고 있음.</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기창표의원		<p>(비축기간 : '95년 10월 ~ '96년 3월, 비축량 : 15,700장, 수해가구 : 455가구, 가용일 : 5일)</p> <p>② 농산물 직거래 계획 우리구에서는 '95년도 姊妹結緣農協 44개소와 직거래 50회를 실시하여 956,881천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쌀, 잡곡, 양파, 포도등) 앞으로 이미 결연되어 있는 조직을 활성화하여 상설매장등 직거래 정례회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p>																								
기창표의원	<p>廢水 및 廢棄物回收 處理 실태?</p>	<p>우리구 폐수배출업소는 92개소가 있으며, 폐수 처리 방법에는 자가처리업소 廢水處理方法和 委託處理 業所 處理方法이 있습니다. 폐유, 기름걸레, 슬러지 등 위탁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한강 環境管理廳長으로부터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업소에 全量 委託處理하고 있습니다.</p>																								
기창표의원	<p>관내市場內 占用料 賦課 실적?</p>	<p>①</p> <table border="1" data-bbox="639 1122 1243 1387"> <thead> <tr> <th rowspan="3">시 장 명</th> <th colspan="2">계</th> <th colspan="4">년 도 별</th> </tr> <tr> <th colspan="2" rowspan="2">건수 금 액</th> <th colspan="2">91 년도</th> <th colspan="2">93 년도</th> </tr> <tr> <th>건수</th> <th>금 액</th> <th>건수</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서중시장 (남가좌1동 소재)</td> <td>579</td> <td>78,860 천원</td> <td>266</td> <td>20,180 천원</td> <td>313</td> <td>58,680 천원</td> </tr> </tbody> </table> <p>② 시장현황 신촌시장, 모래내(서중시장 포함) 인왕시장, 영천시장</p>	시 장 명	계		년 도 별				건수 금 액		91 년도		93 년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서중시장 (남가좌1동 소재)	579	78,860 천원	266	20,180 천원	313	58,680 천원
시 장 명	계			년 도 별																						
	건수 금 액			91 년도		93 년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서중시장 (남가좌1동 소재)	579	78,860 천원	266	20,180 천원	313	58,680 천원																				
기창표의원	<p>安山公園 長期化 發展計劃은?</p>	<p>안산공원은 약 60만평으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사유지(60%)가 많아 土地 買入에 따른 재정부담이 과다(토지매입비 추정 1,200억원)하여 단기 간내에 전체적인 公園造成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토지보상이 따르지 않는 國·公有地를 活用할 계획입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기창표의원	脫漏稅源 밭갈건수 및 路上敵 治物 정비 실태?	<p>① '95년도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정비건수</th> <th colspan="3">유 형 별</th> </tr> <tr> <th>상품적치</th> <th>노상작업</th> <th>통행장애물</th> </tr> </thead> <tbody> <tr> <td>15,201</td> <td>13,644</td> <td>1,082</td> <td>475</td> </tr> </tbody> </table> <p>② 정비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간선도로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단속원 기동 정비 2개조 14명 - 중점정비업소 : 15개업종 308개소 	정비건수	유 형 별			상품적치	노상작업	통행장애물	15,201	13,644	1,082	475
정비건수	유 형 별												
	상품적치	노상작업	통행장애물										
15,201	13,644	1,082	475										
기창표의원	歩道블럭 工事現況 및 빗물받이 첩판시설물 현황?	<p>금년 9월말 현재 보도블럭 공사는 도로소파 보수 1건에 17.5a이며,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뚜껑은 총 13,000개소 입니다.</p>											
기창표의원	관내공원 環境汚染 防止對策 및 자연보호실태?	<p>공원내 구역을 지정 담당공무원 및 공익요원 22명이 매일 구역별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 실태를 摘發 斷續啓導 및 弘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기창표의원	駐車場 施設 擴充計劃은?	<p>주택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하여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駐車區劃線을 設置하고, 관내기업체, 대형 건물의 부설주차장, 은행, 교회, 학교운동장 등 개방가능한 건물의 관리 주체와 협의 야간 무료개방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市·區有地 등 公共用지를 發掘하여 소규모부지 共同駐車場을 確保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용이 가능토록 산책로 정비 및 벤취, 정자 등 소규모 편익시설 위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실시, 우리구 주민들의 쾌적한 休息空間으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김평락의원	區金庫 銀行을 ① 상업은행으로만 지정하는 이유?	<p>1988년 5월 1일 자치구가 되었으나 상업은행이 오랫동안 서울시금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歲入歲出 業務를 電算 開發하여 신속한 전산처리에 기여하고 있고,</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평락의원	② 구청내의 상업은행 사무실 임대는 적정한가?	서울시로부터 調整交付金を 배정받는데도 시와 구가 동일은행으로 운영하여야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③ 공개경쟁 입찰로 구 금고 은행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	<p>구청내 상업은행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5백명이며 대부분 민원인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税金納付와 도시철도채권 구입, 구정수행을 위한 각종자금 지출과 구청을 來訪하는 民願人들의 便宜圖謀등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p> <p>구 금고은행 변경에 따른 문제점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수납금 취합의 어려움 - 세출금 지급과 시·구 자금관리의 이원화 - 현재 3년마다 구 금고 갱신계약을 맺고 있는데 교체 변경에 대한 우려와 신뢰감 부족으로 지속적인 업무개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김평락의원	地方稅 滯納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를 밝히고 불납결손한 현황과 완납케 할 방안은 무엇인가?	<p>'95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체납액은 196,318건 13,776백만원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질적인 滯納類型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주소이전, 소유권등록, 등록말소등의 절차 불이행 · 면허세의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발생 · 부도로 도피중이거나 행방불명, 무재산, 외국이민 재소자등이며 - 完納方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록압류를 우선으로 하고 · 서울시 전자계산소 조회로 서울시내 재산압류 · 내무부 전산조회로 지방재산 보유자 채권 확보 · 고액체납자 공매 실시등 · 고질, 상습 체납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고발등으로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구의 不納缺損 處分 사실은 없습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평락의원	<p>① 특정지역은 없애야 되고 특정지역은 3배이상 늘려놓은 것은 적절한 조치였는가?</p> <p>② 악취, 분진 방지시설이 없는 적환장 운영은 적절한가?</p> <p>③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점검, 검사하고 담당전문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가?</p> <p>④ 우천시에도 적환시킬 수 있도록 고정건물(가건물도 무방)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p>	<p>쓰레기積換場은 당초 대신동, 흥은3동, 북가좌1동, 남가좌2동 4개소였으나, 남가좌2동 적환장을 북가좌1동으로 이전하고, 종래의 북가좌1동 적환장은 蘭芝島로 移轉하여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하절기 장기간의 김포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중단시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뽕스(가림막)설치 및 공원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p> <p>-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 방지를 위해 물세척·粉塵防止 施設을 설치하고 침출수(오수)는 분리하수관로에 인입화하여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감독공무원 1명을 지정 점검하고 있습니다.</p> <p>- 代行業體와 區直營쓰레기는 엄연히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처리하고 있습니다.</p>
김평락의원	<p>不法駐·停車 斷續으로</p> <p>① 체납된 금액은 월별, 년도별 얼마이며</p> <p>② 완납케 할 방안은 무엇인가?</p>	<p>'90년 11월 ~ '95년 8월말까지 부과된 駐車違反 過怠料 현황</p> <p>- 부과 : 14,149,715천원</p> <p>- 징수 : 8,168,729천원(징수율 57.7%)</p> <p>- 체납 : 5,980,986천원</p> <p>滯納額徵收 提高方案</p> <p>- 차량소유주의 명의 및 주소지 변경시 체납정리 후 변경</p> <p>- 차량압류 조기 실시</p> <p>- 30건 이상 상습체납자 개별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 추진</p> <p>단속에 소요된 경비 ('95. 1~9월말) 666,119천원(인건비 지출, 대상인원 :86명)</p> <p>단속방향은</p> <p>事前號角豫告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및 보도상 주차행위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토록 단속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평락의원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이 없는 동안 어디이며, 구체적인 對策은 무엇인가?	우리구 어린이놀이터는 13개동 30개소이며, 어린이 공원이 없는 동은 忠正路, 北阿峴2·3, 大新, 弘濟4, 弘恩1, 南加佐1, 北加佐1洞 등 8개동입니다. 소공원은 흥제천, 북가좌 한양아파트 옆 등 9개소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6~'98기간 동안 각 동별로 1개소씩 소공원이 造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관내 약국, 약방등의 감독 및 行政處分 内容 및 現況?	<p>① 醫藥業所 監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526개소 - 목표 : 년2회 - 방법 : [定期監視 隨時監視 <p>② 推進實績</p>
-------	--------------------------------	---

감사실적	위 반 내 역				
	계	무자격	무신고	표시 및 관리기준	기 타
792	16	5	3	7	1

김평락의원	무자격약사 단속실적 및 行政處分 現況?	무자격약사 행정처분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약국명</th> <th>소재지</th> <th>개설자</th> <th>위반내역</th> <th>조치내역</th> </tr> </thead> <tbody> <tr> <td>대 명</td> <td>연희동 568~1,2</td> <td>제이자</td> <td>무자격자 의약품</td> <td rowspan="3">업무정지 15일</td> </tr> <tr> <td>대 영</td> <td>흥제동 139~10</td> <td>이경진</td> <td>판매및</td> </tr> <tr> <td>영 진</td> <td>흥제동 138~6</td> <td>민정희</td> <td>조제</td> </tr> </tbody> </table>	약국명	소재지	개설자	위반내역	조치내역	대 명	연희동 568~1,2	제이자	무자격자 의약품	업무정지 15일	대 영	흥제동 139~10	이경진	판매및	영 진	흥제동 138~6	민정희	조제
약국명	소재지	개설자	위반내역	조치내역																
대 명	연희동 568~1,2	제이자	무자격자 의약품	업무정지 15일																
대 영	흥제동 139~10	이경진	판매및																	
영 진	흥제동 138~6	민정희	조제																	

박덕균의원	道路등 國·公有地 무단점유에 대한 對策?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은 총관리대상 6,732필지 2,534,185.2㎡중 2,059필지 56,221.9㎡으로 이에 대해 辨償金을 賦課하고 있습니다. 辨償金은 5년간 소급 賦課하므로 高額으로 납부저항이
-------	------------------------	--

質問職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박덕균의원		있고 占有者의 대다수가 無許可 建物 점유자로서 납부 능력부족 및 납세의식 결여등 辦償金業務에 애로가 많습니다.
박덕균의원	都市가스事業法 시행규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都市가스事業法 시행규칙중 도시가스 배관 시설기준, 배관보호 등의 規定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회사에서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격자를 시공관리자로 선정 배치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韓國가스安全公社에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현장을 監督토록하고, 區廳에서도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덕균의원	再開發에 따른 組合員 資格에 대하여?	再開發區域內 土地 및 建築物 所有者의 조합원 자격은 - 토지 및 유타가건물 소유자 - 토지 및 무허가건물 소유자 - 토지소유자 - 타인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 소유자(건축단시부터 소유자 분리) - 국·공유지상 유타가건물 소유자 - 시유지상 유타가건물 소유자 - 국유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 단,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서울特別市 自治區 無許可建物 整備事業에 대한 補償金支給條例” 적용대상 건축물에 한합니다.
김영일의원	前職大統領의 國·公用地 및 私有地 占有 및 取得現況?	- 우리구 관내 國·公有財産의 取得·占有사실 없으며 - 시유지 점유 및 취득에 대하여 관리·처분 주체가 서울特別市입니다.
정일출의원	南加佐1洞 쓰레기재활용창고를 複合文化施設로 變更할 的의는 없는지?	南加佐1洞 쓰레기 재활용 창고 및 미화원휴게실은 지하1층, 지상4층(150평)으로 신축하여 장애인 작업장 및 再活用品 販賣場으로 사용할 計劃이나 구체적인 층별 사용계획은 설계시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決定토록 하겠습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일출의원	남가좌동 124-127일대 구유지를 활용할 계획은?	남가좌동 124번지는 점유토지 233㎡, 비점유 토지 274㎡입니다. 점유토지는 기점유자 26명에게 매각하였으며, 비점유 토지는 남가좌 제6구역 住宅改良 再開發事業 組合側에 賣却하였습니다.
정일출의원	西大門區 행정공용차량정비 지정업체의 현황?	區廳, 洞事務所, 保健所, 區議會 車輛은 서울시지정 정비업소인 서울시 車輛整備事業所에서 정비, 수리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중 경마한 수리는 자체정비(정비원 7명)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의원	西大門區 管内 공장허가 현황과 징수세입 현황? (1991~1995)	91년부터 95년까지 工場登錄 現況은 42개 업체이고, 10월 16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공장은 총 136개소입니다. 공장등록에 따른 地方稅는 免許稅(구세)로써 91년~95년까지 면허세 부과자료는 총 42건, 369,000원입니다.

제38회 定期會 (95. 12. 8 ~ 12. 11)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전성장의원	文化會館 관리는 매년 예산이 투자되는데 財政이 빈약한 우리구 실정으로 보아 계속 區에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민간이나 단체에 위임하여 運營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자 견해는?	<p>93년 10월 15일 開館한 西大門文化體育會館은 개관 당시부터 YMCA에 위탁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文化會館은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文化會館은 음악회와 연극·무용 등의 각종 공연과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착실하게 제공하여 왔습니다.</p> <p>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에 文化會館의 관리운영에 투자되는 예산이 다소 과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 전문가의 참여아래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운영 희망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위탁운영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p>
이기봉의원	마포로 도심지 再開發區域중 西大門區에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실시방안?	<p>이기봉의원님께서 質問하신 명지종합병원에서 아현교회에 이르는 북아현 1동 지역은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都心再開發事業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역입니다.</p> <p>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p> <p>우리구청에서도 土地主들에게 도심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김정현의원	保健所 구민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용의는 없는지?	<p>保健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대책으로서, 보건소가 진료기관으로써의 기능보다 지역의 복지센터로서 주민들의 건강생활과 복지사업을 동시에 담당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p> <p>우선 '96년에는 保健所의 각종 의료장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체토록 하겠으며, 약품도 일반병원 수준으로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診療事業에 있어서는 노인성 질환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漢方無料診</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정현의원		<p>療와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 등을 진료하기 위한 家庭訪問診療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이용율을 높이고 利用住民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오환인의원	京義線 철도소음 피해대책은?	<p>우리 西大門區를 통과하는 경의선철도는 총연장 65km로써 일일 300여회의 객·화차가 통과하고 있으며, 철로 100m이내에 8개동 18,000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p> <p>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우리구청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인이 철도청장과 시설국장을 직접 면담하여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조속히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要請하였습니다.</p> <p>'96년에는 충정로에서 북아현동 터널입구까지를 철도청에서 우선 복개공사를 시행키로 확답을 받았으며, 나머지 북아현동과 대신동, 창천동, 연희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등 소음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工事を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p>
박덕균의원	<p>區廳長에게 質疑한 사항에 대한 答辯事項의 실천이 미진한 사유 및 대책은?</p> <p>예를들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시가스문제 ②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시장 등의 실태조사 ③ 흥은동지역 도로공사 등 	<p>지난번 여러 議員님들께서 質疑하신 내용들 모두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었거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그 실적이 부진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p>아울러, 區廳長의 答辯은 區議員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이자 주민에 대한 약속인 점을 감안하여 더욱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p>
정일출의원	<p>크고 작은 잡다한 행사에 區廳職員을 참여시키는 것이 내실 있는 區民行政을 위하여 문제점은 없는가?</p>	<p>과거에는 각종 행사가 行政機關의 주도하에 公務員이 주축이 되어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p> <p>이에따른 문제점으로서, 擔當公務員의 빈번한 이석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될 뿐만아니라 내실있는 봉</p>

質問職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일출의원		<p>사행정 추진에도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행사는 참석한 주민들의 안내와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본인은 區廳長에 취임한 이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각종 캠페인과 실적위주의 團東行爲를 중지시키바 있습니다.</p>
홍성덕의원	<p>區廳長 人事權에 대하여? - 行政에 專門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기술 분야는 기술직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p>	<p>自治區廳長은 地方自治法과 地方公務員法 등 關聯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과 서울特別市長의 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면직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구소속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전보, 휴직, 면직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봉과 해임 등의 징계처분권도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전체 公務員이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강좌등을 통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분야에는 技術職 公務員을 補하도록 하겠습니다.</p>
기창표의원	<p>서민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조치는?</p>	<p>시민아파트 再建築은 대부분 고지대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건축고도제한과 풍치지구의 건축행위제한, 그리고 진입로확보 등 입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입주세대가 많기 때문에 事業의 재산성도 희박하여 건축을 희망하는 업체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서울市長과의 면담을 통하여 건축행위 제한의 완화와 풍치지구 해제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에는 미흡합니다. 再開發事業은 근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자치원칙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없으면 추진에 많은</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기창표의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住居環境改善事業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입로 등 공공시설 설치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過怠料 賦課事項의 문제점	무단투기자에 대한 過怠料 납부고지 방법은 2가지로, ① 무단투기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過怠料處分 및 納付通知書」를 발부할 수 있으며, ② 무단투기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탐문등으로 추적확인하는 경우 確認書를 작성하여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전성장의원	각종공사로 인하여 管内道路에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각종 자재로 인한 駐車難과 통행장애에 대한 대책은?	각종 공사장 무단 道路占用 단속대책 건축공사장 사후관리강화 - 建築課(현장지도), 洞事務所(환경순찰) - 建設管理課 환경순찰기능 : 이면도로 건축현장까지 확대 실시 건축공사장 실태조사 실시 년2회(상·하반기) → 년4회(분기별)
전성장의원	구 직제(정원)의 근무하고 있는 인원현황 및 교통전문직 업무 현황	구전체 정원의 勤務者는 상용직 93명, 일용직 45명, 사환 23명 총 161명입니다. 交通行政課의 정원의 근무인원은 交通專門職 3명입니다. - 교통전문직 擔當業務 · 自治區 교통개선5개년 계획 및 년차별 투자계획(TIP·TSM·SCHOOLZONE설치) · 각종 교통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대책 수립(일방통행제, 이면도로정비) · 자치구별 교통데이터 베이스 구축(DATA BASE) · 交通改善委員會 운영 및 개선방안수립 지원(정체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 기타 자치구 교통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지원
전성장의원	都市가스事業法 제20조 및 도시가스 供給規定 제6조에 의하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95년 10월 현재 55.8%이며 동별 보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質 問 職 員	質 問 內 容	答 辯 內 容
---------	---------	---------

전성장의원
여 供給되고 있는 도시가스의
동별 供給現況 및 供給率은 몇
%인가?

서대문구 도시가스보급실적

(95. 10. 31현재)

동 명	대상가구	보급세대	보급율
계	121,494	66,914	55.08%
충정로동	3,625	1,037	28.61%
천 연 동	4,770	1,988	41.68%
현 저 동	938	0	0.00%
북아현1	4,155	3,293	79.25%
북아현2	3,115	2,061	66.16%
북아현3	5,634	3,503	62.18%
대 신 동	3,233	1,915	59.23%
창 천 동	4,697	3,648	77.67%
연희1동	5,699	2,849	49.99%
연희2동	4,730	2,297	48.56%
연희3동	5,146	3,159	61.39%
홍제1동	5,802	2,758	47.54%
홍제2동	4,886	2,162	44.25%
홍제3동	7,460	3,560	47.72%
홍제4동	3,227	2,073	64.24%
홍은1동	3,025	3,002	99.24%
홍은2동	7,472	2,844	38.06%
홍은3동	9,648	5,603	58.07%
남가좌1	7,535	3,558	47.22%
남가좌2	9,812	5,275	53.76%
북가좌1	6,804	4,209	61.86%
북가좌2	10,081	6,120	60.71%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전성장의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결정 현황?	<p>調査目的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p> <p>- 調査實施 : '95년 9월 1일 ~ 9월 30일</p> <p>- 調査方法 : 신청조사와 직권조사 병행 실시</p> <p>- 調査結果 : '95년 12월중 '96생활보호 대상자 확정 예정임.</p>																					
전성장의원	자동차 강제 폐차 처리 현황?	<p>'95년 11월 30일 현재 자동차 강제폐차 처리현황은 방치차량이 총 143대로 74대를 강제폐차하였고 61대는 소유자가 자진 이동하였음.</p> <p>방치차량 소유자 49명에 대하여는 管轄警察署에 고발 조치하였음.</p>																					
전성장의원	장기 직원후생복지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생활이 어려운 公務員에 대한 支援計劃?	<p>職員厚生福祉 計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휴양소 운영의 확대 - 직원생일축하 - 직원결혼축하 - 직원산업시찰 실시 <p>생활이 어려운 公務員 支援計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대부 알선을 통한 생계 지원 - 대부계획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부종류</th> <th>대 부 액</th> <th>대부종류</th> <th>대 부 액</th> </tr> </thead> <tbody> <tr> <td>전 세 자 금</td> <td>1,300</td> <td>국고대여징학금</td> <td>총무처고시</td> </tr> <tr> <td>경 조 비</td> <td>300</td> <td>주택매입자금</td> <td>2,500</td> </tr> <tr> <td>재해복구비</td> <td>500</td> <td>신 용 대 출</td> <td>500</td> </tr> <tr> <td>연금학자금</td> <td>등록금전액</td> <td>의 료 비</td> <td>200</td> </tr> </tbody> </table>				대부종류	대 부 액	대부종류	대 부 액	전 세 자 금	1,300	국고대여징학금	총무처고시	경 조 비	300	주택매입자금	2,500	재해복구비	500	신 용 대 출	500	연금학자금	등록금전액	의 료 비	200
대부종류	대 부 액	대부종류	대 부 액																				
전 세 자 금	1,300	국고대여징학금	총무처고시																				
경 조 비	300	주택매입자금	2,500																				
재해복구비	500	신 용 대 출	500																				
연금학자금	등록금전액	의 료 비	200																				
전성장의원	關係公務員 교육실적 현황?	<p>教育科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教育(직급별교육) : 관리자교육과정, 중견행정과정 등 17개 과정 - 專門教育(분야별교육) : 신입동장과정, 의회실무과정 등 45개 과정 																					

質問職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전성장의원		- 外國語教育(학원위탁)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教育機關 :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내무부연수원 등 8개 교육기관 教育實施 現況 : 3개분야 65개과정 658명 - 기본교육 : 17개 과정 110명 - 전문교육 : 45개과정 348명 - 외국어교육 : 3개과목 220명

전성장의원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管理 業
 務(업체별 유선방송 가입자 현
 황 및 시설설치비와 월사용료
 의 동별 현황)

[관내 유선방송사 현황]

구분	방송사	소재지	가입자수	사 업 구 역	시설비	월사용료
중계	서대문 유 선	홍은동 274-88	9,500	천연, 현저, 북아현1·3동, 연희1·2·3·4동, 홍은 1·2·3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총정로3가	35,000원	4,000원 (북아현 일부 : 3,000원)
	남 부 유 선	창천동 506-13	3,500	대신, 창천, 북아현2동, 미 근동, 합동, 총정로1·2가, 홍은1·2·3동, 남가좌 1·2동, 북가좌1·2동	35,000원	4,000원
	남 부 음 악	"	2,240	북아현1·2·3동, 대신, 창천, 연희1·2·3동, 남 가좌1·2동, 북가좌1·2 동, 홍은3동 277일대	25,000원	10,000원
	중 앙 음 악	홍제동 266-221	503	총정로일부, 천연, 현저, 홍제1·2·3·4동, 홍은 1·2동, 홍은3동 산11, 95- 265일대	25,000원	10,000원
종합	서서울 CATV	총정로 3가 63-1	9,418	서대문구 전역	단독주택 40,000원 공동주택 60,000원	17,000원 * 유료 채널신청 시 7800 원 추가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	------	---------

전성장의원 공연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현황
 관내 공연자 등 관내 공연자 등 관내 공연자 등
 등록현황과 지도 등록현황과 지도 등록현황과 지도
 점검 현황을 설 점검 현황을 설 점검 현황을 설
 명바람.

계	소극장	순회 영화	연극	연극	가무	음악	무용	합창	국악	기타
250	12	1	101	47	16	15	28	4	8	18

지도점검 현황

지도점검대상				조치내역			
계	대극장	영화 소극장	비디오 소극장	계	영업 정지	경고	행정 지도
16	3	11	2	184	2	6	176

이기봉의원 가로수 문제와 公園의 녹지관리 現況

우리 관내 가로수는 의주로, 연희로등 16개 노선에 총 7,181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3,559주, 버즘나무 3,622주로 전지, 병해충 방제, 시비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 상용인부(8명)를 구에서 채용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公園은 330개소(27,569㎡)가 시설되어 있으며 개소당 150~300평 정도의 小規模 公園으로 종합놀이대, 벤취, 파고라등 28종 5,248점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公園内 시설물의 보수, 도색, 청소등의 관리는 자체 직영인부(6명) 및 관할 洞事務所에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의원 行政事務監査 사후 검증제의 필요성?

行政事務監査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회로부터 접수하여 해당부서에 통지하고 지체없이 처리토록 지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地方自治法施行令 제19조 제3항에 의거 區議會에 보고하고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사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行政事務監査後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구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이기봉의원	문화회관의 개명문제에 대하여	文化會館 명칭에 대한 결정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개관준비 및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각종 표지판(간판, 내온) 및 弘報物 등에 회관명칭이 기입되어 있어, 명칭개명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명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봉의원	西大門區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중 개정조례안과 西大門區議會 事務局 設置條例中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폐 문제점에 대해서?	西大門區議會事務局 設置條例 제4조의 규정 “區議會事務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명으로 한다”를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원조례에 의한다”로 개정하여도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변동이 없고, 어떠한 條例도 의회의 심사를 거쳐 制定 또는 開廢되는 것이므로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기봉의원	구 금고에 대한 條例制定 문제에 대하여?	구 금고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地方財政法 제64조에 地方自治團體 長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취급토록 지정할 수 있고 금고의 지정과 변경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 금고설치 계약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와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재무회계규칙 제6절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 제정건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기봉의원	주민용 신문구독 문제에 대하여?	서대문구는 주민제도용 신문으로 종합일간지인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독, 배부하고 있습니다.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구정홍보를 활발히 해야 할 시점에서 국정홍보를 위한 서울신문의 구독은 구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 점차로 구독부수를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신문은 관내 4개 신문이 발행되고 있으며, '95년 현재 5천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으나 건전한 지역언론의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김평락의원	'96년도 예산절감 방안? (인력 및 과학기기 대치등)	<p>人力管理 및 과학기기 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① 人力管理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등을 통하여 유휴인력이 없도록 기동성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금년 11월 유사기능의 課 係를 진단결과에 따라 통합하였으며,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p> <p>② 행정장비의 과학기기 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정 전반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96년도에 추진산기가 가동되어 지방세업무와 회계관리, 인사관리 등 많은 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그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봅니다.</p>
김평락의원	國·公有地 매각 결정과정에서 해당 출신 구의원의 의견청취를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가?	<p>國有財産管理, 處分은 국가위임사무로서 법령과 총괄청, 관리청의 업무지시 또는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수임기관에서는 재량권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잡종재산은 일반사물과 마찬가지로 私法의 적용을 받고, 당사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p> <p>이와같이 國有雜種財産의 매각은 서울특별시나 재정경제원의 승인하에 매각되는 것이므로 구의원님들의 의견청취등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p>
김평락의원	마화원 수를 줄이고 청소구역을 민영화 할 용의는?	<p>앞으로 '96~'98기간 동안 소공원 조성이 안돼 있는 동은 1개소씩 하천변, 도로변 등 소규모공지에 소공원을 조성,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p> <p>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동은 총정로, 북아현2·3동 등 8개동으로 再開發 및 再建築 등 공동주택사업 승인시는 법정규모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行政指導를 펴 나가겠습니다.</p>
김평락의원	134번 버스중(적색, 푸른색)한 쪽은 북가좌1동 파출소(한양아파트)앞을 경유 모래내시장에	<p>현행 시내버스 노선 조정 업무는 (운수사업법 제69조 동법시행령제9조)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p> <p>質疑하신 북가좌2동에서 북가좌1동 파출소(한양아파</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평락의원	합류하도록 할 計劃은?	트)앞 통과노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區民들로부터 수차 건의되어온 노선조정 및 신설 建議案을 작성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향후 시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市民 公聽會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평락의원	<p>북가좌1동 소재 쓰레기적환장 運營 方法은 적절한가?</p> <p>① 쓰레기양과 처리능력?</p> <p>② 분진, 악취방지시설?</p> <p>③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p> <p>④ 직영쓰레기만 적환하지 않고 민영쓰레기까지 모아 놓은 것은 적절한가?</p>	<p>① 일일처리능력이 200여톤으로 현재 일일 평균 8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p> <p>② 가림막은 이미 설치하였으며, '96投資事業費用中에서 길이 100여m, 높이 15m정도의 소음방지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p> <p>③ 침출수(오수)는 '95년 8월 연결 공사를 완료하여 분류 하수관으로 분리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p> <p>④ 앞으로 직영쓰레기는 물론 민영쓰레기도 야적하지 않겠습니다.</p> <p>가장 바람직한 것은 資源回收施設(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어린이 놀이터 신설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김평락의원	북가좌1동 삼거리경유 마을버스 운번제 運營은 언제할 것인가?	<p>의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번제운영은 지난 '95년 7월 14일 가좌교통(마을버스업체) 및 현대교통(버스업체)에서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거북골길 경유 홍제전철역까지 연계하는 路線免許申請이 있는 바, 공안협의 결과 교통 정체 및 교통사고 빈발지역으로 불가 회시 보류된 바 있습니다.</p> <p>앞으로 도로교통여건 변화(버스노선변경 등)가 있을 시 再檢討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p>
권재일의원	불량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區廳長의 임기동안 장·단기 再開發計劃은 어떻게 되는지?	<p>區廳長 임기동안 장단기 추진계획 재개발사업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간(5~10년) 대단위 사업으로 일반 行政計劃(도로건설, 사회복지 지원 등)과 달리 뚜렷이 장·단기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 개별성 복합민원 행정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 증식 방안,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화합과 시공회사의 이윤추구보다 균형있는 都市計劃事業推進에 적</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권재일의원		<p>극 동참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면서 최단시일내 개별 단위 再開發 事業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行政支援을 하는데 역점을 모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p>
권재일의원	區廳長 임기동안 재래시장 現代化 계획은?	<p>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내 시장은 區廳長님 公約事業으로 현대화하여 시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시장 現代化事業은 민간사업으로 사업주체의 현대화 의지표명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만, - 구청장님의 임기내 시장대표를 상대로 현대화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推進委員會를 발족시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착공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서중시장은 모래내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모래내시장 현대화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인왕시장은 구청장님 임기내 현대화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현대식 시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재일의원	소방도로 차선 설치후 管理計劃은 어떻게 하는가?	<p>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등 管理計劃은 내부방침(구청장방침)에 의거 동장책임하에 연간 2회 현황을 조사하여 민원 대상이 되는 구획선의 폐지(삭제)나 도로여건 변화에 따라 신설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 각동으로 豫算配定하여 총 67,77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p>
정혜연의원	區廳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區政活動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할 계획은?	<p>대형 전광판 설치 운영건에 대하여 기초조사한 바, 많은 설치비(7~10억)가 소요되므로 구자체 설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p> <p>따라서 經濟性등을 정밀 조사한 후 광고전문기관에 설치비 부담, 일정기간 임대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p>
정혜연의원	西大門地域의 지방신문활성화 방안에 대해?	<p>현재 서대문구에는 4종의 地域新聞이 발행되고 있으며, '94, '95년도에는 각각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신문을 購讀,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혜연의원		’96년도에는 1천만원의 豫算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5개 구청중 두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정혜연의원	自力開發地域 정립에 대해, 연회2동 주택지 약 1,000여세대 및 흥연아파트 23개동등 약 13개블럭에 대해.	연회3 자력재개발구역 사업계획 및 실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 획</th> <th>실 적</th> <th>진 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건 물(동) (87%)</td> <td>아 파 트</td> <td>400</td> <td>400</td> <td>100</td> </tr> <tr> <td>연립주택</td> <td>448</td> <td>59동382</td> <td>85</td> </tr> <tr> <td>단독주택</td> <td>177</td> <td>160</td> <td>90</td> </tr> <tr> <td rowspan="2">공공시설 (100%)</td> <td>도 로</td> <td>2,866m</td> <td>2,866m</td> <td>100</td> </tr> <tr> <td>녹 지</td> <td>24,132㎡</td> <td>24,132㎡</td> <td>100</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획	실 적	진 도(%)	건 물(동) (87%)	아 파 트	400	400	100	연립주택	448	59동382	85	단독주택	177	160	90	공공시설 (100%)	도 로	2,866m	2,866m	100	녹 지	24,132㎡	24,132㎡	100
구 분	계 획	실 적	진 도(%)																									
건 물(동) (87%)	아 파 트	400	400	100																								
	연립주택	448	59동382	85																								
	단독주택	177	160	90																								
공공시설 (100%)	도 로	2,866m	2,866m	100																								
	녹 지	24,132㎡	24,132㎡	100																								
이석문의원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방침과 人事豫告制 실시등에 대하여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과 승진, 임용, 전문휴직, 면직 등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이 區廳長에게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사, 그리고 누구나 수긍하는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구 청장님의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직위의 職務要件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을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안산스카이 道路 建設計劃에 대하여?	- 위치 : 연회동 대림APT~무악재고개아래의 산복도로간 - 규모 : B12m, L=3000m ’96년부터 시의 特別交付金으로 사유지 보상을 실시하여, ’97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각종 委員會의 통·폐합 재정비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에는 37개의 委員會가 있습니다만, 議員님이 質疑하신 대로 향후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과 직결되는 위원회에는 區 議員님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박덕균의원	흥은동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공사지연에 대하여?	흥은동 10-39호 일대 흥은동 연합조합 현장의 공사 지연은 - 당초 사업시행사인 “일주공영”의 부도로 인하여 공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박덕균의원		<p>사비·설계비·각종용역비등 자금부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95. 1. 11)되어 현재는 조합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균열 피해에 따른 補償등 민원 처리 상황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청구빌라)이 받아들여져 대지 4,754평중 1,899평에 대하여 工事を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하여 95. 9. 16 異議申請을 제기, 訴訟중에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p>
박덕균의원	區廳舍 및 洞廳舍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p>청사 안전을 위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 定期的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방재훈련을 성실하게 하여 安全對策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p>
정일출의원	구청직원의 정원증감은 고무줄인가?	<p>地方自治團體의 정원은 地方自治法 제102조의 규정(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p> <p>따라서 區廳長이 임의로 정원을 늘리거나 감축할 수 없으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게 되며 이때에는 반드시 議會의 議決을 거쳐 條例를 개정하여야 합니다.</p>
정일출의원	기업행정기법의 진단제로 각 동직원의 토요일 격주 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은?	<p>區民에게 行政의 처리를 확대하고 소속직원에게는 여가활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토요일전일 근무제를 '96년도부터 施行토록 할 계획입니다.</p>
정일출의원	'95년 7월 1일 대통령령에 의거 서대문구청내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의회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p>條例·規則 審議會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와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소속하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 절차</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일출의원		또는 의회에서 議決된 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의결을 요구할 경우 동심회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의회의 議決權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정일출의원	洞事務所 청사 건물을 시민, 문화 복합건물로 증·개축할 용의는?	<p>議員님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느끼지만 현 동청사를 복합건물 형식으로 증·개축할 경우 균열 및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안전도에 문제가 예상되며, 건축법상으로도 기존 청사 대지 면적의 협소(동전체 평균 대지 124평, 건물 164평)로 증·개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p> <p>향후 동청사 신축시에 앞으로의 동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研究·檢討하여 시민과 더불어 활용하는 동청사를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p>
정일출의원	반상회운영 개선대책은?	<p>현행 반상회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반상회 운영규칙에 의거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단위로 (4,683개반)運營되고 있습니다.</p> <p>- 그러나 高度産業化 된 도시에서의 반상회는 만연된 개인주의화, 지역공동관심사항의 부재 및 교육, 경제적 차이등 이웃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반상회 개최율 및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p> <p>그러나 향후에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반상회를 개최 운영토록 하여 내실있고 건설적이며, 애항심고취는 물론 주인의식의 회복으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住民들 스스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반상회를 개선 운영하여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p>
홍성덕의원	區廳舍증축공사에 대하여?	구청사 건축과정에서 철근 배합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규격에 미달이 되어 위험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전문기관에 安全診斷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각종 공사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 대책은?	도시가스 공사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설계, 발주하여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나,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95년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홍성덕의원		<p>도에도 상반기 7개소 하반기 5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p> <p>앞으로도 施工現場 指導監督을 더욱 철저히 함과 동시에 시공 완료 후에도 도시가스배관 매설구간 중 임의지점을 선정,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부적합시설이 확인되면 再施工토록 조치하겠습니다.</p>
홍성덕의원	無許可 建物 團束에 대해?	<p>무허가 건물은 기존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로 구분되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거 적발책임은 洞長, 撤去責任은 區廳長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 건물 단속규정) - 따라서 적발,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에는 철거반과 기동합동순찰정비반을, 동사무소에는 상설점검반을 두고 地域擔當巡察制 및 住民申告制를 활용,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신축중 즉시 철거(무대책)를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시정명령, 대집행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후 철거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의원	<p>각종공사 현장에서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나?</p>	<p>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와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의 인력 및 장비 등 시공물량을 기록 작성함으로써 계획대로 工事進行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록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監督 公務員의 업무처리 과중으로 제때 감독일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허준구의원	<p>管内 統·班調整 및 정리의 필요성에 대하여?</p>	<p>통·반의 조정 및 정리는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統·班設置條例에 의하여 통·반의 조직, 명칭, 구역이 정해진 기준은 1통은 6~11개 반, 1개 반은 20~40가구로 구성하되 특수한 지역사정에 따라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p> <p>주로 통·반의 조정은 재개발지구의 아파트 신축에</p>

質問職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허준구의원	<p>다른 주민입주 예상 지역과 주민전출등으로 과소해진 통·반에 대해서 주민편익 증대 및 행정의 능률성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95년에는 4회에 걸쳐 통·반조정을 실시하여 현재 602개통 4,683개반으로構成 運營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 통·반의 調整이 필요한 지역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익 및 행정의 능률성등을 감안하여 기준에 따라 적정 조정토록 하겠습니다.</p>	
허준구의원	<p>① 북가좌1동 적환장을 구직영에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대행업체인 서부환경(주)에 무상으로 대여 해주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公共用地 사용에 따른 使用料 징수방안은?</p> <p>② 북가좌1동 적환장에 쓰레기 소각장을 無許可로 설치하여 산업폐기물을 연소하고 있으니 시정하고, 작업장 관리에 있어서도 적환장 칸막이 설치 작업장 1일 1회 소독 및 물청소등 衛生的으로 유지관리토록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p>	<p>북가좌1동 쓰레기 적환장은 수색로와 증산로 옆 시유지(도로부지)로서 면적은 약 1,690㎡(약487평)이며 1992. 8. 27부터 區直營에서 사용하던 중, 홍제천변 쓰레기 적환장 2개소(남가좌2동 적환장, 홍은3동 적환장) 이전문제가 北部都市高速道路 건설에 따른 치수대책과 관련 시(市)(종합건설본부)이전 촉구지시 7회, 구의회 질의 4회 등이 제기됨에 따라 홍제천변 소재 쓰레기 적환장 2개소 중 남가좌2동 적환장 [서부환경(주)]을 북가좌 1동 적환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북가좌1동 구직영 적환장은 난지도 구 청소차고로 이전하는 안이 區廳長方針('95. 4)으로 결정되어 1995. 7. 31 이전 완료하였습니다.</p> <p>적환장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준용하고 있으나, 향후계약 등 기회가 있을시 유상사용 방안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p> <p>북가좌1동 적환장 관리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1일1회 소독실시, 물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指導監督을 철저히 하겠으며,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방지시설 설치 완료, 소음방지벽 설치 예산반영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p> <p>오물처리는 적환장 아래 불광천 고수부지에 위치한 분류하수관로에 인입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허준구의원	<p>再活用品 수집 판매대금의 구재원 충당을 위하여 접수업으로 編成·運營할 방안은 없는지?</p>	<p>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사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1항의 規定「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와 제2항「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再活用 收集活性化를 위한 기금사용이 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p>
허준구의원	<p>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체납금 18건 9,110,000원 중 1개 販賣所에서 9건 6,690,000원이 체납되었으니 조속 징수바람.</p>	<p>규격봉투판매대금은 告知書 발행후 15일 이내 시중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만일 납부치 않을 경우 구금고인 상업은행 연체이자율 18%가 1할 계산된 가산금을 포함하여 納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체납 18건에 대한 販賣所는 체납고지서를 일괄발행하여 '95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시달하였으나, 완납하지 않을 경우 '96년도 판매소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措置하였습니다.</p>
허준구의원	<p>清掃課 '96예산편성안이 148억원으로 '95예산액 111억원보다 37억원이 증액되었으니 감축방안 연구검토 답변요망.</p>	<p>'96년도 淸소관리 豫算은 총 13,881,743천원으로 '95년도 대비 2,752,12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 내역은 ① 淸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94명) 수당 347,597천원 이 '95년 기획관리예산에서 '96淸소관리로 이관되었으며 ② 수도권매립지 추가조성 공사비 자치구부담금 2,260,000천원 신설 ③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시설비 등 136,203천원 등 총 2,743,8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淸掃改善 問題 및 豫算節減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p>
기창표의원	<p>保健所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 직제 개편 - 주민홍보(각종예방, 치료부서 등)</p>	<p>현재 서울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보건소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 좋은 개선방안이 발표되면 그 개선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診療施設과 저렴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지역신문과 반상회보에 정기 게재, 팜플렛 또는 소책자 제작 배부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質問職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기창표의원	'96년도 區民을 위한 증점사업 및 획기적 예산절감 방안?	<p>'96년도 증점사업은 文化都市로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수준향상 및 도시기능 현대화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깨끗한 區政實現에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p> <p>또한 '96년도 豫算節減 방안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위사업별로 투자효과를 사전에 검토 ② 적정예산 규모의 재점검으로 財政運營의 건전성 확보 ③ 事業投資時 효율성 예측 등으로 예산운영 및 재정 집행시 절감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의원	노후 아파트 補修費 집행내역은?	<p>工事費 부담원칙(서울시 시민아파트 보수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집행대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 보, 스라브, 외벽, 주계단 등 구조체 보강공사 · 석축 및 용벽공사, 옥상방수 · 단지내 옥내·외 급·배수 시설, 정화조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 入住者 부담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포장 및 보수 ·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부분과 기타 경미한 사항 · 난방배관, 내부 칸막이, 벽동 세대별 소유부분은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p>'96년도 보수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提出하겠습니다.</p>
기창표의원	2000년대를 대비한 우리구의 都市計劃 方案에 대한 설명 및 통일로 주변 도로의 再開發工 事를 시행할 容의는 없는지?	<p>우리구의 21세기를 향한 都市計劃을 재 정비키 위한 중심개발축은 신촌지역을 주축으로 하여 지구중심 3개소(남가좌, 홍제, 아현)와 생활권 중심 4개소(충청, 천연, 홍은, 천연)의 토지이용도를 균형있게 조정하여 기존 상업지역보다 70%확대(면적 210,000㎡ → 350,800㎡)計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p> <p>다만, 도심 재개발문제는 서울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再開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p>

II. 行政事務 監査

1. 概 要

西大門區廳의 行政全般에 대한 狀態를 把握하여 議會活動과 豫算審議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를 獲得하고, 行政의 不합리한 部分에 대한 是正要求등을 통하여 行政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구청발전에 寄與하였으며, 우리구 의회에서는 매년 定期會 기간중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實施하고 있다.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9조의 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議會運營委員會

가. 監査期間 : '95. 12. 2 (1일간)

나. 監査對象 : 의회사무국 3계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사무중 1995년도에 처리된 업무

다. 監査結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議 政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정장비 정비 및 교체 ■ 자료실 보수정비 및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정장비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장비상태에 따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회계서류상의 각종 증빙서류는 정리되어 있으나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하여 자료실(도서열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구비 및 시설을 보수정비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차량 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여 車輛運行과 관리에 안전을 기할 것.
議 案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문서접수 및 처리 ■ 감사 및 질문자료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문서 접수처리 대장에 條例公布에 관한 사항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누구나 알이볼 수 있도록 관리 보존해야 할 것임. □ 監査資料 및 質問 要求資料는 의사일정에 촉박하지 않도록 구청과 의회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건의 및 기타사항〉

부 서 명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議 政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대책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議政活動 보조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인사가점 반영이 시급히 요구됨. ■ 의정활동비 예산과목 변경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는 議員會議費를 BC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회의비를 예산과목 '補償金'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의원 회의수당 회기일수 전일 지급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會議手當'을 원활한 議政活動을 위하여는 출석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議 事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사용 컴퓨터 구입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원고를 원시적 방법인 수필로 번문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능률적인 行政이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번문과 會議錄을 조기에 발간, 배부할 수 있도록 속기사용 컴퓨터 4대를 구입 활용하기 바람. 	

3. 總務委員會

가. 監査期間 : '95. 11. 27 ~ 12. 2 (7일간)

나. 監査對象 : · 3 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總務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 財務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 지적과)
 · 保健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洞事務所 (천연동, 북아현3동, 창천동, 연희3동, 홍은2동, 남가좌2동)
 사무중 1995년도에 처리된 업무

다. 監査結果

<우수 및 장려사항>

부 서 명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등록업무 관리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등록대장을 접수 순서대로 등재함으로써 登録事業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회·열람하는 경우에 등록대장을 일일이 대조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으로 능률적이지 못하였으나 - 등록대장 부분을 동별로 관리하도록 개선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民願人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구행정이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며, 이러한 창의적인 사례는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임.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方自治時代に 부응하는 구정방향과 주요정책 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하기 위하여 '95. 9월경 18인으로 구성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는 區政運營에 관한 전문의견과 구정자문을 통하여 구행정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음. ■ 위험시설물 예방순찰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이 있는 각종 施設物에 대하여 구간부 및 관련부서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예방순찰을 실시한 결과 21건의 위험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월동 기간중에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예방순찰 및 철저한 점검을 이행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부 서 명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 기동처리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方化時代에 구행정 체계도 시민편의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區政에 관한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 수렴하고 지역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95. 10. 21부터 가동된 청소·교통 등 10개 분야에 대한 구정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은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 질서있고 깨끗한 西大門區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동처리반 활동사항을 지역신문 및 반화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시 민 봉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문서고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창고와 문화체육회관에 분산설치되어 공부열람 등 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서고에 대하여 구청 6층에 보관 및 관리가 편리한 종합문서고를 이동식으로 현대화하여 23,238권의 문서를 능률적으로 집중 管理하고 있으며 - 95. 2. 25부터 95. 5월까지 95일간 1,200권의 문서표지를 재편집하고, 16,000권에 대한 보존기간별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23,000권의 文書를 실·과별, 보존기간별, 기능별로 재정비하여 누구나 모든 문서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특히 文書管理擔當者는 종합문서고 설치의 제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모든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거동불편환자 방문간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低所得市民中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방문간호사업을 봉사행정 차원에서 관계직원 모두가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한 결과 연 177회 1,698명을 진료하여 區民健康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음. 	
남 가 짜 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처리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간담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민과 미화원, 동장이 합동으로 월4회 定期懇談會를 운영하여 규격봉투 사용외 잔여쓰레기 청소문제 해결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주민과 관이 협력하여 쓰레기 처리 근본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西大門區 住居環境이 항상 깨끗하고 질서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동에 적극 권장 장려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및 인쇄소 등록 변경 사항 지연처리 ■ 문화강좌 개설에 따른 운영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및 인쇄소 등록·변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접수와 동시에 登録臺帳을 즉시 정리하여 기록사항을 정확히 유지관리해야 할 것임. □ 강좌 과목을 대폭 증설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文化講座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문보고제 이행실적 저조 ■ 다중이용시설물 인·허가 자체감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견문보고제가 직원들의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細部推進計劃을 재수립 시행토록하고 이에 대한 실천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견문보고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多衆利用施設物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요구되는 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시 민 봉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민원실 개설 운영실태 ■ 우편민원 접수처리 실태 ■ 건축물 철거명실 확인서 처리 ■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 ■ 구정정보센터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移動民願室은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 제도로 평가되나 95년도 운영실적이 3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시민홍보등 운영방법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등에 확대설치운영하고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등 적극적인 市民弘報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외지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운영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민홍보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洞事務所에서 건축물 말소처리시 첨부되는 '건축물 멸실확인서'에 관할동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區行政이 불신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홍제동 361-52 최순덕 외 3건(95.10.19) □ 유기한 민원처리 대장정리가 미흡하므로 처리절차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해당 실·과의 철저한 통제와 독촉 등으로 유기한 민원이 기한내 處理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구정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민원실, 휴게실 등에 양서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내방 민원인이 區政情報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개발(자동민원 영상홍보)운영하고 책자 등으로 적극 홍보토록 해야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상가 청사활용 예산미집행사항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및 예산의 확보 ■ 일선공무원 사기진작 ■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영선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상가 8동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소유이므로 區豫算으로 편성된 95년도 건물보수예산 840,000천원은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建物補修에 대한 豫算의 編成 및 執行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1,430명보다 4명이나 총원된 1,434명으로 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정원조례 개정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議會로부터 承認을 받은 후 절차에 의거하여 施行하여야 할 것임. □ 근무여건이 열악한 일선동직원 및 민원부서 근무직원등에 관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선진시찰 및 해외연수 등을 우선 배려해야 할 것이며, 문제직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및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동료애와 공직에 관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專門性を 요구하는 장기근속자에게는 승급등 인사우대를 제도화하고 장기근속을 기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인사고충 상담등을 실시하여 인사문제를 가능한 民主的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구청 청사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므로 영선사무 능력이 있는 건축직 등을 배치하여 완벽한 보수공사와 철저한 竣工檢査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기 획 예 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사유 ■ 주요사업추진심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豫備費는 특별한 사유와 수해, 재난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95년도 예비비 996백만원 중 625백만원의 지출결정은 예비비 편성 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豫算執行은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事業運營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95년도 主要事業 推進實績은 완료 33, 정상추진 86, 부진 5, 사업변경 3건으로써,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원 1인에게 각종 主要事業을 심도있게 분석,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업경영기법에 의한 수준 높은 審査分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흥제천 우안도로 공사등은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말고 조속히 준공되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국민운동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내실운영 ■ 새마을 아동도서관 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選自治時代に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사업을 다양하게 계발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이동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량도서를 선정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출기간 및 시간을 각각 14일에서 10일,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고 대출장소는 이용자가 많은 장소로 재조정하여 지역신문 및 반사회보 등을 통한 弘報活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생활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운영 ■ 구민걷기대회 추진 예산효율적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活體育施設物을 지역여건과 형평을 고려하여 각 동에 고루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되는 시설물 선택 등은 동호인 및 동장 등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구민 걷기대회 참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념배지 증정 등 豫算을 유효 적절하게 執行하여야 할 것임.
민방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시설물관리 실태 ■ 민방위교육훈련 참여 여부 정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피시설 및 공동정호 施設物을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현자 확인 순찰을 強化해야 할 것임.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교육종료 즉시 정확하게 정리하여 참가자와 불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臺帳管理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 民防衛課는 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담당하는 중요부서이므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운영실태 ■ 정수물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폐기처분 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불용물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임. □ 財物調査時 조사자가 불분명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區財産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소방기구에 대한 정수물품 책정 등 管理에 철저를 기할 것.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공사 계약사항 ■ 세대문구 세입·세출 예금구금고운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사계약 업무처리는 문서목록비치, 물품구매 심사위원회 개최, 품목별 금액조정 심의등을 하도록 할 것이며, 주관과의 물품매입 요구서대로만 購買할 것이 아니라 자체검증을 철저히 이행하여 豫算이 낭비되거나 契約書類에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임. □ 세대문구 850여억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금 구금고 관리는 地方財政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의 계약체결한 공고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한 금고업무에 관한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
세 무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추적조치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納稅者의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여 체납자 추적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다음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사항을 재확인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제동 105-115 김영길 - 홍제동 165-2 김정애 - 홍제동 93-2 송백식 - 연화동 132-23 임운위 - 홍은동 107-2 이후정 (94 정기분 및 수시분 : 면허세) □ '95년도 정기분 免許稅 94,323건중 11,610건이 체납되어 있으나 95.7월중 7개부서에만 소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滯納金 징수가 부진한 실정으므로 관계부서와의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금을 납부할 때까지 독촉장을 계속 고지하도록 할 것.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도 창고와 일반 업무용 창고 통합 사용문제 ■ 지가조사지역별 세분 및 정밀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대장 및 지적도 보관관리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용 창고와 통합사용하여 보안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一般業務창고를 분리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 지가를 지역별로 포괄적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 좀더 세분하여 정밀한 地價調査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보 건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품구매회계업무 ■ 95 방역계획 과년도 답습 수립 시행 ■ 비상방역 근무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염백신 구입 회계서류상 경리관 결재누락 및 지출결 의서와 지출부 등재일시가 각각 상이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 할 것. □ 95년도 防疫計劃 樹立이 94년도와 거의 동일한 답습적 인 계획이므로 앞으로는 현실에 적합한 창의적인 계획 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健康 增進에 기여토록 할 것. □ 비상근무요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위치에 근무하도 록 하고, 비상근무 연동 등 근무일지를 철저히 정리할 것이며, 관리자는 일일결재의 확행과 각별한 관심을 갖 고 근무해야 할 것임.
보 건 지 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 출생 축하 엽서 시행 사항 ■ 보건소 진료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母子保健 출생 축하엽서 시행계획을 2500매로 하였으나 95. 1~9. 10월간 5,600여명이나 출생된 것을 보면 아직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각동 에서 통보되는 출생신고 현황을 제대로 수합해야 할 것 이며,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요구됨. □ 保健所 診療利用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일부 노인 및 임 산부는 많이 있는 편이나 일반인 이용이 거의 없는 편 이므로 일반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 시해야 할 것임.
천 연 동 (각 동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승차권 현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老人乘車券 지급을 96년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제 도개선되는 경우에는 受領對象者 거래은행에 온라인으 로 지급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야 할 것임.
북 아 현 3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 관리사항 ■ 동소규모 사업추진 ■ 재물조사 및 물품 관리 실태 ■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정비 ■ 민원실 민원편의 시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公文書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색인목록, 편철 등 과년도 문서의 철저한 정비가 요망되고, 문서수발 인 계·인수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洞行政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사 업비는 정확하게 산출, 배정요구하고 예산은 關係規定 에 따라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물품별 내구연한 표시와 관리 責任者를 지정하고 물 품 훼손을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임. □ 無許可建物 관리대장이 노후되어 문자식별이 어려운 실 정이므로 조속히 정비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민원실 모든 비품을 조화있게 재배치하고 民願人 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창 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실 환경정비 ■ 보안등 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조명기구 교체 및 대기실 도서를 다양하게 구비하여 民願人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할 것. □ 保安燈 補修費로 264개소에 5,433천원의 豫算을 집행한 것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유흥업소, 숙박업소등 고의적인 고장 사례 및 관심부족 사항을 적극 是正해야 할 것임.
연 회 3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할아버지 활동 경비 지급 ■ 무허가건물 정비 ■ 유관단체관리 실태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관리실태 ■ 95년도 재활용품 관리 기금 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할아버지 활동비는 財務會計 規定에 의하여 철저히 지급 정상토록 할것. □ 無許可建物 정비시에는 민원소지가 없도록 전·후 사진 등을 촬영비치하고 관련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각동에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등 유관단체는 담당자는 물론 직원이 항상 연락 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임.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채납액 18건 9,114,020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징수토록 해야 할 것임. □ 관리기금 지출시에는 財務會計規定을 철저히 준수하여 내부품의서 및 청구인 서명날인, 영수증 간인등을 빠짐 없이 확인 처리토록 할 것.
홍 은 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물품 관리실태 ■ 취로인부 관계공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에 사용되는 비품 및 소화기 등은 비치장소 표시와 비상경보기 기동등 安全管理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취로인부 노임지급 및 관계장부는 關係規定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임.
남 가 좌 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안전관리소방 계획 운영실태 ■ 물품관리실태 ■ 소규모사업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 실화, 방화등에 대한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行政財産 정수물품 관리에는 종합 관리대장을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되므로 재산관리소홀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즉시 시정할 것. □ 소규모 사업추진 關係書類는 시행계획에서부터 會計書類까지 철저히 편철 정비하여야 할 것임.
기 타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차장 폐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은3동 현대주유소 세차장은 폐수를 關係規定에 따라 방류하지 않기 때문에 하천오염이 심각한 실태에 있으므로 指導, 監督을 철저히하여 즉시 是正토록 해야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통(용기)외부 공지에 방치 ■ 가스누설탐지기 작동 상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동 '영천가스'업소는 가스통(용기)을 외부에 방치하여 주민에게 불안과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가스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指導, 監督을 철저히 할 것. □ 가스냄새가 나고 있으나 탐지기가 작동되지 않아 安全管理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가스누설이 없도록 종업원 교육 및 용기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건의 사항〉

부 서 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비 고
<p>문 화 공 보 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선 및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方自治時代に 문화공보기능이 확산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하여 이를 수행해야할 직원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 문화공보실을 분과하여 公報課를 신설하는 방안과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여 나날이 증가되는 대민홍보(공보)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됨. ■ 문화체육회관 마을버스 운행노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體育會館은 서대문문화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용주민의 大衆交通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신설하거나 일부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람. ■ 문화강좌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住民들의 생활문화를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의 지적성장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고 있는 20개 강좌 37개반에 대하여는 지속운영토록 하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문화강좌반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文化自治區의 기틀을 다지기 바람. 	
<p>감 사 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전문직(토목, 건축)보강 및 기술전담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등으로 大型建築物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대부분의 민원이 토목, 건축공사와 관련 되어 있어 이를 감당해야 할 業務量이 폭증하고 있는 반면 토목직 1인으로는 부실공사 등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과 민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 技術專門(土木, 建築)人力을 보강하거나 기술전담반(계)을 신설토록하여 시민생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부 서 명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民生活 불편사항과 환경저해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찰반이 職制改編에 의하여 인력이 감소되어 막중한 순찰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 14개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등 각종 不便事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순찰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됨. 	
시 민 봉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정리 일용인부 보수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적 및 건축민원 발급을 보조하는 공부정리 일용인부 1일 보수액이 상용직보수 18,000원보다 낮게 책정된 15,300원에 불과하여 사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 이를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여 公簿整理 補助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 및 친절봉사를 하도록 하기 바람. ■ 시민봉사실 근무 가점제 폐지에 따른 사기진작 대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련 制度改善에 의하여 96년도까지 실시해 오던 근무 가점제를 9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 시민봉사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직원사기진작 대책은 물론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됨. ■ 민원 근무수당 현실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근무수당 월 20,000원은 15년전에 규정되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제반 經濟事情등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금액이므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친절봉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民願手當을 현실에 적절한 금액으로 인상지급하여야 할 것임.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동장 근무의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別定職 洞長이 임기만료일까지 동민과 시민을 위하여 공직윤리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적 여건조성과 육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심있는 배려가 요망되며 - 각동에서는 洞長을 구심점으로 당면 현안문제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自治區時代에 보다 살기좋은 우리고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 복지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 幹部등이 형식적인 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소극적 福祉行政 분위기에서 이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하수, 건설공사현장,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장 확인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自治時代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부 서 명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격주근무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환경변화와 自治區 時代に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기업경영기법인 토요일 1/2 격주전일근무제를 민원부서에 한하여 시범운영하여 토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의욕 재충전과 능력을 開發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p>기 획 예 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7. 1 地方自治法 施行令 改正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의 사전 심사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 區議會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등에 대하여도 심의한 후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議會와 區廳간의 마찰과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행정의 낭비적 요소등 議會機能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 區議會의 심의의결을 거친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구조례 규칙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p>지 적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관리과와 지적과 통폐합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반면 인력은 보장하지 아니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業務遂行에 적절한 인력을 보강토록하여 住民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 	
<p>의 약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낡은 의료기기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이 떨어지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오진할 우려가 있는 낡은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검증하여 반납조치하고 現代化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여 區民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교체대상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막기 5대 : 1986. 7. 7 구입 · 간기능 검사기 1대 : 1982. 12. 15 구입 · 엑스레이카메라 3대 : 1989. 12. 30 구입 · 분광광도계 1대 : 1990. 11. 29 구입 	
<p>남 가 좌 2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부지매입예산 감정가액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廳舍 부지매입비 960,000천원은 감정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시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적정예산 編成이 요구됨. 	

라. 模範 및 優秀公務員 推薦

- 종합문서고정비 관리 우수공무원
 - 소 속 : 시민봉사실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김길록
 - 공적사항 : 우수 및 장려사항 중 '종합문서고 정비' 내용 참고
- 세무행정분야 우수공무원
 - 소 속 : 세무관리과
 - 직 위 : 세입총괄계장
 - 성 명 : 이대순
 - 공적사항 : 세무관련 공부 관리상태가 우수하고 94. 12. 20 ~ 95. 5월까지 등록세등 26만건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세무비리와 연계된 세무행정을 명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서대문구 세정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4. 市民建設委員會

가. 監査期間 : '95. 11. 27 ~ 12. 2 (6일간)

나. 監査對象 :

- 市民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都市整備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 建設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사무중 1995년도에 처리된 업무

다. 監査結果

〈우수 및 장려사항〉

부 서 명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의 소리 적극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가좌2동 연흥교회앞 사거리 각각지점의 50번 시내버스 회차지점은 소음공해 및 교통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地域住民으로부터 회차지점 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었으나 - 95년 12월에는 '50번 시내버스 회차지점'이 주민의 뜻대로 변경 시행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서대문구 公務員이 과거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제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주민의 소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모든 民願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례임. (구행정이 發展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파악하여 民願을 민주적으로 해결함에 있다고 할 것임) 	
교 통 지 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주차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不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잉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원성과 區行政의 불신이 팽배하여 왔으나 - 95. 1. 3부터는 각 室·課·洞 주차단속 실적 평가제를 폐지하고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단속차량에 대한 사전호각예고제등 주차단속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住民과의 불필요한 마찰 및 民願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서대문 구정이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음.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민·관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건 설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업무 성실수행으로 지역주민의 구행정 신뢰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영천동 66-16 임화택외 2인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95. 4. 1부터 95. 8. 4까지 6회 시행 및 14회에 달하는 면담, 협의를 통하여 그중 1명을 제외하고 23인 모두 적법하게 契約을 체결하도록 하여 區行政事務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이 區行政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지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음공해 민원 적극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지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음공해 및 각종 토사로 인한 홍은3동 인접주민 150여명의 集團民願에 대하여 차량통행로 확보 및 분진방지 세류시설 설치 등, 95 집중호우에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유도시설을 설치하여 安全事故 예방에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反映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등 집단민원을 民主的인 방법과 民選自治時代에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사 회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보호 및 생계지원 ■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 ■ 치료사업비 동결배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당사자가 이를 기피하는 등 豫算을 효율적으로 運營하지 못하는 비난이 있으므로 생활비나 학자금 지원보다는 불치의 장기 환자를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支援을 해야 할 것임. □ 會議를 소집하여 직업소개소 자격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직원이 방문하여 서명 審議를 하면서 委員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각동의 치료희망자 자격심의를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기타 저소득 시민의 순에 따라 희망자를 策定하여야 함에도 희망자를 무원칙적으로 선별하여 저소득 시민의 연간 1인 평균 180일간의 치료사업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있으며, 각 동별로 130일로부터 200일 이상 불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선발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 및 低所得 市民에 대한 실질적 생계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알뜰시장 운영 ■ 여성단체활동비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運營되고 있는 시민알뜰 시장은 상품의 효용가치 및 인력 투입면에서 비효과적으로 分析되고 있으므로 농수산물 직거래시장과 연계, 알뜰시장을 종합적으로 運營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시민알뜰시장이 효율적으로 運營될 것임. □ 여성단체 연합회 등 2개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하는 豫算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하여 月別 또는 分期別로 執行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연말(12월)이 되어서야 격려품 구입비등으로 일괄 집행하는 것은 여성단체 豫算支援을 소극적으로 運營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칙에 입각해서 運營하도록 해야 할 것임.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유아원선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범유아원을 選定, 運營方法, 目的, 設立 趣旨등을 형평성 있게 파급시킴은 물론 철저한 指導·監督으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산 업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시장 및 물가 유급 모니터요원 운영 ■ 도시가스배관공사 부실시공 ■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 가스판매업소 지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시장 및 물가유급모니터 運營등의 豫상이 무계획적으로 성급하게 編成되는 바람에 豫산을 아직까지 執行하지 못하고 行政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運營계획을 철저하게 樹立하여 編成된 豫算이 효울적으로 執行되도록 해야 할 것임. □ '94 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도시가스배관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監督의 한계성을 이유로 명예감독관 위촉, 검사장비(심도측정용 막대자, 줄자)만을 동사무소에 지급하여 놓고 사후관리 소홀로 부실공사가 進行되고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으므로 기용인원을 동원하여서라도 완벽시공을 하도록 철저히 監督하여 시민생활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남기좌동 115-7 및 관내 전지역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를 시설기준에 따라 1M이상 매설하고 관을 중심으로 30cm이상의 모래를 깔아야 함에도 지표에서 73cm 정도 매설 및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배관 주위에는 돌, 자갈, 건축폐자재등이 발견되는 등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이 가스폭발 안전사고로부터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사당시 監督 관계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스안전 정밀진단을 실시, 완벽하게 補修함으로써 부실공사 의문을 해소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시민의 생활환경 安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일반 석유판매업자는 한국석유 일반판매업소협회의 공인 배달용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실제 18%의 용기가 20% 용기로 운반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우리 團는 30개소의 LP가스판매소가 있으나 상품을 적·하차 하면서 노면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무판을 깔고 하차하여야 함에도 人道上에 무차별 하차로 市民通行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폭발의 위험까지 증폭되고 있음에도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團束을 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판매업소는 허가조건 및 관계규정에 따라 運營해야 함에도 대다수 판매업소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 계량기 사용, 환풍시설, 도로상 가스통 적치, 가스통 保管창고 등에 대하여 철저한 指導·監督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 시민생활 안전에 도모해야 할 것임 (홍은3동 정원여중 입구 가스판매소는 창고가 협소하여 도로상 철책에 묶어 방치하고 있음)
<p>환 경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동에 의한 소음 공해 측정 ■ 세차장 폐수처리 사항 ■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效果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진동 측정기를 구입, 적기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은 즉시 解消해야 할 것임. □ 세차장에서 폐수를 관계규정에 맞도록 처리해야 하나 이의 規定을 무시하고 폐수를 방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폐수방류에 의한 환경의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임. □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징수독려를 철저히 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p>청 소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지급 ■ 김포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 수거는 전담미화원과 협조미화원 243명에게 74,651천원을 지급하고, 취로사업자 57명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판매대금은 衡平에 맞도록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감사자료 등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장부와 일치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대행업체 계약은 정확하게 체결해야 할 것이며, 서울환경 및 서부환경업체에 95.1.1부터 95.10.31까지 지급한 처리비용 254,046,695원에 대하여는 合理的으로 개선하여 지급하고, 運營하여야 할 것임.
<p>주 택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特別市長 지시사항에 의하여 시민아파트관리카드를 철저히 記錄·管理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순찰을 확행하여 제2의 대형 참사를 미연에 防止하도록 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시민아파트 보수 및 관리예산 집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화 시민아파트는 대부분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여 많은 民願이 야기되고 있는 바,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미관을 고려 추가예산 5억원을 형평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도색을 하지 아니한 12개동을 포함 관내 시민아파트에 대하여는 민영아파트 수준으로 도색을 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을 造成하도록 해야 할 것임.
도 시 정 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요망 ■ 불법 벽보침지류 제거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은3동 201-3 및 204-31 도로의 폭은 12M로 되어 있으나, 192번지 ~ 204번지에 이르는 약 200M의 도로폭은 10M로 되어 있어 주민이용 및 폭증하는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상가지역의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宿願을 해결토록 요청함. (하수과 95.10.30 집단민원 참조) □ 불법 벽보침지류 제거에 취로인부를 동원 10개월간 79,322천원의 많은 豫算을 투입한 성과에 비하여 그 효과면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불법 벽보침지 업자를 추적, 의법조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豫算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운행실태 및 불법정비, 무단주차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을 설치 ■ 자동차등록대행업자 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는 주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정비불량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없도록 指導·監督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답동 등 일부업체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박차하지 않고 노상에 박차하여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95.12.31 마을버스 허가갱신시 차고지 인가사항을 확실하게 하여 불법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指導·監督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무악재 외곽방향은 도로경사가 완만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 교통사고를 미연에 防止해야 할 것임. □ 총일사, 오복사 등 자동차등록 업체에서 등록을 하려온 차주에게 억압적인 자세로 1건당 7,000원 ~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자동차 영업소에서 자동차 登錄을 직접 대행토록 하고, 指導·監督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교 통 행 정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및 예고표지 규격준수 여부 ■ 주차장 특별회계예산 적립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로 2방향 지시표시 文案과 예고표지 문안이 불일치 하며, 세림간호병원앞 교차로상 예고표지와 지시표지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고 방향 지시표지 문안과 불일치하며, 홍제국민학교 방향교차로 안내 문안에 연신내 방향 좌회전 금지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재검토 시정해야 할 것임. □ 적립금 4,119,567천원과 시설비 101,530천원 등 약 42억원 중 부지매입 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을 推進했어야 함에도 95. 12 현재까지 이를 執行하지 않고 연리 9%, 1년만기 정기예치하고 있는 것은 業務를 소극적으로 推進한 결과이므로 교통문제(주차난)해결을 위한 사업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 施行하여야 할 것임.
<p>건 축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허가 건물 적법 시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소재지 건축물은 적법하게 施工되었는지를 재점검하여 불성실한 監理를 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법조치하고 적법시공 指導· 監督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연희동 34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 유명 - 점검사항 : 장독대 무단설치여부 □ 연희동 28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 김준석 - 점검사항 : 1층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지층 노출 여부 □ 북아현동 17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 정희민 - 점검사항 : 2·3층 면적증가 및 남측도로 사선저축 여부 □ 남가좌동 237-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 구재택 - 점검사항 : 옥외주차 및 대문기둥 적법 설치여부
<p>건 설 관 리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민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손실보상과 관련된 民願 244건 중 대부분 관계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처리되었으나 북가좌동 136-31 잔여지 확대수용 거부는 피수용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고 지역 여건상 피수용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再考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거부지 체납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자 12명 21,829천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제반수단을 다하여 奮勵를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므로 10년 이상 연체된 6명 17,749천원에 대하여는 關係規定에 의거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이행하여 납세의식 고취 및 구세증대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궁전갈비(충정로 146)외 164건 총 76,187,390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등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별다른 성과가 없으므로 押留豫告章을 독촉고지서와 동시에 送達하여 시세입증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行政措置가 요구됨.
공 원 녹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제 제30어린이 공원 ■ 홍제사 뒷계곡정비 ■ 구청사 조경보완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事項을 즉시 更正 또는 豫算이 수반되는 사업은 '96 상반기중 조기에 整備하여 어린이 및 유아교육현장을 항시 철저히 管理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받이 및 하수구 정비 - 전면 화단폭 축소 및 유실수 식수 - 공원후면 훼손 뒤틀린 개나리등 꽃나무 식재 □ 현재 공사한 부분 1개소는 0.5m를 높이고 집수정 및 철망(1m)을 설치하고 계곡집수정 및 보를 3개소 설치하여 산사태를 미연에 防止하고 자연녹지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95. 3. 10 ~ '95. 4. 7 區廳舍 조경보완을 위한 소나무외 9종 219주중 연산홍 12주 하자 發生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97. 4. 10)중인 '96년도 上半期中에 보수 완료토록 해야 할 것임.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사 증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10. 11 착공하여 '94. 11. 4 준공한 區廳舍 増築工事中 4층 바닥 슬라브 배관공사 및 가설사무소 콘테이너박스에 대하여는 재정밀 檢査를 실시하여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補修하도록 해야 할 것임.
국민운동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용자 장기상환 등 制度 및 管理上 허점으로 인하여 전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支援金이 정상 상환되지 아니하므로 선량한 보증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용자상환기간을 短縮하도록 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천 연 동 창 천 동 홍 제 3 동 남 가 좌 1 동</p>	<p>■ 건축 증·개축신고 수리 및 준공허가 처리</p>	<p>□ 建築法 施行規則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 신고시에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및 단면도를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고 形式的으로 작성 제출하여 건축물 시공시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건축담당직원은 시공기간중 指導點檢도 하지 않고 준공 시점에 와서야 철거 중용 또는 고발등으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음은 담당직원이 소극적인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는 실예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함.</p>
<p>홍 제 3 동</p>	<p>■ 주택가 뒷골목 쓰레기 수거대책</p>	<p>□ 대행업체에서 收去하고 있는 지역의 규격봉투사용외 잔여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 저해요인에 의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자체 특별대책을 樹立하여 적어도 주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시민생활환경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임.</p>
<p>감 사 실</p>	<p>■ 공무원의 기강확립 촉구</p>	<p>□ 1995.11. 27 ~ 12. 2까지 실시한 行政事務監査에서 자료 제출의 지연이나 제출된 자료의 불확실성등은 公務員의 정신적 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는 사고의 전환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때만이 自治時代에 부응하는 公務員像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公務員의 紀綱確立을 促求하는 바임.</p>

〈건의 사항〉

부 서 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비 고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교통수당 지급 방법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商業銀行에 계좌를 開設하고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分期別 12,240원을 받기 위하여 商業銀行까지 노인이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대부분의 노인이 눈이 어둡고 문맹자까지 있어서 대필을 요하는 실정인 바 동 사무소에 일괄 전도하여 사회복지 담당이 찾아서 통장 또는 직접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각종 공사의 감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廳에서 집행하고 있는 幼兒院 및 노인정 增·改築 工事 시 공에 많은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책임성 있는 명예감독관(유아원장, 노인회장)을 위촉하여 공사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주기 바람.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사업지구내 세입자 보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불량주택 再建築事業 地區內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거 의가 영세서민임에도 再開發事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와는 달리 법적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 세입자 보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再建築 事業地區內 영세세입자를 보호 하여 주기 바람.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순환 버스운행으로 대중교통체계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좌지역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하철 2호선(홍대앞)과 연계 가능한 지역순환(거 북골길 경유)버스를 도입, 運行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연계운 행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대중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에 대한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배수설비 설치시공자는 區廳에서 지정된 특정업체에 한정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지정 업체는 특혜를 받는다는 의문이 있으므로 - 西大門區 모든 설비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지 침을 개선하여 시공자를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계약할 수 있 도록 하고 지정업체 특혜시비를 해소하여 동일업체간 참여기 회보장 및 衡平性을 유지하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부 서 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비 고
총 무 과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서 민원처리 전담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상급기관(서울특별시, 감사원, 정부합동민원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부터 이첩, 처리되고 있는 진정서를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 處理하도록 하는 것은 陳情書가 소극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처리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陳情書가 사실대로 적극 處理되도록 함으로써 自治區 時代に 부응하는 주민의 권익보호 행정여건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자체운영식당 운영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자체운영식당 보조예산 부족 등 식당시설이 빈약하여 活用을 못하는 동이 있으므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洞職員의 후생복지를 감안하여 洞事務所 식당이 내실있게 運營될 수 있도록 적정 豫算이 支援되어야 할 것임. 	
총 무 과 (홍 제 3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하자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洞廳舍 하자발생 부문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하자 보수 기간내에 즉시 補修하거나 동청사 보수예산을 支援해서라도 완벽하게 補修하도록 하여 공공청사 부실시공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동 사 무 소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건설(건축)담당자 건축직으로 업무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건축허가 신고 수리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건축설계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技術專擔公務員을 각동사무소 건설(건축)담당으로 지정하여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주기 바람. 	

Ⅲ. 民願處理

- 請願은 住民이 地方議會에 일정한 意見 또는 希望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住民의 權利 또는 利益이 侵害되었다고 할 때 구제를 호소하는 하나의 住民權利이다.

請願은 議員 紹介가 있어야 하며,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審議, 議決 대상이 된다.

- 陳情은 住民의 權利와 利益이 侵害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줄 것을 要請한다든가, 또는 建議나 希望을 표시하기 위하여 地方議會에 提出하는 것을 말한다.

陳情書는 地方議員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提出하는 것으로서 議會의 議決을 요하는 案件은 아니다.

1. 現 況

총 계	청 원				진 정 서			
	소 계	처 리	미처리	철회	소 계	처 리	미처리	반 려
8	3	2	1	.	5	5	.	.

2. 請願處理

□ 公園용지 해제 청원

1) 본 공원용지 해제청원은 '95. 3. 8 현저동 산 1-132, 김태영외 222인이 이봉수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임.

2) 청원 심사결과

가) 청원 설명의 요지

(청원설명자 : 이봉수의원)

- 西大門區 峴底洞 산5번지 일대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지역으로 대지를 불하받지 못한 채 國有財産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100분의 120에 의거 200~600만원을 부과한 금액을 변상할 수 없는 대다수가 영세민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 또한 이 지역은 1978년 12월 28일 建設部 고시 제418호로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대지불하는 물론 노후된 건물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再建築을 할 수 없어 주민의 주거생활이 불안한 상태에 직면해 있고,
- 현재는 사실상의 주거지역으로 公園用地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로 公園用地를 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영세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달라는 請願임.

나) 검토보고 요지서

- 본 請願 대상지역은 현저동 산5번지 일대지역으로 1978년 12월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안산 자연공원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 또한 본지역은 1968년 무허가 건물 양성화 지역으로 대부분 국유지로 構成되어 있으며 재개발 지역으로 指定하여 줄 것을 진정한 바도 있습니다.
- 관련 法規의 내용으로 볼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은 도시계획구역울 관장하는 시장이 20년 단위로 동계획을 수립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 동법 제4항에 시장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동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동계획에 反映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請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지역은 주위환경이나 주변여건으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 西大門區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주민의 주거생활 침해 등의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공원용지를 해제, 住民이 안심하고 안락한 生活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질의와 답변 : 없음

라)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김태영외 222인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3) 의결결과

공원용지 해제청원은 1995년 3월 30일 제31회 臨時會 제4차 本會議에서 원안가결되어, 동년 3월 30일 상기 請願에 대한 의견서를 西大門區廳에 送付함.

<위원회 의견서>

본 請願은 '95년 3월 8일 서대문구 현저동 산 1-132 김태영외 222인으로부터 提出된 案件으로

- 현저동 산5번지 일대는 1968년부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고 1978년에는 건설부고시 제418호로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선이 곡선으로 불합리하게 決定 告示되어 있어 대지를 불하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國有財産法 제51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가구당 200~600만원씩 부과되어 있으나 대다수 영세주민으로서 변상금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 또한 대부분의 가옥이 낡고 노후한 붕괴 위험이 있는 실정이라도 再建築을 할 수 없어 주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 현재는 사실상의 주거지역으로 공원용지로는 활용될 수 없는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제반지역 여건등을 감안하여 공원용지를 해제함으로써 영세주민의 내집마련의 기틀을 마련하여 달라는 請願으로

본건은 區廳長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反映되도록 推進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組合아파트 新築工事に 따른 피해주택 확인 및 특별대책 요청

1) 본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주택 확인 및 특별대책 요청의 請願은 '95. 8. 7 哄은 2동 8-72, 박상윤이 박덕균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임.

2) 청원 심사결과

가) 청원 설명의 요지

(청원설명자 : 박덕균의원)

- '93. 11월 서대문구 홍은동 연합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인접되어 있는 홍은2동 8-72 주택 건물('90.12 준공)이 각종 구조물마다 균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發生된 것은 組合아파트 新築工事 시행중 토목공사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그 대책을 요구한 진정에 대하여 공인기관(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건물 安全診斷 결과, 건물의 균열 원인은 굴착작업시 지반교란 및 진동등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衝擊에 의한 영향으로 밝혀졌으나, 당시 시공회사인 일주공영(주)관계자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94. 4월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 '94. 10월경 다른 건설회사가 공사를 재개하여 '95. 3월부터는 발파 및 뿌레카작업등 암반 제거 공사로 소음·분진은 물론 주택의 균열이 커지는 등 가옥이 다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 관계기관과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건설(주)에 가옥의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줄 것을 누차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토목공사를 強行하고 있는 바,
- 請願人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삼풍백화점 건물붕괴 이후, 더욱 불안한 生活이 가중되고 가옥의 안전유지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또다른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옥의 피해실태확인 및 공사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要請하는 請願임.

나) 검토보고 요지서

본 請願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다시 한번 民願을 중재하여 民願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史料됨.

다) 질의와 답변 : 생략

라)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

請願審査중 이해 관계자(청원인, 피청원인)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西大門區議會 請願 審査規則 제9조 1호의 規定에 따라 請願의 목적이 達成되었으므로 本請願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재석의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3. 陳情處理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번호	월 일		주 소	성 명	
1	'95. 7. 19	낙석방지 공사요구	홍재1동 산39번지 18호	주용덕외 14인	'94년 발생당시 安全診斷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설치 및 미설치부분은 '96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措置할 計劃임.
2	'95. 7. 19	임대아파트 입주요구	홍은동 71번지 451호	오 현 자	재개발 임대주택 책정대상자는 당해구역안에 3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여야 하나 진정인은 法的으로 동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자격이 없는 자 임.
3	'95. 9. 2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조례제정 을 위한 건의	현저동 산5-5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노인기금조성은 예산이 隨件되어야 하므로 기획예산과 豫算係에 의뢰하였고, 운영조례제정의 법적타당을 법제계에 검토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제반절차를 履行코자 함.
4	'95. 9. 4	서대문구 연 희동 151-1 일 대 도로신설 을 위한 진정	연희동 157	박 용 석	연희동 163-151간 폭 6m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95년부터 연차적으로 進行中이며 일부구간(163번지)부터 보상을 推進中에 있음.
5	'95. 12. 15	서대문구 홍 은3동 192-204 일대, 도로확 장요청	홍은3동 196-6	이기선의외 425	하수 58450-1396('95. 11. 4)호로 기처리된 내용임. 동지역의 도로폭의 확장요청은 都市基本計劃과 관련 도로확장의 필요성 검토등 여러측면을 檢討하여 고려하겠음.

IV. 研修 및 세미나

1. 議員研修 및 세미나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참석인원
'95. 9. 14 ~ 9. 16	제주도 썬비취호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	부만근교수 (제주대 법정대학장)	26명
'95. 11. 7	서대문구 의회의사당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	이원희박사 (국회 입법조사연구원)	29명
'95. 10. 16 ~ 10. 17	장흥 에버그린 호텔	시민건설위원회 세미나 및 청소 시설 시찰	.	13명
'95. 10.18	아산만 김포 쓰레기매립장	총무위원회 세미나 및 청소시설 시찰	.	13명

2. 海外研修

방문기간	방 문 국 가	연 수 목 적	연 수 인 원	소요예산
'95. 2. 12 ~ 2. 23	호주, 뉴질랜드	환경보호,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각 주정부의 장기도시계획 청취	12 명	25,000천원

부 록



- 서대문구청 기구표 / 225
- 서대문구청 사무분장표 / 227
- 서대문구의회, 구청 전화번호 / 251
 - 생활민원 전화안내 / 254
- 각 구청 및 서울시 민원전화 / 255

구청 각과 사무분장표

실·과	계	분 장 사 무
문 화 공 보 실	공 보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국정, 시정 및 구정 홍보 3. 언론매체 홍보 및 유선방송 업무 관리 4. 사회단체등록 지도 및 반공단체 지원 계몽 5. 공고, 고시, 구보발간 및 모니터 운영 6.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 및 도서관리 7. 실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문 화 관 광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중무행정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인쇄소, 음반판매업소등록 및 지도감독 4. 문화재 보수, 유지 및 재산관리 5.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6.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 7. 서대문문화회관 운영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종합계획수립 8. 공연장 설치허가, 지도감독 및 공연자 등록신고 9. 구단위 관광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시 영 설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대문구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위탁관리업체의 지도감독 2.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등 시설의 대관, 전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대문구문화회관 예산, 회계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 구내식당, 매점, 이용실, 사진실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감 사 실	감 사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2. 구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3. 실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 사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2. 공직자 직무 감찰, 특명사항처리 및 징계요구 3.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보도사항(신문, TV, 라디오 등) 중 주요사항 조사처리 4.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이 지시하는 환경에 관한 조사

실·과	계	분 장 사 무
		6. 환경순찰(공공시설물, 가로환경, 무허가 및 옥상불량건물,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잡상인 등)
	민 관 원 리 원 계	1. 민원사항 종합처리 종합계획 수립 2. 진정서 접수 및 총괄 3. 민원인 여론 수렴 및 분석 4. 전화민원 접수 및 총괄 5. 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 6.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7.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 처리
시 민 봉 사 실	문 관 서 리 서 계	1. 보존문서 관리 2. 관인 관수 3. 구·동 민원 업무의 개편 차포 4. 민원안내, 민원대필 및 상담 5. 실내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 처 원 리 원 계	1. 진정서의 접수 처리 2. 민원서류의 접수 처리 3. 외국인 등록 4.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제증명 발급
	호 적 계	1. 호적 등·초본 발급 2. 호적부책 관리 3. 호적신고 및 편제 4. 호적신고사항 처리 5. 인구동태 6. 신원증명
총 무 과	총 무 계	1. 보안 및 청중 단속 2. 의식, 회의 및 직원 체위 향상 3. 자매결연 4. 차량관리 5.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6. 행정장비 관리 7. 예비군 구청 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8. 방위협의회 운영 및 공공단체 지도감독

실·과	계	분 장 사 무
		9. 청내 다른 국, 국내 다른 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 사 계	1. 공무원의 임용 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3. 구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4. 복무, 교육훈련 및 구소속 직원에 대한 상훈 5.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6. 보수, 승급, 연금, 의료보험 및 직원 후생 7. 공무원 신분관계 재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8. 직제에 관한 사항
	동 정 계	1. 동의 지도 감독 2. 명칭 및 위치의 변경 3.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 조직 및 운영 4.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모집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6. 취학 기타 학무 7. 행정서사 허가 및 지도감독 8. 주민등록 및 인감 9. 시민표창 10. 인장업 허가에 관한 사항 11. 반상회 운영 12. 동장임용 및 정년연장 협의 13. 동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협의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 15. 동행정 관련문서 및 회의통계 16. 동사무소 정원조정 17. 동소속 공무원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 18. 구 단위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19. 주민등록 전산자료관리 — 전산자료 대사 및 유지 —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 및 보안 관련업무 20.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처리 업무 지도감독 21. 주민등록 전산업무 관련 각종 상황 관리
의 회 협 력 계	1.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실·과	계	분 장 사 무
		2. 의회의결 및 재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3.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 4. 기타 의회 관련 지원·협력 업무
기 예 산 과 회 산 과	기 회 계	1. 구청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 통제 3. 구 시책과 기획 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 4.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예 산 계	1. 구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2.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3.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법 제 계	1.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3. 훈령, 고시, 공고 및 예규의 심사 4. 법규의 편찬 및 발간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전 산 통 계 계	1. 구청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2. 소속 기관의 전산화 추진 및 전산망 운영 지도 3.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전산망(전산장비, 통신회선,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5. 구·동 주민등록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설치 지원 6. 주민등록·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련 교육 7. 주민등록 전산관련 장비 구매 보급
사 회 진 흥 과	사 회 진 흥 계	1. 사회진흥운동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새마을협의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4. 새마을 시설물 관리 5. 우리서울가꾸기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6.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7.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8. 이동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

실·과	계	분 장 사 무
		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계도활동 업무 추진 11. 시민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12. 생활개혁 업무 추진 13.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활체육계	1. 여가생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 3. 사회체육 진흥·지원 및 협조 4.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5. 여가생활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6.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주관 7.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설관리계	1.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2. 체육시설업 현황관리 및 협의회 지도감독 3. 미성년자 정서위해업소설치 관계기관협의 4. 기타 체육시설업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5. 여가생활 관련시설(공원녹지와 관장시설제외)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6. 체육공원 관련시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7. 레크리에이션 관련시설(레크리에이션센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8.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 기타 여가생활 관련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
민 방 위 과	민방위계획계	1.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2.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관리 3. 전시운영계획 4.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교육훈련계	1.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2. 민방위의 날 훈련 3.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 화생방 방호 및 장비물자 운영 5. 민방위시설 지도감독
	병사계	1. 제1국민역 징병검사 자원관리

실·과	계	분 장 사 무
		2. 보충역, 소집자원 관리 3. 현역병 및 예비군편성, 전시근무 소집 4. 병력동원 훈련소집(육군, 타군)
	재난관리추진반	1. 재난관리 추진 업무
재 무 과	재 산 관 리 계	1. 국·공유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재산 수입의 수납 3. 행정재산의 총괄 4. 국내 다른 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계 약 계	1. 공사도급, 물품 구매계약 등 2. 조달물품구매 및 출입업자 등록 3.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 4. 물품관리 및 공사 물품 입회
	지 출 계	1.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 2.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3. 원천징수 불입 4. 직원 저축에 관한 사항 및 국채 소화 5. 회계 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세 무 과 관 리 과	세 입 총 괄 계	1. 구의 세입 총괄 및 수입보고서 작성보고 2. 세외수입 총괄 및 분석, 평가 지도감독 3. 세입목표 설정 및 분석 평가 4. 구세관련 자치 조례, 규칙관리 5. 시·구세 징수결의, 감액결의, 가산금 결의 6. 과오납처리(환불, 총당) 7. 과소관 서무 및 과내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징 수 1 계	1. 부과 1, 2계, 조사평가계 부과세목에 대한 징수 2. 부과 1, 2계, 조사평가계 부과세목에 대한 현·과년도 체납징수 및 압류, 징수 촉탁 3. 부과 1, 2계, 조사평가계 부과세목에 대한 수납소인 관리, 영수필통지서 관리 4. 과내 부동산 압류, 해제 촉탁 및 교부 청구 5.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

실·과	계	분 장 사 무
		6. 소관세목의 체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 및 징수 유예 7. 과내 체납 총괄 및 체납 전산 관리 8. 현년도 체납 정리 관련 총괄
	징 수 2 계	1. 부과 3, 4계 부과세목에 대한 징수 2. 부과 3, 4계 부과세목에 대한 현·과년도 체납징수 및 압류, 징수 촉탁 3. 부과 3, 4계 부과세목에 대한 수납소인 관리, 영수필통지서 관리 4. 자동차등록, 압류 및 해제 5. 소관세목의 체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 및 징수유예 6. 과년도 체납정리 관련 총괄
부 과 과	부 과 1 계	1. 계소관 동의 부동산 취득세·부동산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지역개발세·농지세 및 목적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 담당동 : 충정로, 천연, 현저, 북이현123, 대신, 창천, 연희123 2. 계소관 관련 세목의 총괄 및 세표작성 — 관련세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지역개발세 → 구세 3. 소관동의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 4.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 5. 소관세목의 이의신청, 송무수행 및 총괄 6.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 취소 변경 및 감면 7. 소관세목의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 8. 과세대장의 작성 및 관리 9. 과소관 사무 및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과 2 계	1. 계소관 동의 부동산 취득세·부동산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지역개발세·농지세 및 목적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 담당동 : 흥제1234, 흥은123, 남가좌12, 북가좌12 2. 계소관 관련 세목의 총괄 및 세표작성 — 관련세목 : 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 시세 3. 소관동의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 4.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 5. 소관세목의 이의신청 및 송무수행 6.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 취소 변경 및 감면 7. 소관세목의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 8. 과세대장의 작성 및 관리 9. 납세자 개인에 대한 등록세 고지서 발급

실·과	계	분 장 사 무
	부 과 3 계	1.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부과 고지 2.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 3.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 취소변경 및 감면 4. 소관세목의 이의신청, 송무수행 5. 소관세목에 관한 집계 및 세표작성 6. 소관세목에 관한 조세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7.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부 과 4 계	1.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2.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 3.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 취소변경 및 감면 4. 소관세목의 이의신청 및 송무수행 5. 소관세목에 관한 집계 및 세표작성 6. 소관세목에 관한 조세 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조 사 평 가 계	1.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2. 법인의 실사계획 및 집행 3. 법인의 이의신청 및 송무수행 4.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변경 및 감면 5.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및 시가 조사 6.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총괄 7. 과세대상 물건의 종별 지정 및 수정 8. 법인에 대한 등록세 고지서 발급
지 적 과	지 정 계	1. 지적제도운영 및 토지정책 업무총괄 2. 외국인 토지관리 3. 소유권 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 4.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5. 지적공부 관리 6. 대행법인 지도감독 7. 지적도 정비 8.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 9.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0.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토 지 관 리 계	1. 토지거래허가(신고)제 운영 2. 계약서 검인 업무

실·과	계	분 장 사 무
		3. 택지소유상한제 운영 4.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운영 5. 부동산 실명제 운영
	지 적 관 리 계	1. 토지 기록전산 시스템 관리, 운영 2. 지적, 도시계획도 전산화 3.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4.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경 정리 5. 기초점 설치 및 관리 6. 지적통계 관리 7. 도시계획 열람도 관리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9.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지 가 조 사 계	1. 지가조사 및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발이익환수제 운용 3.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4.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사 회 복 지 과	사 회 계	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새마을 노임 소득 사업 3. 장애인 복지 4. 부랑인 단속(남,여 포함), 수용보호(남자수용시설) 및 행려사망자 처리 5. 가정의례업무중 묘지, 화장, 장묘 등의 시설유지 및 관리 6. 사회복지사업소 및 실비식당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용품품 매매(교환) 허가 8.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9. 국내 다른 과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 험 연 금 계	1.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가 정 복 지 과	가 정 복 지 계	1.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노인복지사업 3. 유아교육사업

실·과	계	분 장 사 무
		4. 가정의례(묘지, 매·화장, 장의, 예식 등)에 관한 사항(단, 묘지 화장, 장묘업주중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 5. 건전가정의례 보급 및 추진 6.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지도감독 7.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녀 복 지 계	1.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여성인력개발 및 단체지도 육성 3.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사업 4. 소관법인 및 시설 인·허가 지도감독
	청 소 년 계	1. 청소년 종합시책 수립 시행 2. 근로청소년 복지사업 3. 청소년 사회교육 및 시설단체법인 지도육성 4. 요보호아동 예방 및 수용보호 선도사업 5.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 보호사업
위 생 과	식 품 위 생 계	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제외) 허가 및 지도 단속 2.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제외)의 위생 감찰 3.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제외)의 협정 요금 혼·분식 및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에 따른 지도 단속 4. 식중독에 관한 사항 5.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 중 위 생 계	1.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허가 2.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유기장(생활체육과 관장 시설 업소 제외)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처리수 처리제조업소, 세척제 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소, 장난감제조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허가(신고)지도 감독 3. 부정식품 단속 4.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협정요금 혼·분식 및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에 따른 지도 단속 5. 이용사, 미용사의 지도감독 6.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감 시 계	1.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 업무 추진계획 수립 2.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실·과	계	분 장 사 무
산 업 과	상 공 계	1. 시장의 지도 2. 계량기 및 소금에 관한 사항 3. 공장등록과 공장실태 조사 4.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 5. 수출·수입 업무 6.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7. 과내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유 통 지 도 계	1.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2.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보호 4. 비료, 농약, 농지분배 업무 5. 양곡소매업 허가 및 구서 사업 6. 동물병원 개설허가 및 광견병 예방 집중 7.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판장 운영
	연 료 계	1. 연료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연료판매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가스류 제외) 3.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가스류 제외) 4.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지도 5.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및 지도감독 6.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 및 지도감독 7. 열사용기자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8. 전기 공사업체 및 전기 공작물 지도감독 9. 전기용품 단속 10. 연료현대화 및 연료전환지도 11.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습조절에 관한 사항 12. 가스제조, 저장,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13. 가스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 14. 도시가스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15.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 16. 가스용품, 용기등에 관한 사항
환 경 과	환 경 관 리 계	1.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2. 배출시설 설치허가 3. 시민홍보 및 교육 4.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실·과	계	분 장 사 무
	환 경 지 도 계	1.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생 활 공 해 계	1.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2.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단속 3. 유해화학물질업소 지도단속 4. 공해관련 민원처리
청 소 과	서 무 계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징업무 총괄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체납관리(납기경과 1개월 후) 3. 환경미화원 후생 및 복지시설 관리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처우개선(임금, 퇴직금, 장제비, 유족 보상금등 지급) 5. 예산·회계(청소용품, 구매포함)에 관한 사항 6. 분노 및 오니(정화조) 처리(수집·운반·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7. 정화조 유지관리 8.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9. 변소개량 및 공중변소 유지관리 10.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정화조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12.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작 업 계	1. 진개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2. 진개수거 운반처리 3. 진개불법처분 감시 4. 진개처리업 허가 5. 청소인부 임용 6. 지하도 청소 및 지하도 청소인 임용 내신
	재 활 용 계	1. 일반폐기물 감량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행계획 수립·시행 3. 일반폐기물 감량화·분리수거주민홍보, 교육 및 지원 4. 재활용품수거, 집하, 처리체계 유지개선 5. 분리수거용기 관리지도 감독 6. 재활용품수거 추진단체 운영·지원·교육 7. 재활용품 기동수집반 운용

실·과	계	분 장 사 무
		8. 재활용품 선별장 및 교환소 운영 9. 재활용품 교환·판매·처리·정보관리 10. 다중 이용장소 및 다량배출자의 재활용품 수거관리 및 지원 11. 재활용품 수거실적·유지·관리 12.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협의회 운영
	장 비 관 리 계	1.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 2. 청소관계 기계, 기구류의 개수 수선 3. 차량의 유류 불출 관리 4. 청소장비의 소독
주 택 과	주 택 계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2.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자재 생산업체의 면허 및 지도감독 6. 전(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수립 시행 7. 전·월세 용자금 지원 및 관리 8. 주택에 관한 상담 총괄 9. 국내 다른 과, 계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 택 관 리 계	1. 공동주택관리 2.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 3. 시민아파트의 점검보수에 관한 사항 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5. 공동주택 관리회사의 지도감독 6. 민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관리, 용자금 회수
	주 택 정 비 계	1.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2. 무허가 건물의 철거 3. 위험 건축물의 철거 4.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진정 처리 5. 철거민의 입주 분양에 관한 사항
주 택 개 량 과	개 량 1 · 2 계	1. 재개발사업의 시행준비 및 시행 -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인가

십·과	계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2. 관리처분계획 인가 3. 재개발사업 완료조치, 관리감독 4. 시유지 관리 5. 특별회계 총괄 및 재개발 용자금 6. 재개발 자료관리 통계 7. 토목업무 전반 8. 재개발 지구지정, 지적승인, 사업계획 결정 9. 위험시설물 관리 10. 담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1계 (현저동, 북아현1·2·3동, 홍제1·2·3·4동, 홍은1·2·3동) — 개량2계 (충정로동, 천연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1·2·3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도 시 정 비 과	도 시 정 비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전반(22개동)
	광 고 물 관 리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정비위원회 운영 2.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구역은 제외) 3.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저장물 이전 및 보상 4. 도시개발사업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의 세부사업 운영 5. 도시계획에 의한 재계획선 건축선의 명시 6.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중 어린이공원의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20m 미만의 일반도로(2개 구청 이상 연결노선은 제외), 보행자 전용도로(2개구청 이상 연결노선은 제외), 12m 이하의 하천, 6m 미만의 하수도, 소매시장, 단일종목의 운동장, 30㎡ 미만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학교(대학원 제외) 시내버스 정류장 등의 도시계획의 조사입안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8. 운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9. 도심 재개발 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 시설물 관리 10.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

실·과	계	분 장 사 무
		4.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가로, 건물경관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 통제 6. 경관심사 및 각종 위원회 운영 7.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합추진 8. 도시건설, 가로시설물, 도시조명 등 협의지도
교 통 행 정 과	교 통 행 정 계	1. 교통종합대책 총괄 2. 특수수송대책 총괄 3. 수송동원 총괄 4. 교통수요관리 총괄 5.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기업체 수요관리) 6. 사업용자동차 인허가 및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 7. 운송개시일 연기 인가 8. 버스노선 조정면허 9. 마을버스 한정면허 10. 개인택시 면허 심사 11. 개인택시 양도 양수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13. 화물취급소, 창고업 인면허 14. 운송알선업 허가 15. 차량연장 신청 16.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 통 시 설 계	1. 교통량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TSM 및 TIP사업 3. 교통안정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차없는 거리 조성 등) 4.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관리 5. 버스터미널 관련 지도·감독 6. 버스전용차선 설치 7. 택시승차대 관리 8. 교통영향평가 9. 자전거 이용증진 10. 도로표지판 설치 11. 교통소통 촉진시책(이면도로 정비, 정체지점 개선 사업 등) 12.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실·과	계	분 장 사 무
	자 동 차 등 록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임시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각자 4. 자동차 강제처리 5. 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변경 6. 자동차 검사지시 7. 자동차 관리사업자 관리 8.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9. 이륜자동차 관리 감독 10. 자가용 사용신고
교 통 지 도 과	주 차 관 리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유지 관리 3.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4. 민영주차장 설치신고 및 감독 5. 건물부설주차장 유료화 6. 주차단속종합계획 수립 7. 주차단속원 지도감독(공익요원) 8. 주차단속 이의 진술 처리 9. 견인대행업소 지도, 단속 10.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 11. 시설관리공단 정수업무 협조 12.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 통 과 징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3. 운수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체납 운수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수과징금 이의신청 처리
	운 수 지 도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시운전 자격정지 및 해제 2. 무적차량 단속 3.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관리 감독 4.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5. 자동차 대여사업 6. 자가용사용신고 미필 과태료 부과 7.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실·과	계	분 장 사 무
		8. 정비업체 지도단속 9.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10. 유상운송허가 11.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 12. 방치폐차 수거처리 13. 폐차장 운영 14.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15. 정비관리자 신·해임 신고수리 16. 버스전용차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7.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건 축 과	건 축 관 리 계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 2. 건축사의 지도감독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미관통제와 지도 4.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총괄 5.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계 법규 정비 6.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 7.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건 축 1 · 2 계	1.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 2. 준공검사 및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3. 허가취소·고발 및 과태료 부과 4. 건축업자 지도감독 5. 일반지구의 위험건물·축대·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6. 시영주택건축·보수 등에 관한 사항
	영 선 계	1. 구·동청사, 노인정, 공부방 신·증축에 따른 영선관련 업무 2. 기타 공공복지시설 등 신·개축 및 보수관련업무 전반(설계, 공사 감독 등)
건 설 관 리 과	관 리 계	1. 도로, 하천, 구거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2.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3.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중기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6. 국내 다른 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실·과	계	분 장 사 무
	보 상 계	1.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 2. 기념물의 유지 관리
	가 로 정 비 계	1.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2. 도로일시 점용 허가
토 목 과	토 목 계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토목업자의 지도 4.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5. 도로대장 관리 6.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 로 관 리 계	1.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2. 뒷골목 정비 및 보도블록 포설과 유지 보수 3.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4. 도로복구비의 부과 징수 및 굴착 복구공사 5. 지하도, 터널의 청소등 환경정비 6. 지하도, 지하광장, 터미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도 로 조 명 계	1.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3.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도감독 4.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5.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
하 수 과	하 수 계	1.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 2.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 3.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4.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5. 풍수해 대책계획 및 시행 6. 하수도 대장 작성관리 7. 공공하수도 인허가 업무 8. 하수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9. 배수펌프장 수방장비 정비관리 10.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실·과	계	분 장 사 무
	하 수 과 징 계	1.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재심청구 심의 2. 하수도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3.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4. 하수도 사용제납자에 대한 징수 처분 5. 하수도 계측장비 관리, 점검 6. 수도사업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공 원 녹 지 과	공 원 계	1.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 2. 공원녹지대 기념물의 토지 3. 유원지내 시설물 유지 관리 4. 가로수 식재 및 유지 관리 5. 거리환경미화 및 노변 꽃심기 6. 화초류의 생산업 지도 육성 7.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녹 지 계	1. 국유 임야 관리 2.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 관리 3. 임야지 훼손 및 산림 범법자 단속 4. 사방 조립사업 및 지도 5. 양묘사업 및 지도 6. 임업단체의 지도 육성 7. 산림병충해 방지 8.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 9.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 감독 10. 임야내 토석 채취 허가 11. 수렵의 지도 12. 절개지 단장 미화(비임야) 1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승인 허가 14.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관리

보건소 각과 사무분장표

실·과	계	분 장 사 무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	1.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관리 3.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내 다른 과,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계	1. 진료실 업무지원 2. 민원실의 운영 3. 진단서 및 재증명 발급 4.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방역계	1. 방역대책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급성 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3. 비상방역품의 관리 4. 소독업 허가 및 지도 5. 전염병 역학에 관한 사항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계	1.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2. 모자보건 관리 3.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4.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족보건계	1. 가족계획 관련 사항 2.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3. 이동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4.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계	1.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실·과		분 장 사 무	
의 약 과	의 무 계	1.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4.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5.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약 무 계	1.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검 진 계	1. 방사선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병리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3.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한 사항	

동사무소 사무분장표

계 별	분 장 사 무
시 민 생 활 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 및 도급경비 지출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반의 구역조정 및 통·반장 위·해촉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8.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9.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10. 각종 지시사항 처리 11. 기부금품 모금관리 12. 시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 13.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14.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 15.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6. 진정서·건의서 처리 17. 동행정 위원회 개최 18.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관리 19. 봄·가을맞이 환경정비 20. 자연보호운동 및 시민대청소 21.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 22. 시민교양교육 대상자 선정 23. 동 체육회 및 지역체육시설 관리지원 24.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 및 변경신고 25. 저소득시민 지원 26. 부양가족 시설확인 증명 발급 27.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28. 구호양곡 관리업무 29. 취로사업(노임소득사업)계획수립·시행 30. 장애인 등록·관리 31. 부랑인 단속 및 가출인 수배·행려 사망자 공고 32. 모자가정 조사 및 관리 33.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

계 별	분 장 사 무
<p>시 민 생 활 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4. 노인복지 관련업무 35. 소년·소녀 가장 관리 및 지원업무 36.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지원 37.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수요 조사 38. 연탄 판매소 양도·양수장소 이전 관련업무 39. 주택 단열시공 확인원 발급 40.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41. 대여양곡 상환금 및 체납자 관리 42.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쓰레기 적환장 관리 4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수료 징수 44.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점검 45. 전세자금 융자업무 관리 46. 무허가건물 적출 및 관리 47.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48. 가로 및 가로시설물 관리 49. 위험시설물 점검 및 재해대책 운영 50.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시행 51.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52.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 선정 53. 주차구획선 설치 주차계도 54. 기타 타계에 소속하지 아니한 사항
<p>민 원 봉 사 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 3.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출입 관리 4. 출생 및 사망(호주상속)신고 5. 호적과태료 처분 6.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 7. 주민세 세원조사 부과, 조정 8.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 징수독려 및 지방세 체납징수 독려 9. 세금납부사항 조회의뢰 및 회신 10. 지가조사 및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11.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증명 발급 12. 운전면허증 주소지 변경 및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변경 13. 2륜 소형차 등록 관리 14.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 15.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계 별	분 장 사 무
민 원 봉 사 계	16. 인력동원 대상자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17. 병력증명(조회) 및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 18. 병적기록 정정원 및 특수전(면)역원 진달 19. 예비군 자원관리 20. 신체검사 통지서, 입영명령서 등 각종 통지서 전달 21. 통지서 수령인 변경신고 22. 거주지 징병검사원(진달) 및 응소불능원 신고(진달) 23. 우선방위소집원 및 우선입영신청(진달)

서대문구의회 · 구청 전화번호

구의회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의 장	364-5900	의 사 계	364-5903
부 의 장	364-5901	의 안 계	364-5904
사 무 국 장	364-5905	의 원 휴 계 실	390-4184
의 정 계	364-5902		

구 청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총 합 상 황 실	330-1300, 330-1330 333-4599, 337-2000	만원처리계	330-1403~04
기 획 상 황 실	330-1570	호 적 계	330-1421~22
지 하 상 황 실	330-1434	민원창구	330-1423~27
구 청 장	324-5994, 330-1303 330-1333, 336-5878	총 무 국 장	324-7455, 330-1305 330-1335
부 구 청 장	324-7742, 330-1304 330-1334	총 무 과 총 무 계	324-6343 330-1310~11
문화공보실 공 보 계	330-1410~11	인 사 계	330-1312, 330-1329
문화관광계	330-1412	동 정 계	330-1313~14
시설운영계	391-9032	의회협력계	330-1323
문화회관	330-1560~61	기획예산과 기 획 계	330-1315~16
감 사 실 민원자동응답	323-0120	예 산 계	330-1317
구민의소리	330-1666	법 제 계	330-1318
감 사 계	330-1470~71	전산통계계	330-1319, 330-1414
조 사 계	330-1472~73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330-1320
민원관리계	330-1566	생활체육계	330-1321
생활개혁반	330-1548	시설관리계	330-1322
시민봉사실 전 화 민 원	332-3001, 333-3001	체 육 회 관	374-8233~37
1 회 민 원	322-8282	민 방 위 과 민방위계획계	330-1324~25
문서관리계	330-1435~36	교육훈련계	330-1326
		병 사 계	330-1327~28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재 무 국 장	330-1306, 330-1336	도 시 정 비 국 장	330-1308, 330-1338
재 무 과 재산관리계	330-1340~41	주 택 과 주 택 계	330-1380
계 약 계	330-1342~43	주 택 관리계	330-1381
지 출 계	330-1344, 330-1553	주 택 정비계	330-1382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	330-1349	대 기 실	330-1358
징 수 1 계	330-1345~46	주 택 개 량 과 개 량 1 계	330-1455
징 수 2 계	330-1347~48	개 량 2 계	330-1456
부 과 과 부 과 1 계	330-1350~51	주 거 환 경 계	330-1457
부 과 2 계	330-1352	도 시 정 비 과 도 시 정 비 계	330-1385~86
부 과 3 계	330-1353	광 고 물 관 리 계	330-1387
부 과 4 계	330-1354	교 통 행 정 과 교 통 행 정 계	330-1481~82
조사평가계	330-1554	교 통 시 설 계	330-1483
지 적 과 지 정 계	330-1495	자 동 차 등 록 계	330-1444, 330-1484
토 지 관 리 계	330-1450	교 통 지 도 과 주 차 관 리 계	330-1485
지 적 관 리 계	330-1497	주 차 과 징 계	330-1486
지가조사계	330-1452	운 수 지 도 계	330-1487
시 민 국 장	330-1307, 330-1337	단 속 원 (여)	330-1432
사 회 복 지 과 사 회 계	330-1355, 330-1357	단 속 원 (남)	330-1582
보 험 연 금 계	330-1356	공 익 요 원 실	330-1583
취 업 정 보	330-1419	건 축 과 건 축 관 리 계	330-1390~91
가 정 복 지 과 가 정 복 지 계	330-1490~91	건 축 1 계	330-1392
부 녀 복 지 계	330-1492	건 축 2 계	330-1393
청 소 년 계	330-1493	영 선 계	330-1448
위 생 과 식 품 위 생 계	330-1360~61	건 축 민 원 실	330-1567~68
공 중 위 생 계	330-1362~63	건 설 국 장	330-1309, 330-1339
감 사 계	330-1364	건 설 관 리 과 관 리 계	330-1399, 330-1400
산 업 과 상 공 계	324-0700, 330-1365	보 상 계	330-1401~02
유 통 지 도 계	330-1368	가 로 정 비 계	330-1446
연 료 계	330-1366	중 기 등 록	330-1559
환 경 과 환 경 관 리 계	330-1370~71	신 촌 초 소	330-1447
환 경 지 도 계	330-1372	토 목 과 토 목 계	330-1405~06
생 활 공 해 계	330-1373	도 로 관 리 계	330-1407, 330-1562
청 소 과 서 무 계	330-1375, 333-6000	도 로 조 명 계	330-1563
작 업 계	330-1376	금 화 터 널	313-7902
재 활 용 계	330-1377	대 기 실	364-5965
장 비 관 리 계	330-1378	하 수 과 하 수 계	330-1415~16
차 고	373-2773	하 수 과 징 계	330-1417~18
		대 기 실	330-1580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공원녹지과 공 원 계	330-1395~96	내	과 390-4454
녹 지 계	330-1397, 330-1433	치	과 390-4455
독 립공 원	330-1398, 364-4686	물 리 치 료 실	390-4456
대 기 실	330-1394	예 방 칩 종 실	390-4439
기 타		검 진 병 리 실	390-4440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330-1438	상 사 선 실	390-4458~59
전 산 실	330-1574	영 모 유 아 실	390-4460~61
자 료 실	330-1439	성 계 획 실	390-4457
전 화 기 계 실	330-1331~32	가 족 직 기 계 실	390-4433~34
전 기 관 실	330-1374	당 화 기 관 실	390-4435
등 사 실	330-1474		390-4436
운 전 기 사 대 기 실	330-1475		390-4415
총 무 과 대 기 실 (남)	330-1477~78		390-4331
총 무 과 대 기 실 (여)	330-1359		390-4417
중 대 본 부	330-1480		390-4414
증 지 판 매	330-1479	동 사 무 소	
주 차 타 위	330-1409	총 정 로 동	363-2142~4
청 사 정 문	330-1420	천 연 동	363-2533~5
청 사 후 문	330-1593	현 저 동	363-3481~3
청 소 노 조 지 부	330-1594	북 아 현 제 1 동	363-4251~3
구 내 식 당	324-7685	북 아 현 제 2 동	363-4273~5
구 내 약 국	330-1591~92	북 아 현 제 3 동	363-4913~5
구 내 상 업 은 행	330-1488	대 신 동	363-7542~4
문 화 체 육 회 관	324-1318	창 천 동	363-5851~3
	374-8233~7	연 희 제 1 동	322-1381~3
보 건 소		연 희 제 2 동	322-3346~8
보건행정과 소 장 실	390-4421	연 희 제 3 동	322-3121~3
보건기획계	390-4422	홍 제 제 1 동	394-4541~3
운영계	390-4411	홍 제 제 2 동	733-2791~3
보건지도과 방역계	390-4412	홍 제 제 3 동	394-3271~3
보건지도계	390-4430	홍 제 제 4 동	733-3581~3
가족보건계	390-4431	홍 은 제 1 동	383-4491~3
의 약 과 건강관리계	390-4424	홍 은 제 2 동	396-4211~3
의 무 계	390-4423	홍 은 제 3 동	396-4811~3
약 무 계	390-4450	남 가 좌 제 1 동	375-7501~3
검 진 계	390-4451	남 가 좌 제 2 동	375-6222~4
결 핵 관 리 실	390-4437~38	북 가 좌 제 1 동	374-7241~3
		북 가 좌 제 2 동	375-4181~3

생활민원 전화안내

수도사업소

사업소명	부서별	전화번호	관할구역	비 고
은평수도사업소	민원상황실 총무과 관리과 요금과 공무1과 공무2과	730-3850~1 730-3852~3 720-9262~3 722-0655~7 730-3854~6 730-3857~8	서대문구 은평구	○국번없이 121번으로 전화 → 해당사업소로 연결 ○민원상황실 : 급수공사신청, 단수문의 ○관리과·요금과 : 수도요금 문의 ○공무1과·공무2과 : 수도관 개량 및 급수공사, 누수탐지, 계량기관리 문의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명	부서별	전화번호	관할구역	비 고
한전성서지점	종합봉사실 영업운영(요금과) 야간당직실	350-2231~32 350-2241~42 350-2203	서대문구 은평구	○전기고장신고 : 국번없이 123 ○종합봉사실 : 726-5231~2 ○야간당직실 : 726-5103, 726-5203

세 무 서

- 서대문세무서 안 내 : 287-4613~14
 민원봉사실 : 379-2100
 287-4221~23
 당 직 실 : 287-4611~3
- 서부세무서 안 내 : 380-0114
 380-0200
 민원봉사실 : 380-0221~4
 당 직 실 : 356-2100

서울시 각 구청 전화번호

구 청	구청장실	대표전화	당직실	일반민원 (시민봉사실)	총무과	보건소	각구의회
종 로	731-0333	731-0114	732-2000	731-0301	731-0310	731-0425	723-6813~5
중 구	260-1303	260-1114	266-2000	260-1301	260-1310	260-1428	260-3103~7
용 산	710-3333	710-3114	710-3300	710-3301	710-3410	710-3422	790-4381~6
성 동	290-7333	290-7114	290-7300	290-7301	290-7310	290-7422	299-1544~7
광 진	450-1333	450-1114	453-0001	450-1301	450-1310	450-1422	201-4381~7
동 대 문	920-4303	920-4500	920-4300	922-3001	920-4310	920-4420	214-8040~5
중 량	491-3303	490-3114	490-3300	433-30014	490-3310	490-3422	438-6011~8
성 북	920-3333	920-3500	920-3300	920-3435	920-3310	941-2672	927-8094~7
강 북	901-6333	995-0120	901-6300	901-6435	901-6310	901-6422	901-6441~7
도 봉	901-5333	903-0120	901-5300	901-5301	901-5310	901-5422	901-5441~5
노 원	950-3333	950-3114	950-3300	938-3001	950-3310	950-3422	950-3455~7
은 평	389-2000	350-1114	389-2000	350-1301	350-1310	350-1681	350-1441~7
서 대 문	330-1333	330-1114	330-1300	330-1301	330-1310	390-4411	364-5900~4
마 포	324-2000	330-2114	330-2300	330-2301	330-2310	330-2422	325-1987~8
양 천	650-3333	650-3114	650-3300	650-3301	650-3310	650-3422	652-7234~5
강 서	603-0001	600-6114	602-2000	600-6301	600-6310	651-5091	606-1810~5
구 로	856-2000	860-2114	856-2000	853-3001	860-2310	860-2266	852-0272~4
금 천	890-2303	890-2114	890-2300	890-2435	890-2310	890-2422	896-5765~7
영 등 포	670-3333	670-3114	633-2000	633-3001	670-3310	630-0311	670-3442~7
동 작	814-2000	820-1114	814-0001	820-1301	820-1310	820-1422	823-6492~4
관 악	880-3333	880-3114	877-2000	880-3301	880-3310	874-2761	880-3758~9
서 초	574-1230	570-6462	588-2000	570-6301	570-6310	570-6572	570-6670~80
강 남	510-1333	510-1114	545-2000	510-1420	510-1310	3451-2510	517-0321~6
송 파	415-0881	410-3114	410-3300	410-3301	410-3310	410-3422	203-1811~4
강 동	478-2000	480-1114	477-0001	476-3001	480-1310	477-5410	483-2522~5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서울시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상담·문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서울시 「120 민원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본 청 : 국번없이 120번
자치구 : 해당국번+0120번

전화번호 및 코드 번호	민원내용
1번+# →	수 도 민 원
2번+# →	교 통 민 원
3번+# →	의 학 정 보 제 공
4번+# →	행 정 법 규 상 담
5번+# →	주 택 상 담
6번+# →	관 광 안 내
7번+# →	도 시 계 획 상 담
8번+# →	가 정 법 률 상 담
9번+# →	지 방 세 세 무 상 담
10번+# →	건 축 상 담
11번+# →	중 소 기 업 지 원 및 구 인 구 직 안 내
12번+# →	시 정 안 내
13번+# →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14번+# →	생 활 관 련 신 고 및 고 발
15번+# →	시 설 물 훼손 신 고

- (이용요령)
- 버튼식(전자식) 전화기로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십시오.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이용코드번호와 전화기 0번 오른쪽의 “#”을 누르시면 해당상담센터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 (운영시간)
- 상수도민원, 교통민원, 의학정보제공은 24시간 운영하고 그밖의 민원신고 및 상담은 근무시간중에만 운영합니다.